

연구보고 2015-28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이진화 박진아 박기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리 말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 세대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어린 세대 특히,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가장 민감한 정책이 교육·보육비, 양육수당으로 대표되는 영유아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이다. 정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영유아를 위한 재정 지원이 2013년 누리과정 3~4세 확대 적용과 양육수당 지급 등 전면적으로 확대·시행되면서, 재정 지원 정책이 갖고 있는 목표 달성여부와 그에 따른 실효성 확인이 당면과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위한 타당한 실태조사와 이를 포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취학 연령인 0-5세의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국가수준의 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국가승인통계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조사의 제한점은 있으나, 정부 재정 지원이 투여되는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을 판단하고, 향후 영유아기 재정 지원 정책의 개선방안을 설정하는 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구조사에 응답해 주신 2,500여 가구의 부모님, 정확한 조사를 위해 노력해 준 관련자분들과 조사원선생님들,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신 부모님과 원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 결과는 연구진의 견해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남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4. 선행연구	27
5. 용어정리 및 범주화	46
6. 연구의 제한점	52
II. 연구의 배경	53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개요	53
2.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관 이용 변화 추이	71
III. 조사대상 특성	75
1. 조사 가구 특성	75
2. 아동특성	78
IV. 영유아 이용 교육·보육 서비스별 비용	83
1. 유치원	83
2. 어린이집	101
3.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117
4. 개별돌봄	123
V.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126
1. 영유아(연령별·가구별) 총 교육·보육비용과 지출 결정 요인	126
2. 영유아(연령별·가구별) 사교육비와 지출 결정 요인	135
VI. 의견조사 및 개선 방안	145
1. 교육·보육비용 관련 의견조사	145
2. 논의 및 개선방안	153

참고문헌	160
Abstract	165

부 록

부록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169
부록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	170
부록 3.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171
부록 4.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	172
부록 5.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가구특성	173
부록 6.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수	175
부록 7.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분포	180
부록 8.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표본	185
부록 9. 영유아교육비 추정을 위한 표본 행정동	190
부록 10.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설문지	198

표 차례

〈표 I-3- 1〉 국내 패널자료의 조사 항목	14
〈표 I-3- 2〉 2015년 조사 항목 변화	16
〈표 I-3- 3〉 조사표 항목 검토 단계	17
〈표 I-3- 4〉 지역별 행정동 분포	19
〈표 I-3- 5〉 지역별, 지역특성별 세대수 분포	20
〈표 I-3- 6〉 지역별 연령별 인구분포(남)	20
〈표 I-3- 7〉 지역별 연령별 인구분포(여)	21
〈표 I-3- 8〉 2,500가구 조사완료 후 지역·성·연령별 영유아 예상 표본 분포	22
〈표 I-3- 9〉 권역별, 동부, 읍부, 면부별 세대수	23
〈표 I-3-10〉 권역별, 동부, 읍부, 면부별 표본 가구수	23
〈표 I-3-11〉 권역별 250개 표본 행정동의 분포	24
〈표 I-3-12〉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26
〈표 I-4 1〉 한국노동패널 소득 분포 및 비용 지출	31
〈표 I-4 2〉 한국복지패널 소득 분포 및 비용 지출	33
〈표 II-1- 1〉 유아학비의 근거 법령 및 내용	53
〈표 II-1- 2〉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54
〈표 II-1- 3〉 2015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	55
〈표 II-1- 4〉 2015년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	55
〈표 II-1- 5〉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비용 기준	56
〈표 II-1- 6〉 보육료 근거 법령 및 내용	57
〈표 II-1- 7〉 보육료 지원 근거 법령 및 내용	57
〈표 II-1- 8〉 정부의 보육료 지원아 수: 2013~2014	58
〈표 II-1- 9〉 영유아 연령별 보육료: 2009~2015	59
〈표 II-1-10〉 장애아 및 다문화 보육료 연도별 지원 단가	60
〈표 II-1-11〉 야간 및 24시 보육료 연도별 지원 단가	61
〈표 II-1-12〉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4-2015	61
〈표 II-1-13〉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 2015	63
〈표 II-1-14〉 양육수당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64

〈표 II-1-15〉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예산 및 지원아 수 현황: 2013~2014	65
〈표 II-1-16〉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현황(2013~2014)	65
〈표 II-1-17〉 2015년 연령별 지원 단가	66
〈표 II-1-1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67
〈표 II-1-19〉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2013~2014	67
〈표 II-1-20〉 영아종일제 이용대상, 서비스 종류 및 내용	68
〈표 II-1-2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단가 및 본인부담금: 2015	69
〈표 II-1-2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69
〈표 II-1-2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 서비스 내용	70
〈표 II-1-24〉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금액	71
〈표 II-2- 1〉 유치원·어린이집 수: 2005~2015	71
〈표 II-2- 2〉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아 수: 2005~2014	72
〈표 II-2- 3〉 영유아 대상 학원	73
〈표 III-1- 1〉 조사 가구의 일반적 특성	75
〈표 III-1- 2〉 조사 가구의 경제적 특성	76
〈표 III-1- 3〉 총 가구소득 분포(2015년)	77
〈표 III-1- 4〉 총 가구 지출 분포(2015년)	78
〈표 III-2- 1〉 아동특성	79
〈표 III-2- 2〉 영유아 연령별 정부 재정 지원 수혜 현황	79
〈표 III-2- 3〉 영유아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현황	80
〈표 III-2- 4〉 영유아 연령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개수(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80
〈표 III-2- 5〉 가구소득별·자녀연령별 정부재정 지원 이용 현황	81
〈표 III-2- 6〉 2014년 대비 2015년 재정 지원 변경 이유	82
〈표 IV-1- 1〉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	83
〈표 IV-1- 2〉 가구소득·연령에 따른 유치원 이용 현황	84
〈표 IV-1- 3〉 유치원 하루 일과 과정 이용 현황(중복응답)	85
〈표 IV-1- 4〉 1일 평균 유치원 이용 시간	85
〈표 IV-1- 5〉 유아학비 안내(정책설명, 수령방법 등)	87
〈표 IV-1- 6〉 유아학비 사용처 설명 유무	88
〈표 IV-1- 7〉 유치원 교육비 납입 여부(중복응답)	90
〈표 IV-1- 8〉 유치원 교육비 분포와 평균	90

〈표 IV-1- 9〉 월 세전 대비 유치원 비용 부담 정도(지불아동기준)	92
〈표 IV-1-10〉 유치원 방과후 과정 비용 및 만족정도	92
〈표 IV-1-11〉 방과후 과정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93
〈표 IV-1-12〉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이용 개수와 평균 비용	94
〈표 IV-1-13〉 연령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선호 교육활동(중복응답)	95
〈표 IV-1-14〉 월 세전 대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 교육비 부담 정도	95
〈표 IV-1-15〉 연령별 방과후특성화 활동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96
〈표 IV-1-16〉 방과후 특성화 활동운영 부모지출감소, 운영안내여부	97
〈표 IV-1-17〉 방과후 특성화 활동운영 가격 규제	97
〈표 IV-1-18〉 돌봄 비용(아침돌봄, 저녁돌봄) 납입 여부	98
〈표 IV-1-19〉 유치원 교육비 비용(전체)	99
〈표 IV-1-20〉 유치원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99
〈표 IV-1-21〉 비용대비 유치원 전반적인 만족도	100
〈표 IV-2- 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101
〈표 IV-2- 2〉 가구소득·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	102
〈표 IV-2- 3〉 어린이집 과정 이용 현황(중복응답)	103
〈표 IV-2- 4〉 1일 평균 어린이집 이용 시간	104
〈표 IV-2- 5〉 보육료 안내(정책설명, 수혜방법 등)	106
〈표 IV-2- 6〉 보육료 사용처 설명 유무와 설명 필요성 인식	107
〈표 IV-2- 7〉 비용 납입 여부(중복응답)	107
〈표 IV-2- 8〉 어린이집 비용 분포 및 평균	108
〈표 IV-2- 9〉 월 세전 대비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정도와 만족도	109
〈표 IV-2-10〉 연령별 시간연장보육(주말 및 휴일 등 포함, 지원금제외) 비용 분포와 평균	110
〈표 IV-2-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와 평균 비용	111
〈표 IV-2-12〉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호 활동(중복응답)	111
〈표 IV-2-13〉 월 세전 대비 어린이집특별활동비 부담 정도	112
〈표 IV-2-14〉 연령별 특별활동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113
〈표 IV-2-15〉 특별활동운영 관련 부모지출감소 및 동의서 여부	113
〈표 IV-2-16〉 특별활동운영 가격 규제	114
〈표 IV-2-17〉 어린이집 (총)비용 분포와 평균 비용	115
〈표 IV-2-18〉 어린이집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지출과 비용미지출	116

〈표 IV-2-19〉 어린이집 전반적인 만족도	117
〈표 IV-3- 1〉 반일제이상학원 이용 여부	118
〈표 IV-3- 2〉 반일제이상학원 비용 분포와 평균	118
〈표 IV-3- 3〉 이용유무 및 참여 이유	119
〈표 IV-3- 4〉 연령에 따른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	120
〈표 IV-3- 5〉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 분포 및 평균	121
〈표 IV-3- 6〉 반일제이상 학원 및 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21
〈표 IV-3- 7〉 부담 및 만족도	122
〈표 IV-4 1〉 개별돌봄 이용 현황과 비용	124
〈표 IV-4 2〉 개별돌봄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25
〈표 V-1- 1〉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비용지출기준)	126
〈표 V-1- 2〉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비용미지불포함)	127
〈표 V-1- 3〉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28
〈표 V-1- 4〉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129
〈표 V-1- 5〉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 (비용지출기준)	130
〈표 V-1- 6〉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미지출 영유아포함)	131
〈표 V-1- 7〉 가구 총 교육·보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33
〈표 V-1- 8〉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134
〈표 V-1- 9〉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총액 규모(비용미지출 영유아포함)	135
〈표 V-2- 1〉 영유아의 사교육비 분포와 평균	136
〈표 V-2- 2〉 영유아 총 사교육비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37
〈표 V-2- 3〉 영유아의 사교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138
〈표 V-2- 4〉 가구의 총 사교육비용 분포와 평균	139
〈표 V-2- 5〉 가구의 총 사교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140
〈표 V-2- 6〉 사교육 참여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141
〈표 V-2- 7〉 전체 연령별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142
〈표 V-2- 8〉 사교육 참여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144
〈표 V-2- 9〉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144
〈표 VI-1- 1〉 취학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전년도 대비 변화추이: 증가	145
〈표 VI-1- 2〉 취학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146
〈표 VI-1- 3〉 정부재정 지원 만족 정도	147

〈표 VI-1-4〉 정부재정 지원에 따른 후속출산 여부	148
〈표 VI-1-5〉 정부재정 지원에 따른 취원 결정 여부	149
〈표 VI-1-6〉 양육수당 5만원 인상	150
〈표 VI-1-7〉 양육수당 10만원 인상	151
〈표 VI-1-8〉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찬성 유무	152
〈표 VI-1-9〉 정부 재정 지원 정책 개선 방안	153
〈부표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170
〈부표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	171
〈부표 3〉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	172
〈부표 4〉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	173
〈부표 5〉 조사 가구의 일반적 특성	174
〈부표 6〉 조사 가구의 경제적 특성	174
〈부표 7〉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수	176
〈부표 8〉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분포	181
〈부표 9〉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표본	186
〈부표10〉 영유아교육비 추정을 위한 표본 행정동	191

그림 차례

[그림 I-4-1] 한국노동패널 자녀 양육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표	31
[그림 I-4-2] 한국복지패널 사교육과 보육 기관 이용 실태 조사표	32
[그림 I-4-3] Childcare assistance 자격 및 지원금 지급기준	35
[그림 I-4-4] 캐나다 앨버타주 보육 비용지급 비율	37
[그림 I-4-5] 브리티시 콜럼비아 보육비용 지원 비율	38
[그림 I-4-6] 호주 부모의 ECEC 비용 부담 정도	39
[그림 I-4-7] 2015년 영국의 각 지역별 주당 평균 보육비용	42
[그림 I-4-8] 2세 미만 유아원 가격의 변화율: 2010-2015	43
[그림 I-4-9] 중간소득 대비 교육 보육비용 상위 10개주(12개월 미만)	44
[그림 I-4-10] 주별 가구 수입 및 지출항목 대비 교육 보육비용 지출 현황(12개월 미만)	45
[그림 I-4-11] 호주 가정의 가구수입, 이용기관유형 및 시간 수에 따른 비용	46
[그림 I-5-1] 영유아 교육 보육비용 조사 범주	51
[그림 II-2-1] 2014 유치원 어린이집 취원율	73
[그림 III-1-1] 가구소득분포: 본조사와 가계동향조사(2015년 2분기 영유아가구) 비교	77
[그림 III-2-2]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가구소득별 이용률	81
[그림 IV-1-1] 가구소득 연령에 따른 유치원 이용 현황	84
[그림 IV-1-2] 유치원 교육비 추가 사용처(전체)	89
[그림 IV-1-3] 유치원 추가 비용 사용처 설명 유무	89
[그림 IV-1-4] 유치원 교육비(유형별) 분포 현황	91
[그림 IV-1-5] 유치원 방과후과정비(유형별) 분포 및 만족도 등	93
[그림 IV-2-1] 어린이집(유형별) 비용 분포	109
[그림 V-2-1] 2014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지출 비용	143

요 약

1.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출산율 향상 등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재정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재정 지원 정책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출생에서 취학 전에 이르는 영유아의 전 연령을 포괄하며,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가정양육과 기관이용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는 점, 만 3-5세 누리과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 영유아 대상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시행으로 3~5세 유아의 기관 취원을 상승, 다소 미미하지만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저소득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재정 지원으로 가계지출 부담완화 효과를 보이는 점 등 본래의 기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영유아의 요구에 적합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공급 부족, 사교육 과열 등의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보육비용 정책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매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생성하고, 이와 더불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정책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함.

나. 연구내용

-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국가 승인통계, 한국노동패널, 복지패널,

등의 자료를 토대로 미취학 영유아 자녀의 기관 이용 변화, 지원금 수혜 현황, 가구별 비용지출결정 요인의 경향성, 국가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의 국외 사례 등을 제시함.

- 2015년 4차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각 항목별로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함.
- 가구소득별·영유아연령별로 총 교육·보육비용과 사교육비 규모를 본 조사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그 규모를 추정함. 또한, 각 가구소득별·영유아연령별 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함. 또한 사교육비용의 월평균을 이용한 연간화 작업으로 연간 규모를 추정함.
-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의견 조사 결과를 종합하고, 개선 사항 및 요구 정도 등을 토대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조사 및 2차 자료 분석
- 가구(면담)조사
 - 전국 시·도(제주 제외)의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총 2,499가구, 미취학 영유아 자녀 3,075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기준으로 교육·보육비용을 조사함.
 - 조사 규모는 2015년 0-5세 취학 전 영유아 인구수의 약 0.11% 수준이며, 조사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3,549,100원이며, 가구소득 분포는 300-399만원이 약 38.2%로 가장 많음.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면담
 - 연구 조사 설계, 설문지 및 정책 제언 검토

라. 용어정의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 정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라 함은 출생에서 취학 전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위해 가구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며(서문희 외, 2012; 양미

선 외, 2013, 2014), 2015년 5월 기준으로 조사함.

- ‘영유아 사교육비’는 초중등 학령기의 사교육비 정의와 맥을 같이 함. 따라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어지고, 부모 개인 부담으로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함.

마.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 다음과 같음.
 - 5월 한 달 조사를 기준으로 연간화를 시도하여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월별 이용 차이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2015년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완전하게 공시되지 않아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검토하였음.
 - 매해 표집된 대상의 소득 및 지출 등 가구 특성의 차이가 있고, 비용 산출을 위한 용어 정의 특히 ‘사교육비’ 등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결과값 만을 이용한 단순 비교는 주의가 필요하여, 이전 연도 조사와는 용어 정의 등의 차이로 비교하지 않음.

2.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가. 조사대상 특성

- 본 조사를 위해 2015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의 0-5세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내에서 미취학자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대상자를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표본추출을 위한 보조 정보로서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현재 대한민국 1세별 추계인구를 활용하였으며, 표본 설계 추출틀은 2015년 행정자치부 행정동 수 및 세대수를 활용하였는데, 조사 모집단은 3,508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동은 동부, 읍부, 면부로 구분됨.
- 전국(제주 제외)의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2,499가구로 그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조사 참여가구의 64.6%는 대도시 거주이며, 3인 이하의 가구원수는 약 47.7%, 4인 이상은 43.3%, 부의 연령은 36~40세가 49.3%, 모의 연령은 31~35세가 43.6%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부모 공히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음.
- 조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399만원이 38.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소득은 3,549,000원이고, 중앙값은 3,300,000만원임. 조사 가구의 지출 분포를 보면, 평균 지출은 3,005,000원 수준이며 가구 지출의 중앙값은 3,000,000만원임. 200~299만원 구간이 약 40.6%로 가장 높았음.
- 본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3,075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의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현황은 0세는 어린이집 이용이 약 10.6%, 1세는 46.4%, 2세는 76.5%이며, 유치원은 3세는 32.3%, 어린이집은 67.7%, 4세는 유치원 46.1%, 어린이집 42.7%, 5세는 유치원 45.3%, 어린이집 54.7%임. 유치원, 어린이집, 반일제이상학원 등의 이용 비율이 약 72.9%이며, 개별교습, 그룹교습, 시간제학원, 문화센터 등을 1개 이상 이용하는 영유아 수는 962명으로 나타나서, 1개 이상 이용 비율은 약 31.3%임.
 - 영유아의 연령별 재정 지원 수혜 현황은 유아학비 22.5%, 보육료 49.4%, 양육수당 28.1%로, 0-1세는 양육수당 수혜 비율이 높았고, 2-4세는 보육료 수혜비율이 높았으나 5세는 유아학비 비율이 높았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현황은 0세는 1가지 이용이 2.9%, 2세도 1가지 이용이 10.7%이며, 5세아의 3가지 이상 이용 비율이 15.2%임.

나. 영유아 이용 서비스별 비용

- 유치원 비용 조사 결과, 지불 아동 기준으로 소요 비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유치원 교육과정 소요 비용은 평균 107,680원이며, 방과후 과정비는 전체 62,850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비는 1인당 평균 2.69개, 평균 비용 83,540원, 돌봄 비용 24,460원임.
 - 5월 한달 기준, 유치원 이용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비용 지불 아동 기준으

로 157,120원이며, 비용미지불 아동을 포함하면, 139,280원임

- 어린이집 비용 조사 결과, 지불 아동 기준으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2015년 5월 한 달간의 정규과정 보육료는 약 51,980원, 정규과정 외 시간 연장보육 등 비용은 약 37,770원, 특별활동은 1인당 약 2.63개에 참여하며, 그 비용은 약 62,700원임.
 - 어린이집 이용 전체 비용은 지불아동기준 약 86,850원이며, 미지불아동을 포함하면 81,130원으로 조사됨.
-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자와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한 비율은 전체 조사 대상자 3,075명 중 32.1%임.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는 전체 3,075명 중 1%의 매우 소수임¹⁾. 월평균 비용은 583,450원임. 시간제 학원은 전체 평균 1.11곳을 이용하고, 비용은 109,580원이었고, 학습지 이용은 평균 1.71개, 비용 67,460원, 문화센터는 평균 1.20개, 비용 58,590원, 개인 및 그룹 교습(온라인 학습 등 포함)으로 제공되는 기타 교육·보육서비스의 이용은 평균 1.10개, 비용 94,030원이었음.
- 개별돌봄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이외에 주 1회 이상(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개별 돌봄은 응답자 3,075명 중 약 4.7%가 이용하며 1일 이용시간은 평균 5시간이고, 돌봄 제공자의 약 83.1%는 조부모임. 개별 돌봄 평균 비용은 전체 204,300원으로 나타남.

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 교육·보육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²⁾.
 - 지불기준 아동을 보면, 영유아 1인당 평균 교육·보육비용은 약 162,800원이 고, 중앙값은 120,000원임. 비용미지불 아동을 포함하면, 영유아 1인당 평

1) 표집수가 전체 3,075명 중 1%에 해당하는 매우 소수이므로,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의 연령별 아동수는 통계청 2014.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수치를 사용함.

균 교육·보육비용은 120,900원이고, 중앙값은 80,000원임.

-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보면, 비용지출아동 기준으로 전체 소득대비 약 4.52%, 지출대비 약 5.41%이나, 비용 미지불 아동을 포함하면, 전체 소득대비 3.35%, 지출대비 4.02%로 조사됨.
 - 가구 기준으로 지불 아동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보면,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약 181,300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5.06%, 지출대비 6.05%로 나타남. 미지불아동을 포함한 월평균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은 146,000원이며, 가구소득 대비 4.08%, 지출대비 4.87%로 나타남.
 - 본 조사의 영유아 1인당 평균 교육·보육비용(비용미지불영유아 기준)을 이용하여 통계청 2014년 12월 기준 영유아 수(2014. 12월기준 추계인구 이용하여 보정한 추정치)로 산출한 총 교육·보육비용 규모는 약 3조 8,765억원임.
 - 0세는 1,819억 원 정도이며, 1세는 2,839억 원, 2세는 5,327억 원, 3세는 7,800억 원, 4세는 9,576억 원 정도이며, 마지막으로 5세는 1조 1,394억 원 정도로 나타나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용지출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증가함.
 - 사교육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³⁾.
 - 사교육참여 아동을 기준으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118,200원이고, 전체 아동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월평균 약 37,200원으로 추정됨.
 - 사교육 참여 아동 기준으로 전체 소득대비 약 3.19%, 지출대비 약 3.87%임. 사교육 참여 가구당 사교육비는 전체 소득대비 약 3.34%, 지출대비 4.02%로 나타남.
 - 연간 사교육 총액 추정은 조사 표본의 평균을 이용한 추정과 연간화를 이용하여 규모를 파악하였음.
 - 사교육에 참여한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118,200원이며, 이 같은 지불아동 수를 추계아동인구수를 이용하여 보정 후, 산출한 추정 사교육비
- 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의 연령별 아동수는 통계청 2014.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수치를 사용함.

총액은 1조 2,192억원으로 추정됨.

- 전체 영유아수(2014. 12월기준 추계인구 이용하여 보정한 추정치)를 대상으로 본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산출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7,200원이며, 총액은 1조 2,051억으로 추정됨.
- 연간화계수를 활용한 사교육비는, 사교육참여 영유아(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보정한 추정치)를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은 113,100원이며, 총액은 1조 1,648억원이며, 전체 영유아수(통계청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보정한 추정치 보정)를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은 36,300원이며, 총액은 1조 1,779억으로 추정됨.

4. 의견 조사 및 개선 방안

- 부모(보호자)에게 조사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육·보육비용의 부담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응답보다는 부담스럽지 않다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남.
 - 전년도 대비 비용 증가를 확인한 결과, 증가보다는 유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정부의 원비상한제 규제, 비용 지원 정책 등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이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부모들이 방과후 과정 특성화비와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정부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 부모들은 정부의 유치원, 어린이집 원비 상한제에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금 외에 부모 부담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좋은 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일부 동의함.
 - 정부의 영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정지원이 후속출산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40%대 중반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히 영유아 시기의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응답이 높았음.

- 현재의 재정지원 정책 방향에 찬성하는 비율이 80%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개선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계층을 지원하되 소득 수준별로 차등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5. 정책 시사점

- 유아교육기관 원비 상한제 도입에 따른 관리 지도
- 영유아 시기 '사교육' 개념 정의 필요
- 방과후 과정·방과후 특성화 활동(특별활동) 운영 지침과 비용 지도 점검
- 가정 양육 지원의 재정 지원 외, 육아지원 제도의 적극적 실행
- 지출 비용 차별화 해소 방안
- 국가 수준의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조사 필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 세대들은 국가와 사회의 지지와 보호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 우리나라는 어린 세대 특히,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및 누리과정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이혜원, 2014). 정부의 영유아를 위한 일련의 정책 개발과 시행은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사회의 여러 환경들과 맞물리면서 중요한 화두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이진화·장혜진, 2015).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 가운데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가장 민감한 정책 중 하나는 교육·보육비, 양육수당으로 대표되는 영유아를 위한 재정지원 정책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 고용 증가로 인한 부부의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과 가정 경제 안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결혼 연령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3년 누리과정 만 3~5세 시행과 전 연령의 양육수당 지급 등 전면 확대 시행하였다. 이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시켜 줌과 동시에 사회적인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정책 시행이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우리 사회 특유의 교육열과 맞물리면서 부모의 취학 전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관심과 생애초기 교육과 보육의 공평한 기회 접근이란 사회적 논의가 더해져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책적 의지와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정책 기대 효과 중 하나는 가정경제 부담 완화이다.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 가정양육수당,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를 위한 무상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등의 중요한 목적은 가정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⁴⁾.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자녀의 특성과 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위한 비용 지출이 증가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가정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미취학자녀의 교육·보육을 위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정 경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가정 경제 부담 완화와 연결된 또 하나의 목적은 출산을 제고이다. 즉, 재정 지원 정책으로 가정 경제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후속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신윤정·김지연, 2010).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환경 분석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출산 중단 의 가장 큰 이유는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⁵⁾. 따라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정책으로 출산을 제고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취업부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다(고혜원, 2012). 정부는 영유아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에게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취업부부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한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혜원, 2012; 이해원, 2014; 최성은, 2011; 현재은, 2014). 가정양육수당을 제외한 유아학비, 보육료, 종일제영아돌봄서비스 등은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 영아돌봄을 위한 전문육아도우미를 활용하는 정책이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은 취업부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자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과 그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 즉 '서비스 제공 기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금액'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무엇보다도 교육·보육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3~5세 유아에게 동등한 교육·보육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김병주, 2011). 특히 생애 초기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2012년에 도입되고 2013년에 3~5세로 확대 시행된 무상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2014년 현재에는 우리나라 3~5세 유아의 약

4)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2&PAGE=1&topTitle=보육교육비 지원.pdf(2015. 10. 28. 인출).

5) http://www.mw.go.kr/front_new/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PAGE=2&topTitle=보육정책 환경(2015. 10. 28. 인출).

89.9%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이정원·이혜민,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대효과를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첫째, 출생에서 취학 전에 이르는 영유아의 전 연령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 둘째, 출생에서 취학 전 연령의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정양육을 포함한 이용 기관에 차별을 두지 않고 지원한다는 점 셋째, 3~5세 공통교육·보육과정 즉 누리과정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3~5세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은 부모 지원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영유아 대상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시행으로 3~5세 유아의 기관 취원율 상승(이정원·이혜민, 2014; 최은영·이진화·오유정, 2014), 다소 미미하지만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장윤정, 2012), 저소득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재정 지원으로 가계경비 부담완화 효과를 보이는 점(이윤진·이정원·김문정, 2013) 등 본래의 기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상승하지 않고 있는 출산율, 부모와 영유아의 요구에 적합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공급 부족, 사교육 과열 논쟁(고혜원, 2012;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 2014; 이윤진·이규림·조아라, 2014) 등의 논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와 교육·보육비용 지출 규모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

한편 개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와 그 규모는 우리 사회가 영유아에게 필요한 인간 생애 초기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다시 말해, 가정 경제에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자신들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일정한 질적 수준 이상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비롯한 육아지원기관 외에 아이돌봄서비스⁶⁾,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⁷⁾,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⁸⁾ 등의 다양한 돌봄과 육아지원서비스를 가구소득 대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같은 다양한 교육·보육서비스가 추구하는 목표와 지역 등의 여러

6)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2015. 6. 15. 인출).

7)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2015. 6. 15. 인출).

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socialservice.or.kr>(2015. 6. 15. 인출).

특성 때문에 부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필요에 따라 개별 돌봄이나 교육의 목적으로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부모 지출은 공교육·보육 성격을 가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비용이 있는 반면, 흔히 사교육으로 일컫는 교육·보육 프로그램 이용 비용이 있다. 개별적인 부모의 유아발달 성취에 대한 요구로 인한 이용이든지 혹은 어쩔 수 없는 돌봄의 차원에서의 이용이든지 영유아기 교육·보육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사교육 증가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의 질적 수준 차이를 낳게 되어 소득계층 간 위화감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각 가정의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비용 지출은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영향 뿐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영유아의 특성과 부모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의 증가는 가정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각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행태를 파악해서 다양한 수요자를 고려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적절한 비용 지출을 개도하는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는 첫째,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및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과 둘째, 부모와 영유아의 개인 요구에 의한 교육·보육비용 지출과 그 행태 파악 등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선정하였다. 첫째,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파악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생성하는 것이다. 둘째,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조사 결과와 정부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기본적인 연구내용은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교육·보육

비용을 조사하는 것이다. 가구소득별, 영유아 연령별,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종류 등에 따른 교육·보육비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 규모 및 지출 결정 요인을 파악한다. 또한 정책 수혜자인 부모들의 정부 재정 지원 정책, 교육·보육비용 지출과 관련한 의견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현행 제도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관련 법령, 연구보고서, 관련 부처 자료 등을 토대로 파악한다. 또한 교육통계, 보육통계 등 국가 승인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시행에 따른 미취학 영유아 자녀의 기관 이용 변화, 지원금 수혜 현황 등을 살펴본다.

둘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관련 항목을 가진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을 대상으로 2차 분석을 실시하여 가구별 비용 지출 결정 요인과 경향성을 살펴본다. 또한 일부 선진 국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정부 재정 지원 정책과 국가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사례 등을 고찰하여, 지원 정책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 표집방법, 조사 절차, 조사지 항목변화, 조사대상 특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본 연구 결과의 적용 및 해석 시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넷째, 2015년 4차년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각 항목별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영유아 연령과 가구기준으로 총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하고, 사교육비 규모를 통계적 추정 방식, 연간화과정의 2가지 방식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결과, 개선 사항 및 요구 정도를 알아보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정리한 뒤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고찰

교육·보육비용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비용 지출 결정 요인, 정책 목표 달

성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등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관련 항목을 이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한다. 한편 일부 국외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원 정책과 비교해 본다. 또한 일부 국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본다.

나. 조사연구(가구방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 조사를 위해 가구방문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표 구성

먼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조사를 위해 주요 항목을 검토한다. 조사표 항목 검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 첫째, 본 과제는 연속과제이므로 1~3차 년도와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행연구(서문희 외, 2012; 양미선 외, 2013, 2014)에서 이미 사용한 항목들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므로 당해 연도 4차조사에서 최대한 반영한다. 둘째, 한국복지패널, 여성가족패널, 한국노동패널, 전국보육실태조사 등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 조사 항목들을 검토하여 반영한다(표 I-3-1 참조).

〈표 I-3-1〉 국내 패널자료의 조사 항목

구분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 관련 항목
한국복지패널 ¹⁾	월평균 보육료비(베이비시터, 놀이방 포함, 유치원 제외), 월평균 유치원비, 양육수당, 연간보육료 지원금, 연간 유아학비 지원금, 연간 학비 지원금, 일회성 보육대, 영유아 보충식품지원 이용 여부, 장애아동 또는 장애인 자녀의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이용 여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한 달 평균 보육 비용(교재비, 재료 등 부대비용 포함)
여성가족패널 ²⁾	가구용 설문지: 월 평균 (손)자녀 사교육비(미취학 아동 보육, 초·중·고 자녀 학원비 또는 과외비 등) 여성개인용 설문지: 월 평균 개별 양육 비용(조부모 등),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 이용시 한 달 평균 본인부담금 일자리용 설문지: 직장에서의 보육비 지원 제공 여부 및 혜택 여부, 직장보육시설 제공 여부 및 이용 여부

(표 I-3-1 계속)

구분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 관련 항목
전국보육실태조사 ⁴⁾	가구조사표: 자녀 보육 및 교육 비용(매월 총 비용 및 월 평균 가구소득 대비 비율) 아동조사표: 정규보육료, 교육 이외에 지원받는 월 총액수(시간제 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바우처 또는 학습지 등, 기타 등), 자녀가 다니는 기관 및 시설 입소료 또는 입학금, 월 평균 보육료 및 교육비,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간식비, 종일반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기타 등,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월 평균 총 비용 비율(입학금 제외), 영아 기본보육료, 학습바우처를 제외한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월 보육료, 교육비 면제·감면 혜택 여부와 혜택 자격 및 감면액수, 더 좋은 보육 및 교육을 위하여 추가로 지출할 의사가 있는 월 금액, 보육 또는 교육기관의 특별활동(미술, 음악, 체육 등)의 월 평균 비용, 특기교육을 위하여 다니는 학원, 문화센터 등 시간제 기관의 월 총 비용, 학습지 활용 교육, 개별, 그룹 교육 지도 월 총 비용, 월 평균 조부모 친인척이 자녀를 돌봐주는 비용, 비혈연인이 자녀를 돌보는 경우의 월 평균 비용
한국노동패널 ³⁾	가구용 설문지: 조부모 양육비용, 보육시설 등 한 달 평균 수업료(부대비용 포함), 월 평균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취업자 개인 설문지: 직장에서의 학비 보조 및 보육비 지원과 혜택 여부

주: 1) 2013년 8차년도 패널 자료임.
 2) 2012년 4차년도 패널 자료임.
 3) 2012년 15차년도 패널 자료임.

자료: 1)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www.koweps.re.kr>, 2015. 3. 20. 인출).
 2) 여성가족패널 홈페이지 (<http://klowf.kwdi.re.kr>, 2015. 3. 20. 인출).
 3)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 (<http://www.kli.re.kr>, 2015. 3. 20. 인출).
 4)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셋째, 정부 지원 정책 변화 내용을 반영한다. 교육·보육비용 정책뿐만 아니라 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조사 항목 구성에 반영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고려하여 선정된 2015년도 조사항목과 2014년도 선행연구의 조사항목⁹⁾에서 변화된 내용은 <표 I-3-2>와 같다.

9)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표 1-3-2〉 2015년 조사 항목 변화

구분	2015년도 추가 문항	2015년도 제외 문항
가구 응답자 경제적 특성	취학 전 자녀의 2014년 6월 한 달 대비 2015년 6월 한 달 동안의 교육·보육 지출액 증가 여부, 교육·보육비용 증가(감소) 이유, 증가(감소)한 교육·보육비용 증당(사용)처	-
가구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종일제아이돌보미서비스 지원액	부모의 출신국가·건강상태
교육과정(유아학비 외) 비용 지출현황	교육과정 비용의 납입주기 및 납입증명방법,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유치원비 가이드라인 필요 여부	-
반일제이상학원	종일제아이돌보미서비스를 받는 자녀의 반일제이상학원 이용 여부, 반일제이상학원비용 납입주기 및 납입 증명방법	-
방과후 과정 이용(방과후 특성화 활동 참여 제외)	방과후 과정 관련 문항	-
방과후 특성화 활동	-	-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 지출 부담 및 만족도	-
양육수당 이용 현황	-	-
어린이집 이용 현황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 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지원 안내 여부 및 방법, 보육료 지원 인식경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 사용처 및 사용처 종류에 대한 설명 여부,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사용처에 대해 안내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 및 그 이유, 어린이집에서 추가 납부 금액 사용처 및 사용처 항목에 대한 설명 제공 여부, 추가납입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이유	현재보다 양육수당을 5만원 인상할 경우 어린이집 그만둘 의향, 그만두지 않을 경우 이유 및 그만둘 의향이 있는 양육수당 인상분
유치원의 온종일 돌봄(아침돌봄, 저녁돌봄)	온종일 돌봄 관련 문항	-
유치원 이용 현황	유치원 이용 과정 유형(아침돌봄, 방과후 과정 등) 선택 문항, 유치원에서의 유아학비지원 안내 여부 및 방법,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사용처 등에 대한 안내 여부, 추가 납부 금액 사용처 및 항목에 대한 안내 여부,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 이유	현재보다 양육수당을 5만원 인상할 경우 유치원 그만둘 의향, 그만두지 않을 경우 이유 및 그만둘 의향이 있는 양육수당 인상분

(표 I-3-2 계속)

구분	2015년도 추가 문항	2015년도 제외 문항
정규보육서비스 (필요경비포함)	정규보육서비스의 추가납입주기· 추가납입증명방법	-
정부지원 정책관련	현재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교육, 보 육 기관, 정부지원(양육수당 제외)이 가계지출절감에 도움될 경우 절감 된 금액의 사용처, 정부지원이 가계 지출절감에 도움 안될 경우 이유	-

2015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를 위해 구성된 조사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문항서술의 난이도 및 조사 대상자의 이해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표 I-3-3>과 같이 조사항목 검토를 실시하였다.

<표 I-3-3> 조사표 항목 검토 단계

구분	내용	기간
1단계	원내 연구진 검토	5월 1주
2단계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학부모, 반일제이상학원(놀이학교) 재원 영유아 부모, 유치원 원감 2인 검토, 어린이집 원장 검토(5월 1~2주)	5월 1~2주
3단계	검토 의견 반영하여 조사항목 수정	5월 3주
4단계	조사항목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경제학과 교수)	5월 4주
5단계	IRB 심의 완료	6월 2주
6단계	조사지 구성 완료	6월 4주 ~7월 1주

2) 조사 절차

본 조사를 위해 먼저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조사배경 및 목적, 조사 주요개념 및 항목별 용어 설명 등으로 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였다. 조사원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사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2015년 조사를 위해 구성된 문항의 난이도, 조사 시간, 문항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고 조사원의 이해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사전조사는 임의적으로 대상을 선정하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부모,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원 일부를 대상으로 7월 3주에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총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 조사는 총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영유아조사는 가구의 모든 미취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원은 응답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 참여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7월 4주부터 10월 2주까지 약 11주 동안 진행되었다.

3) 조사 대상 표집

가) 모집단 정의

(1) 목표모집단 정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목표모집단은 “설문조사 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로 정의”한다. 현 시점(2015년 5월)의 0~5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정확한 모집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0~5세”를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내에서 미취학자녀 기준에 부합되는 적격 대상자를 최종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최종 조사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0~5세의 보호자이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가 원칙이며, 조손가정과 같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 아이의 양육을 담당하는 주양육자(예: 조부모)가 최종 대상자이다.

(2) 조사모집단의 정의

2015년 8월 현재 대한민국의 제주도를 제외한 3,508개 행정동¹⁰⁾에 거주하는 20,618,805세대 중 0~5세 아동이 있는 세대로 정의하였다. 본 조사는 승인통계가 아니므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용 조사구(평균 60가구)를 활용할 수 없다. 보조정보로서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현재 대한민국 1세별 추계인구를 활용하였다.

(3) 추출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표본설계 추출틀은 2015년 행정자치부 행정동수 및 세대수를 활용하였다. 조사모집단은 3,508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동은 동부, 읍부, 면부로 구분되어 있다.

10) 행정자치부 ‘전국 행정동 및 세대수’,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

(4) 모집단 분포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세종시 포함)로 1차 층화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모집단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2차 층화하였고, 대도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구'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도시(수원시, 성남시 등)로 정의하였다. 표본추출대상은 가구단위로 본 조사에서는 특정 가구에 0~5세 영유아가 있으면 해당 자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조사완료시까지 조사된 0~5세 영유아의 수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조사완료 후 추정시 보정을 위해 통계청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주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0~5세 영유아 추계인구를 2,706,021명,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총 세대수는 20,618,805세대이므로 세대당 평균 0~5세 영유아수는 약 0.131명이다. 전국(제주도 제외) 16개 시도의 행정동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3-4〉 지역별 행정동 분포

단위: 명

	동부	읍부	면부	합계
서울	423	-	-	423
부산	202	2	3	207
대구	130	5	6	141
인천	131	1	22	154
광주	95	-	-	95
대전	78	-	-	78
울산	44	4	8	56
세종	3	1	9	13
경기	417	34	106	557
강원	74	27	93	194
충북	52	14	87	153
충남	46	24	139	209
전북	82	14	145	241
전남	68	43	211	322
경북	94	40	211	345
경남	121	21	178	320
합계	2,060	230	1,218	3,508

16개 시도별 동·읍·면부별 세대수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3-5〉 지역별, 지역특성별 세대수 분포

단위: 세대

	동부	읍부	면부	합계
서울	4,197,478	-	-	4,197,478
부산	1,371,827	26,909	31,708	1,430,444
대구	906,245	48,965	22,504	977,714
인천	1,103,621	9,654	31,957	1,145,232
광주	577,941	-	-	577,941
대전	595,216	-	-	595,216
울산	362,121	54,956	30,152	447,229
세종	30,585	18,679	23,469	72,733
경기	3,956,935	501,407	371,179	4,829,521
강원	385,967	126,894	167,512	680,373
충북	388,641	120,728	154,817	664,186
충남	368,369	206,542	303,633	878,544
전북	510,359	65,619	202,372	778,350
전남	316,678	194,471	316,115	827,264
경북	575,167	256,471	328,512	1,160,150
경남	872,066	157,733	326,631	1,356,430
합계	16,519,216	1,789,028	2,310,561	20,618,805

16개 지역별 영유아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3-6〉 지역별 연령별 인구분포(남)

단위: 명

지역	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	47,545	41,822	40,657	39,363	41,569	35,216	246,172
부산	12,455	13,825	13,578	13,463	14,269	13,210	80,800
대구	9,852	10,303	10,529	10,492	11,135	10,836	63,147
인천	13,879	14,066	14,042	14,146	14,821	14,038	84,992
광주	7,653	6,946	7,338	7,330	7,892	7,969	45,128
대전	7,611	7,502	7,414	7,665	7,996	7,785	45,973
울산	5,598	6,221	5,992	6,024	6,383	5,893	36,111
세종	916	1,181	1,273	1,281	1,378	1,228	7,257
경기	64,732	61,766	63,891	63,624	68,217	63,861	386,091
강원	5,668	5,951	6,099	6,181	6,590	6,438	36,927
충북	6,979	7,182	7,211	7,430	7,641	7,145	43,588
충남	10,053	10,134	9,965	10,404	10,609	10,230	61,395
전북	7,141	7,783	8,053	8,082	8,702	8,075	47,836

(표 I-3-6 계속)

지역	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남	6,452	7,909	7,869	7,706	8,371	7,107	45,414
경북	10,661	11,908	11,727	11,564	12,261	10,567	68,688
경남	14,506	16,270	16,288	16,340	17,530	16,080	97,014
총계	231,701	230,769	231,926	231,095	245,364	225,678	1,396,533

자료: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표 I-3-7> 지역별 연령별 인구분포(여)

단위: 명

지역	연령						합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	44,430	39,171	38,048	37,122	39,037	34,663	232,471
부산	11,668	12,797	12,710	12,653	13,536	12,073	75,437
대구	9,286	9,811	9,766	9,935	10,363	9,990	59,151
인천	13,045	13,138	13,227	13,207	13,849	13,132	79,598
광주	7,099	6,590	6,605	6,818	7,316	7,469	41,897
대전	7,126	7,058	7,086	6,966	7,490	7,112	42,838
울산	5,264	5,915	5,770	5,500	5,939	5,440	33,828
세종	871	1,198	1,213	1,207	1,321	1,228	7,038
경기	60,471	58,576	59,565	59,884	64,129	60,208	362,833
강원	5,281	5,526	5,642	5,694	6,277	6,083	34,503
충북	6,589	6,921	6,766	7,063	7,224	6,575	41,138
충남	9,398	9,253	9,461	9,711	9,812	9,465	57,100
전북	6,598	7,298	7,453	7,547	8,211	7,530	44,637
전남	6,121	7,553	7,550	7,503	7,843	6,652	43,222
경북	9,828	11,041	10,815	10,742	11,245	10,088	63,759
경남	13,428	15,232	14,997	15,318	16,075	14,988	90,038
총계	216,503	217,078	216,674	216,870	229,667	212,696	1,309,488

자료: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나) 표본설계

(1) 지역별 영유아 연령별 예상 표본의 크기

2014년 표본설계 모집단으로 사용된 보육실태조사(2012년)에 의하면 영유아가구의 평균 영유아수(가구당)는 1.32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영유아가 있는 2,500가구의 조사가 완료되면 약 3,305명의 영유아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영유아 표본의 분포는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 표는 2,500가구 조사완료 후 지역별·성별·연령별 영유아수에 대한 분포가 2012

년과 비교하여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는 조건하에 추정한 것이다.

〈표 I-3-8〉 2,500가구 조사완료 후 지역·성·연령별 영유아 예상 표본 분포

단위: 명

지역	연령 (남)							연령 (여)							총계
	0	1	2	3	4	5	합계	0	1	2	3	4	5	합계	
서울	58	51	50	48	51	43	301	55	48	46	45	48	42	284	585
부산	15	17	17	16	17	16	98	14	16	16	15	17	15	93	191
대구	12	13	13	13	14	13	78	11	12	12	12	13	12	72	150
인천	17	17	17	17	18	17	103	16	16	16	16	17	16	97	200
광주	9	8	9	9	10	10	55	9	8	8	8	9	9	51	106
대전	9	9	9	9	10	10	56	9	9	9	9	9	9	54	110
울산	7	8	7	7	8	7	44	6	7	7	7	7	7	41	85
세종	1	1	2	2	2	1	9	1	1	1	1	2	1	7	16
경기	79	75	78	78	83	78	471	74	72	73	73	78	74	444	915
강원	7	7	7	8	8	8	45	6	7	7	7	8	7	42	87
충북	9	9	9	9	9	9	54	8	8	8	9	9	8	50	104
충남	12	12	12	13	13	12	74	11	11	12	12	12	12	70	144
전북	9	10	10	10	11	10	60	8	9	9	9	10	9	54	114
전남	8	10	10	9	10	9	56	7	9	9	9	10	8	52	108
경북	13	15	14	14	15	13	84	12	13	13	13	14	12	77	161
경남	18	20	20	20	21	20	119	16	19	18	19	20	18	110	229
합계	283	282	284	282	300	276	1,707	263	265	264	264	283	259	1,598	3,305

다) 표본의 할당

(1) 권역별 동·읍·면부별 표본세대의 할당

표본 추출기준 응답자는 미취학자녀이나, 조사적격 대상자는 미취학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되므로, 이 경우 <표 I-3-6>과 <표 I-3-7>을 이용하여 16개 지역별로 표본을 할당할 수 있으나 지역별·성별·연령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 I-3-4>와 <표 I-3-5>를 이용하여 지역을 추출하고 지역내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조사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대도시¹¹⁾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9개 도시로 정의하였으며 동부, 읍부, 면부별로 세대수를 정리하여 총 세대수는 13,247,395개이며 이중 동부의 세대수는 12,717,047개, 읍부의 세대수는 285,418개, 면부의 세대수는 244,930개이다.

11) 도시의 행정구역으로 “구”를 보유한 지역을 대도시로 정의함. 지자체의 구와 비지자체의 구는 분리하지 않음

중소도시는 과천시, 세종자치시 등 64개 도시로 정의하였으며 동부, 읍부, 면부별로 세대수를 정리하여 중소도시의 총세대수는 5,628,180개 이며 이중 동부의 세대수는 3,802,169개, 읍부의 세대수는 789,540개, 면부의 세대수는 1,036,471개이다. 군 지역은 가평군, 양평군 등 77개 군으로 정의하였으며 동부, 읍부, 면부별로 세대수를 정리하여 군지역의 총세대수는 1,743,230개이며 이중 읍부의 세대수는 714,070개, 면부의 세대수는 1,029,160개이다. 부록 7에 제시된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읍면 포함)의 세대수에 비례하여 표본 가구를 할당하였다.

$$n_h = n^* \frac{N_h}{N}$$

여기에서 n : 총 표본의 크기(2,500세대)

n_h : 층 h에 할당된 세대 수

N_h : 층 h의 총 세대 수

N :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총 세대 수

〈표 1-3-9〉 권역별, 동부, 읍부, 면부별 세대수

단위: 세대				
권역	동부	읍부	면부	합계
대도시	12,717,047	285,418	244,930	13,247,395
중소도시	3,802,169	789,540	1,036,471	5,628,180
군	-	714,070	1,029,160	1,743,230
합계	16,519,216	1,789,028	2,310,561	20,618,805

2차 할당은 각 지역에 할당된 표본세대를 동부, 읍부, 면부에 비례할당하였다.

〈표 1-3-10〉 권역별, 동부, 읍부, 면부별 표본 가구수

단위: 가구				
권역	동부	읍부	면부	합계
대도시	1,541	35	30	1,606
중소도시	468	90	124	682
군	-	89	123	212
합계	2,009	214	277	2,500

(2) 동·읍·면 및 세대의 추출

추출된 각 동·읍·면에서 10세대(가구)를 조사하며, 추출된 동·읍·면의 수는 다음과 같다(250개 행정동 × 10세대 = 2,500세대). 대도시의 경우, 행정동을 지역별

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방법을 통해 추출하였다.

〈표 1-3-11〉 권역별 250개 표본 행정동의 분포

단위: 개				
권역	동부	읍부	면부	합계
대도시	154	4	3	161
중소도시	47	9	12	68
군	-	9	12	21
합계	201	22	27	250

라) 추정식

(1) 연속형변수(교육비용, 지원금액, 구입한 비용 등)의 평균 추정식

○ 전국 평균 및 분산 추정식

$$\bar{y}_{st} = \sum_{sex} \sum_{age} w_{sex,age} \bar{y}_{sex,age}$$

$$Var(\bar{y}_{st}) = \sum_{sex} \sum_{age} w_{sex,age}^2 \frac{N_{sex,age} - n_{sex,age}}{N_{sex,age}} \frac{1}{n_{sex,age} - 1} \sum_{i=1}^{n_{sex,age}} (y_{sex,age,i} - \bar{y}_{sex,age})^2$$

○ 남(여)아 평균 및 분산 추정식

$$\bar{y}_m = \sum_{age=0}^5 w_{m,age} \bar{y}_{m,age}$$

$$var(\bar{y}_m) = \sum_{age=0}^5 w_{m,age}^2 \frac{N_{m,age} - n_{m,age}}{N_{m,age}} \frac{1}{n_{m,age} - 1} \sum_{i=1}^{n_{m,age}} (y_{m,age,i} - \bar{y}_{m,age})^2$$

(2) 평균의 상대표준오차 추정식

○ 전국 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frac{\sqrt{var(\bar{y}_{st})}}{\bar{y}_{st}} * 100(\%)$$

○ 남(여)아 평균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frac{\sqrt{var(\bar{y}_m)}}{\bar{y}_m} * 100(\%)$$

위 식에서

- $w_{sex,age}$: 성별 연령별 가중치. 별첨 가중치1참고
- $n_{sex,age}$: 성별 연령별 표본의 크기
- $N_{sex,age}$: 성별 연령별 모집단 크기
- \bar{y}_{st} : 전체 표본평균
- $\bar{y}_{m,age}$: $\frac{1}{n_m} \sum_{age=0}^5 \bar{y}_{m,age}$ 남아의 연령별 표본 평균
- $w_{m,age}$: 남아의 연령별 가중치
- $n_{m,age}$: 남아의 연령별 표본의 크기
- n_m : $\sum_{age=0}^5 n_{m,age}$ 남아의 총 표본 크기

(3) 비율의 추정식

- 전국 비율 및 분산 추정식

$$\hat{p}_{st} = \sum_{sex} \sum_{age} w_{sex,age} \hat{p}_{sex,age}$$

$$Var(\hat{p}_{st}) = \sum_{sex} \sum_{age} w_{sex,age}^2 \frac{N_{sex,age} - n_{sex,age}}{N_{sex,age}} \frac{1}{n_{sex,age}} \hat{p}_{sex,age} (1 - \hat{p}_{sex,age})$$

- 남(여)아 평균 및 분산 추정식

$$\hat{p}_m = \sum_{age=0}^5 w_{m,age} \hat{p}_{m,age}$$

$$Var(\hat{p}_m) = \sum_{age=0}^5 w_{m,age}^2 \frac{N_{m,age} - n_{m,age}}{N_{m,age}} \frac{1}{n_{m,age}} \hat{p}_{m,age}^* (1 - \hat{p}_{m,age}).$$

(4) 비율의 95% 신뢰구간

- 전국 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

$$\hat{p}_{st} \pm 1.96 * \sqrt{var(\hat{p}_{st})}$$

- 남(여)아 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

$$\hat{p}_m \pm 1.96 * \sqrt{var(\hat{p}_m)}$$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추정하였다.

다. 심층면담

조사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원장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문항 내용과 이해 정도를 파악하였다. 심층면담은 조사지 항목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부모 대상으로 정부지원 유아교육·보육비로 인한 가계경비절감, 사교육비 지출요인, 정부 재정 지원 개선 및 요구 사항,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운영, 추가경비지출 등의 내용을 중심하였다.

〈표 1-3-12〉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구분	대상	내용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전문가	정부지원 유아교육·보육비로 인한 가계경비절감, 사교육비 지출요인, 정부 재정 지원 개선 및 요구 사항, 특별활동(특성화 활동) 운영, 추가경비지출 양육수당 등

라. 자문회의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및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시작 초기 단계의 자문회의는 2015년 조사 방향 및 조사표 구성 등을 논의하였다. 정책실무협의회는 조사항목 분류와 추정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 교육·보육비용 담당자와 협의를 가졌다. 연구 보고서 마무리 단계에서 본 연구의 정부 정책 기여도를 높이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해 내기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관련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의 가구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육아정책연구소의 IRB 심의 규정에 따라 연구목적, 내용, 방법 및 조사 항목 등에 대해 IRB 심의를 완료하였다.

마. 자료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영유아 이용 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은 각 서비스의 세부 항목별 지출 비용을 기준으로 평균과 중앙치를 산출한다. 또한 각 이용 교육·보육서비스의 전체 소요 비용은 조사 응답자가 기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는 영유아가 이용하는 하나의 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이 몇 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모든 영유아가 동일하게 세부 항목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치원비용은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방과후특성화비, 돌봄비 등의 세부 항목으로 나뉠 수 있는데, 유치원을 이용하는 모든 유아가 위의 항목에 모두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각의 항목과 총액은 각각의 응답표본을 기초로 산출한다.

둘째, 표본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고, 가구특성, 부모 및 영유아 특성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의 관련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차이분석(t 검증, f 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과 사교육비용의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조사된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령별 모집단을 추정한 교육·보육비용을 산출한다. 또한 연간화 과정으로 월평균 지출 비용을 산출하고, 그에 따른 연간 지출 규모를 추정한다.

4. 선행연구

가. 국내연구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은 미취학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으로 정부지원금과 개인 가구별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정부지원인 무상유아교육·보육비 현황, 정책목표, 정책수요자의 인식 등과 개인 가구가 지출하는 사교육현황 및 비용 등을 추정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전반을 살펴본 연구로 서문희 외(2012), 양미선 외(2013, 2014)의 연구가 있다. 먼저 서문희 외(2012)는 전국 125개 지역 총

2,523가구(영유아 3,392명)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아동 1인당 월평균 교육·보육비용과 사교육비를 산출하였고, 전체 가구소득 대비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이어 진행된 양미선 외(2013, 2014)에서도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유사한 항목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정책부분을 반영하여 조사하였으며, 양미선 외(2014)는 1~3차년도의 교육·보육비용 변화추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면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의 선별적 지원으로의 전환, 유치원 교육비 수납 기준 마련,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원비 공시 정보의 정확성 도모,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상한선 제도 개선, 문화센터의 영유아 대상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정책 제언을 하였다.

한편 한국아동패널, 통계청, 한국복지패널, 한국노동패널, 여성가족패널, 전국보육실태조사 등과 같은 국가승인 통계에서는 매해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그 경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사교육비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아동패널은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서비스 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육아 및 교육비를 조사하고 있고, 정규교육비 중 초등교육비에 유치원비를 포함하고 있다(김양분·양수경·박성호, 2012). 또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자녀양육비용 항목에서 교육·보육비용을 조사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3차년도 조사에서부터 교육비를 포함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비용과 함께 사교육·보육이용 실태 및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패널자료는 비용추정 및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예: 고희원, 2012; 백학영·안서연, 2012; 이해원, 2014; 최성은, 2011; 현재은, 2014).

전국보육실태조사는 3년 주기마다 이루어지는 데, 가장 최근 조사인 2012년 조사(서문희·양미선·김은설 외, 2012)에서 영유아 및 부모 특성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및 비용, 사교육비 지출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 영유아 가구의 총 보육교육 비용은 월평균 261,300원, 가구소득대비 6.6%로 나타났고, 아동 1인당 비용은 208,700원이었다. 순 교육·보육기관 이용 시 순 교육·보육비는 78,900원, 추가 비용은 82,700원으로 조사되었고, 어린이집·유치원·반일제이상학원 이용 영유아 65.5%가 특별활동을 받고 있고, 약 66,700원 비용을 지출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연구들을 보면, 신윤정·김지연(2010)은 자녀 양

육비용 추계와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하면서, 자녀양육비용 추계액이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교육비 지출이 자녀 양육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녀 양육비용 중 교육비 비중이 큼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노력으로 보편적인 수준의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출발선상에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해주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교육·보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박정수·김혜원(2004)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면서 향후 2010년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추계하였다. 또한 김병주(2011)는 만 5세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즈음하여 만 5세 무상교육 비용을 2016년까지 매해 단계적으로 추정하면서 정부에서 추정한 비용과 비교를 통해 재정 지원 규모와 재정 재원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안하였다. 이 두 연구들은 정부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공교육·보육비용을 추계한 연구로 당해 연도 비용을 추정한 연구와 차이는 있으나, 비용 추정 연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소요될 교육·보육비용 재정을 추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연구이다.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사교육비 포함) 지출 결정 요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을 변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구 혹은 부모와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서 비용 지출이 결정될 수 있고, 정책 변화로 인한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인해라도 비용 지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하면서 서문희 외(2012), 양미선 외(2013, 2014)는 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1~3차년도에서 공히 반일제이상학원이용, 아동연령, 가구소득이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5세 누리과정 도입 이후 교육·보육 지출 비용 변화를 분석하면서, 이운진 외(2013)는 정부지원금 수령으로 인해 교육·보육지출비용이 지역별, 가구소득별로 절감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정부지원인 교육·보육비 정책 자체가 가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지출 비용 결정 요인을 분석한 김진미(2012)는 가구소득이 비용 지출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에서 사교육비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백학영·안서연(2012)은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 소비 지출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가구소득과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이 두 요인이 비용 지출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유아의 사교육비를 조사한 이재아(2011)는 첫 자녀의 연령, 자녀수, 가구주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모의 취업여부가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경선·김주후(2010)는 연령이 높고 유아 수가 적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가구주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 가구주의 학력, 가구소득이 사교육 참여와 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가구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 11차 자료를 이용한 권경림(2013)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이상인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자녀수, 가구소득, 어머니의 학력이 사교육비 지출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자녀연령, 가구소득, 부모학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으로 인한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는 보다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교육보육비용 2차 자료 분석

2012년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보육 지출 비용을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 가구 7,262 중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816가구이고 이들 가구의 전체 영유아 수는 1,029명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4-1]의 보기 항목에서 '(10)국공립 어린이집~(13)직장보육시설'에 지출하는 비용을 보육비로 분류하고 '(14)정규유치원(4시간)~(16)종일제 유치원(8시간)'에 지출하는 비용을 교육비, '(5)학원~(7)학습지, (17)어학연수~(20)기타'에 지출하는 비용을 사교육비로 분류하여 가구당 교육·보육 지출 비용과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 지출 비용을 산출하였다.

※ 다음은 교육, 학원, 과외, 학습지, 유치원 등 공식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혹은 양육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9] 귀댁의 자녀는 <보기>와 같은 교육(혹은 탁아)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집보리, 프리벨 등은 집으로 오면 (6)개인 그룹과의 학원으로 가면 (5)학원, 백화점에서 하면 (19)문화센터로 적어주시고, 유치원은 (9), (9), (9) 중에서 구분하여 적어주시시오.)

<보기>

(1) 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10)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 어린이집
(2) 비동거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	(11) 민간 어린이집
(3) 동거하고 있는 타인(아보노아중아 과육부 등)	(12)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4) 비동거하고 있는 타인(아보노아중아 과육부 등)	(13)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5) 학원	(14) 정규 유치원 (4시간)
(6) 개인·그룹과외	(15) 시간연장제 유치원 (6시간)
(7) 학습지	(16) 중앙제 유치원 (종시간)
(8) 방과후 교내 보습학습 (만6세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습학습을 하는 경우)	(17) 어학연수(영어캠프 포함)
(9)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 회화기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습학습 등을 하는 것)	(18) 인터넷(온라인 교육) 유료 강좌(EBS TV 등 의 강좌 포함)
	(19) 문화센터
	(20) 기타

(1) 이용한다
(2) 이용하지 않는다 → 문19-3.로 가십시오.

[문19-1] 그렇다면, 위의 <보기> 중 어떤 것을 이용하십니까? 모두 적어주시시오. (1~4까지는 조종하고 6학년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10~16까지는 미취학아동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19-2] 수업료는 해당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까지 포함되어 답해 주십시오.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0원으로 기입해주시시오.)

■ 수업료(부대비용 포함) : 한달 평균 _____ 만원

자료: 한국노동패널(2012). 15차 가구 조사표.

[그림 1-4-1] 한국노동패널 자녀 양육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표

노동패널 표본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교육·보육비용 평균 지출은 <표 1-4-1>과 같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를 전체 합하여 소득 분포에 따라 평균 지출 비용을 산출하면,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190,000원, 500만원 이상 계층은 월평균 366,000원으로 나타났다.

<표 1-4-1> 한국노동패널 소득 분포 및 비용 지출

단위: %, 가구, 원

소득 구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교육비	보육비	사교육비	합계
200만원 미만	42.6	9.3	17.1	16.1	8.7	19.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9.3	11.5	20.5	15.2	11.1	19.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7	12.4	21.1	19.0	14.5	22.6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9.4	15.9	23.2	20.7	17.8	24.8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6	9.1	26.4	19.9	15.8	25.7
4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6.5	11.3	32.8	25.9	18.9	36.6
4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1	5.8	31.1	25.3	21.4	33.2
500만원 이상	15.8	24.8	39.4	21.3	23.4	36.6
합 계	100.0(7,262)	100.0(816)				

주: 본 연구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5차 가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5차 가구 조사 데이터

다음으로 201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보육비를 분석하였다. 전체 7,048가구 중 미취학 영유아가 있는 가구는 678가구이고 영유아 수는 922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문항 중 아동가구의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부분에서 만 0~17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 기관 이용 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그림 I-4-2 참조).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보육 기관을 3개 선택하여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한 사교육비와 보육비를 조사하고, 유치원비를 사교육비 범주에 포함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표본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교육·보육비용 평균 지출은 영유아 가구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보육비와 사교육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와 사교육비 전체를 합하여 소득 분포에 따라 평균 지출 비용을 산출하면, 2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159,000원으로 나타났고, 500만원 이상 계층의 월평균 교육·보육비용은 278,000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영유아 922명과 678가구의 조사 결과는 다음 <표 I-4-2>와 같다.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은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②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 보 기 >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민간어린이집(법인·단체등어린이집 포함) ④ 가정어린이집(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⑤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설치한 어린이집) ⑥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⑦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⑧ 학원 ⑨ 개인·그룹과의	⑩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⑪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민6세 이상으로 학교 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⑫ 방과후 교실(민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⑬ 진·인척(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⑭ 이웃(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 ⑮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 ⑯ 민간 아이 돌보미 ⑰ 기타(적용 것 : _____) ⑱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선교원, 문화센터 등)	

자료: 2014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 조사표.

[그림 I-4-2] 한국복지패널 사교육과 보육 기관 이용 실태 조사표

〈표 1-4-2〉 한국복지패널 소득 분포 및 비용 지출

단위: %

소득 구간	전체 가구	영유아 가구	보육비	사교육비	합계
200만원 미만	48.4	16.2	11.2	4.7	15.9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7.3	5.8	12.1	10.3	22.4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2	9.1	11.0	6.4	17.4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6.1	9.7	13.5	6.8	20.3
35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4	11.7	12.4	7.0	19.4
400만원 이상 450만원 미만	4.7	9.7	12.9	5.8	18.7
4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8	6.3	13.5	6.9	20.4
500만원 이상	18.1	31.4	14.4	13.5	27.8
합 계	100.0(7,048)	100.0(678)			

주: 본 연구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9차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복지패널 9차 조사 데이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는 무상 유아교육·보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갖춘 연구가 필요하다.

나. 국외 사례

1) 영유아기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다른 국가들 역시 영유아기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요구가 맞물리면서 영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이 증가하고 있다(Del Boca, 2015). Del Boca(2015)는 OECD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 간의 취원율 편차가 있으나, 만 0~2세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취원율은 약 33%에 이르며, 덴마크, 아이슬란드, 한국과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2012년 OECD 조사에서 나타난 3~5세 취원율은 OECD 평균 3세 70%, 4세 84%, 5세 94%였으며, 유럽연합(EU) 평균은 3세 79%, 4세 89%, 5세 94%로 나타났다.¹²⁾

이와 같은 영유아기의 높은 취원율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수입 등과 같은 경제 상황 및 사회 여건과 각국의 재정 지원 정책이 높은 관련이 있다. OECD family Database 2012년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가 지출하는 순

12)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http://www.oecd-ilibrary.org>, 2015. 6. 11. 인출).

교육·보육비용이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각각에서 OECD 평균 27.6%보다 낮은 14.9%로 나타났다¹³⁾. OECD는 각 나라별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유아교육 기관 유형이나 특성 등의 여러 요인들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양미선 외(2014)는 OECD 조사의 우리나라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낮은 것은 소득수준과 관계없는 정부 재정지원 정책 때문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몇몇 국가의 영유아기 교육·보육 서비스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사례를 살펴보겠다.

가) 뉴질랜드¹⁴⁾

뉴질랜드의 영유아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은 보육지원(Childcare Assistance)으로 불리우며, Childcare Subsidy, Guaranteed Childcare Assistance Payment(GCAP), Early Learning Payment와 20 Hours ECE가 있다. 이 외에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Out of School Care and Recreation(OSCAR)이란 5세~14세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 있다.¹⁵⁾ 여기서는 영유아기에 해당되는 지원 정책을 보겠다.

먼저 Childcare Subsidy는 Preschool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최대 9시간에서 최대 5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에 최대 9시간까지는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생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하다. 다음으로 Guaranteed Childcare Assistance payment(GCAP)는 젊은 부모로써 Young Parent Payment를 받으면서 학업 중이거나 직업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5세 이하의 자녀들의 주당 50시간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Childcare Subsidy와 GCAP는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Early Learning Payment는 Family Start 혹은 Early Start Programme에 신청을 한 경우, 18개월부터 3세까지 자녀를 위한 지원금을 받는 정책이다. 인가받은 유아교육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하며 주당 15-20시간까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재정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영유아는 위의 두 지원 정책을 동일한 시간으로 신청하지 못한다.

13)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http://www.oecd-ilibrary.org>, 2015. 6. 11. 인출).

14) Ministry of Education(2015). Welcome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Handbook of funding). www.lead.ece.govt.nz, 2015. 6. 11. 인출하여 발췌 및 요약).

15)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Work and Income(2015). <http://www.workandincome.govt.nz>, 2015. 6. 11. 인출).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 Hours ECE'와 'Plus 10 ECE'이다. '20 Hours ECE'는 3, 4, 5세 대상으로 유아 1인당 하루 최대 6시간, 일주일(7일 기준) 동안 20시간을 지원한다. 20시간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하루 최대 6시간이며, 일주일(7일 기준) 동안 30시간을 지원한다. 'Plus 10 ECE' 지원 정책은 일주일(7일 기준)동안 유아 1인당 최대 30시간을 지원할 수 있는데, '20 Hours ECE'에 덧붙여서 10시간을 추가로 지원 받는 정책으로 30시간을 지원하는 정부재정 지원은 '20 Hours ECE'과는 지원금의 지급률에서 차이가 있다.

각 유아의 이용시간은 'Funded Child Hours(FCHs)'로 확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아의 이용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다니는 유아의 경우는 아무런 통보나 이유없이 3주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상실되며,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유아는 이용시간을 기초로 지원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Equity Funding', 'Annual Top-Up for Isolated Services(ATIS)'가 있다. 먼저 'Equity Funding'은 특정한 지역사회의 영유아들이 유아교육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높여주기 위한 지원 정책이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ECE의 특정한 허가 기준에 충족되면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 시기는 일년에 3차례 동일하다. 이와 더불어 Annual Top-Up for Isolated Services(ATIS)는 지역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곳의 소규모의 유아교육기관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지역의 고립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1.65 혹은 그 이상이면, 매해 20,000달러 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는데, 매해 7월경에 받는다. 이 지원금을 수혜받아도 'Equity Funding', '20Hours ECE'를 지원받을 자격은 유효하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은 가족의 자녀 수와 주당 총 수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그림 I-4-3 참조).

Number of dependant children	Weekly household income thresholds	If you have	And your family's weekly income before tax is less than	The subsidy per child per hour is up to
One	less than \$1,400	1 child	\$1,200	\$4.00
		1 child	\$1,300	\$2.79
Two	less than \$1,600	1 child	\$1,400	\$1.55
		2 children	\$1,380	\$4.00
Three or more	less than \$1,800	2 children	\$1,490	\$2.79
		2 children	\$1,600	\$1.55
		3+ children	\$1,540	\$4.00
		3+ children	\$1,670	\$2.79
		3+ children	\$1,800	\$1.55

자료: Working For Families(2015). Income thresholds. <http://www.workingforfamilies.govt.nz>, 2015. 6. 11. 인출).

[그림 I-4-3] Childcare assistance 자격 및 지원금 지급기준

영유아 이용 기관이 인가된 시설이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조건과 함께 부가적으로 첫째, 유아교육기관이 종일제인지 아닌지의 여부 둘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충족시키는 정규 직원(Regulated Staff) 중에서 등록 교사(Registered Teachers) 비율 셋째, 유아교육기관 재원 아이 연령 넷째, 유아교육기관이 20시간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여부이다.

나) 영국¹⁶⁾

영국 정부는 Childminders와 유아원(nurseries)의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용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승인된 교육·보육(approved childcare provider)을 이용하는 것을 기본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승인기관은 각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 교육부(Dept. of Education)에 등록된 독립적인 형태의 기관, 가정보육협의(home care agency)에 등록된 가정보육(home careworkers)서비스이다.

영유아들의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 지원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2-4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보육비용 지원이며, 이 외에도 사업주의 세금감면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거나, 20세 미만의 학생인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2-4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교육·보육(Free childcare and education for 2 to 4-year-olds)을 보면, 영국(England)의 모든 3, 4세 유아는 일 년 중 570시간을 무료로 유아교육 혹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으로 일 년의 약 38주 정도에 해당된다. 3, 4세를 위한 이 제도는 가족이나 자녀의 여건에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충족하면 2세아도 무료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

다음은 학생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15세 미만(특수한 요구를 가진 즉 장애가 있는 경우는 17세 이하) 자녀를 가진 학생(full-time)을 위해서 일종의 장학금과 같은 형태로 보육장학금(Childcare Grant)을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대상 학생부모의 가구 수입, 교육·보육비용,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4-2015년 기준으로 아이가 한명인 경우 주당 150.23파운드,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주당 257.55파운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15-2016년에는 아이가 1명인 경

16) GOV.UK(2015). 'Help paying for childcare'에서 발췌 및 요약정리(www.gov.uk, 2015. 6. 12. 인출).

우 주당 155.24파운드,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는 266.15파운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년에 3회로 나누어 해당 학생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형식이다. 이 외에도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자녀를 가진 20세 미만의 부모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Care to Learn'이란 제도로 교육·보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고용인의 복지 지원 정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고용인들의 교육·보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용주는 정부로부터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직장 유아원 (workplace nursery)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직장 어린이집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직장 유아원에 준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외부의 교육·보육제도 혹은 바우처를 제공하는 경우 역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교육·보육비용을 고용인의 급여에 더해서 지급할 수도 있고, 급여 총액 기준으로 개인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 캐나다

캐나다는 각 주마다 보육비용정책(Childcare Subsidy)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몇몇 주의 사례를 보면, 우선 앨버타주의 Ministry of Human Services에서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육비용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용 지급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에 맞는 가정은 인가된 혹은 승인된 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을 12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할 경우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다음의 [그림 I-4-4]와 같다(Alberta Human Services, 2015).

Current child care subsidy rates for eligible families living in all Alberta regions, except the Northeast Alberta CFSA region. Subsidy Rates (up to a maximum of):			
Infant (1-18 mos)	Toddler (19 mos) to kindergarten		Grades 1 thru 6
Day Care/Out-of-School Care	\$628	\$546	\$310
Family Day Home and Group Family Child Care	\$520	\$437	\$310
Extended Hours	\$100		
Stay-at-Home Parent	\$1,200 (max. per year)		N/A
Kin Child Care Funding	\$400		\$200

자료: Alberta Human Services(2015). Alberta Human Services(2015). Child Care Subsidy Rate..www.humanservices.alberta.ca, 2015. 6. 13. 인출).

[그림 I-4-4] 캐나다 앨버타주 보육 비용지급 비율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는 부모가 현재 직업을 갖고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직업을 갖기 위한 교육에 참여하거나,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혹은 Delegated Aboriginal Agency의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 추천된 부모 등의 조건을 충족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2015). 지원금은 기관의 승인 유무, 기관유형, 자녀의 연령, 이용 시간 수, 가족의 총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보육비용 지원금은 교육·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제공자에게 주정부에서 직접 전달하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의 경우는 부모가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부모를 통해서 지급 가능하며,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보육비용 지원 비율은 비교적 상세하다(그림 I-4-5 참조).

Type of Child Care	4 Hours or Less Daily unless both before and after school care provided		More than 4 Hours Daily or both before and after school care provided	
	\$ Per Day	\$ Per Month	\$ Per Day	\$ Per Month
Subsidy Rates for Licensed Child Care Settings				
Licensed Group Care				
G1 – Group (0 – 18 months)	18.75	375.00	37.50	750.00
G2 – Group (19 – 36 months)	15.90	317.50	31.75	635.00
G3 – Group (children who have reached 37 months of age but who have not reached school age)	13.75	275.00	27.50	550.00
G4 – Group (children of school age)	10.38	207.50	20.75	415.00
Licensed Family Child Care				
J1 – L Family (0 – 18 months)	15.00	300.00	30.00	600.00
J2 – L Family (19 – 36 months)	15.00	300.00	30.00	600.00
J3 – L Family (children who have reached 37 months of age but who have not reached school age)	13.75	275.00	27.50	550.00
J4 – L Family (children of school age)	10.38	207.50	20.75	415.00
L1 – Licensed Preschool (children who have reached 30 months of age but who have not reached school age)	11.25	225.00	-	-
Subsidy Rates for Licence Not Required Child Care Settings				
F1 – LNR Family (0-18 months)	10.95	219.00	21.90	438.00
F2 – LNR Family (19 - 36 months)	10.10	202.00	20.20	404.00
F3 – LNR Family (37 months and over)	8.85	177.00	17.70	354.00
Subsidy Rates for Registered Licence Not Required Child Care Settings				
R1 – R Family (0 - 18 months)	15.00	300.00	30.00	600.00
R2 – R Family (19 - 36 months)	15.00	300.00	30.00	600.00
R3 – R Family (children who have reached 37 months of age but who have not reached school age)	13.75	275.00	27.50	550.00
R4 – R Family (children of school age)	10.38	207.50	20.75	415.00
Subsidy Rates for In Child's Home Child Care Setting				
H1 – (1 st child - 0 - 18 months)	9.85	197.00	19.70	394.00
H2 – (1 st child over 18 months)	7.95	159.00	15.90	318.00
H3 – (2 nd child - 0-18 months)	4.95	99.00	9.90	198.00
H4 – (each additional child, including 1 st child of school age if another child in the family, younger than school age, is in category H1 or H2)	3.68	73.50	7.35	147.00
L2 – children of school age except if considered the 'additional child'	8.75	175.00	10.50	210.00
Subsidy Rates for Care Surrounding School Day				
L2 – all children of school age except children in Child's Own Home Child Care Setting considered the 'additional child'	8.75	175.00	10.50	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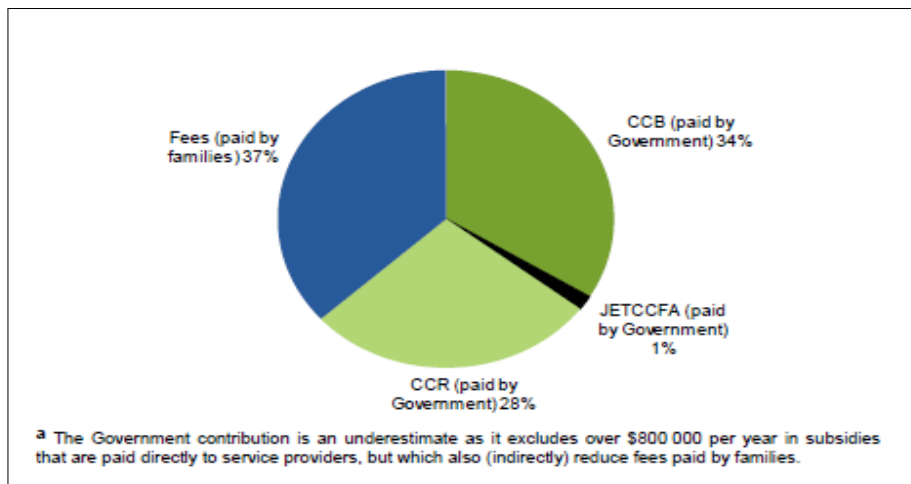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2015). Child Care Subsidy Rate. <http://www.mcf.gov.bc.ca>, 2015. 6. 13. 인출).

[그림 I-4-5] 브리티시 콜럼비아 보육비용 지원 비율

한편 캐나다의 토론토¹⁷⁾에서 제공하는 보육비용 지원은 인가된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는 가정에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살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으로 학업 혹은 직장을 다니거나 진학 예정인 부모는 이용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토론토시의 재정 지원의 근거는 자녀 수와 가족의 총 수입이다.

라) 호주¹⁸⁾

호주 정부는 재정지원 정책으로 교육·보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1-4-6 참조). 호주의 재정 지원 정책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Child Care Benefits(CCB), Child Care Rebate(CCR), Job, Education, Training Child Care Fee Assistance(JETCCFA) 등이 대표적이다.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Learning. p. 451 [그림 11.1]

[그림 1-4-6] 호주 부모의 ECEC 비용 부담 정도

먼저 Child Care Benefit(CCB) 제도는 인증된 유아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가정의 소득에 기초해서 지원금을 산출하여 해당 가정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

17) 토론토시 홈페이지 <http://www.toronto.ca>, 2015. 6. 13. 인출.

18) 호주 정부 홈페이지 <http://www.mychild.gov.au>(2015. 6. 13. 인출)에서 아동교육·보육재정 지원 정책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함.

부담을 줄이도록 구성되어 있다. CCB 비율과 금액은 부모의 수입,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이용 이유, 돌봐야 하는 자녀 수 등을 근거로 해서 정해진다. 특히 호주 정부는 아동기 건강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각 연령에 해당되는 예방접종을 CCB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2016. 1. 시행 예정). CCB는 매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 1일자에 부모는 자신의 수입을 근거로 수혜 가능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매해 부모가 혜택을 받게 되는 CCB의 비율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CCR(Child Care Rebate)은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한 아이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의 50% 정도를 보전해 주는데, CCR은 가구의 소득에 따른 지원이 아닌, 가구의 지출에 대한 지원이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서 CCB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CCR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지출의 50%로 한 아동 당 호주 달러로 7,500달러까지 지원된다.

한편 JET(Job, Education and Training) Child care assistance는 현재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교육 혹은 직업을 위해 교육을 받는 상황에 놓여있는 부모의 자녀들을 위해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부모가 지출해야 할 교육·보육과 CCB로 인해 지원받은 금액 사이의 차액에 대한 지원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JET(Job, Education and Training) Child care assistance 비용체계가 달라진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주당 50시간까지 지원한다.

마) 미국¹⁹⁾

미국의 정부 재정 지원 정책은 부모와 함께 교육·보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의 약 60%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부담한다. 2014년 현재 약 2.6백만명의 어린이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헤드스타트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매해 8억달러 규모로 연방정부 보조금 자격에 적합한 가정의 영유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재정지원 정책으로는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CCDBG), 세금감면제도(Tax Credits), 기업체 혹은 자선단체 기금 등이다.

우선,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CCDBG)는 교육·보육비용의

19) Childcare Aware of America(2014). Parents and the high Cost of Child Care 2014 Report. 에서 발췌하여 요약.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연방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주에 월별로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을 위해 보조금 혹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때 부모 부담은 교육·보육비용의 약 10% 정도이다. 약 1.7백만명 어린이들이 이 제도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 증가율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주정부는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CDBG는 인가 혹은 승인받지 않은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이 비인가 혹은 비인증된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비인가 혹은 비인증된 시설들은 정규적인 평가인증 혹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서 낮은 수준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은 세금감면제도이다. 부모와 기업체는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여러 종류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세금감면혜택은 주마다 다르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이 외에도 약 1%미만으로 교육·보육비용을 위한 기업체와 자선단체 기부금으로 인한 재정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몇몇 국가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영유아와 부모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의 일부 주에 비해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사례에서는 재정지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승인 혹은 인가된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4년 보고서에서 미인가 혹은 미승인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질적으로 낮은 서비스 수혜가 학령기 이후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우리나라에게도 정책 시행에 중요한 시사점으로 고려될 수 있다.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조사 사례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정도는 한 가구의 가계 예산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나라별로 영유아기의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영국, 미국, 호주 3개국의 국가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가) 영국²⁰⁾

영국은 Family and Childcare Trust에서 매해 교육·보육비용과 접근성을 조사해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매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인 Family Information Services에서 수집한 교육·보육비용과 접근성과 관련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 해당 기구는 2008년부터 조사된 교육·보육비용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2015년 비용조사 결과는 첫째, 2세 이하의 아이를 유아원에 시간제(25시간)로 등록한 경우, 현재 주당 115.45파운드를 지출해야 하며 연간으로는 6,003파운드로 2014년 이후 5.1% 상승하였다. Childminders가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경우 역시 4.3%정도 상승하여 주당 104.06파운드, 연간 5,411파운드를 지출해야 한다. 보육비용은 인플레이션 비율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인구 분포를 고려했을 때, 2세 미만의 유아의 유아원 시간제(25시간)이용 비용은 지난 년도 국회 회기 연도 대비 32.8% 증가하였다. 둘째, 2세 이상의 유아원 이용 비용 역시 4.1% 증가하여 주당 109.83파운드였고, 동일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Childminder는 약 2.5% 상승하여 103.04파운드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Region/Nation	Nursery 25 hours (under 2)	Nursery 25 hours (2 and over)	Childminder 25 hours (under 2)	Childminder 25 hours (2 and over)	After-school club 15 hours	Childminder after-school pick up
East of England	£110.93	£107.43	£120.88	£120.43	£49.46	£57.87
East Midlands	£118.82	£107.74	£92.20	£90.54	£48.20	£72.13
London	£152.06	£140.64	£146.31	£144.27	£53.65	£89.94
North East	£110.49	£107.08	£96.03	£95.48	£49.67	£62.01
North West	£106.14	£102.27	£91.55	£89.94	£43.03	£52.11
South East	£133.27	£128.17	£114.21	£112.67	£52.03	£65.63
South West	£114.72	£108.87	£101.50	£101.10	£49.16	£60.53
West Midlands	£112.77	£110.20	£94.68	£94.08	£43.18	£62.22
Yorkshire and Humberside	£96.47	£92.37	£90.12	£88.83	£42.84	£64.14
England regional average	£117.30	£111.64	£105.28	£104.15	£47.91	£65.18
Scotland average	£110.01	£99.93	£100.37	£99.30	£49.03	£64.57
Wales average	£104.32	£103.44	£96.81	£96.81	£49.74	£59.97
Britain average of regions and nations	£115.45	£109.83	£104.06	£103.04	£48.18	£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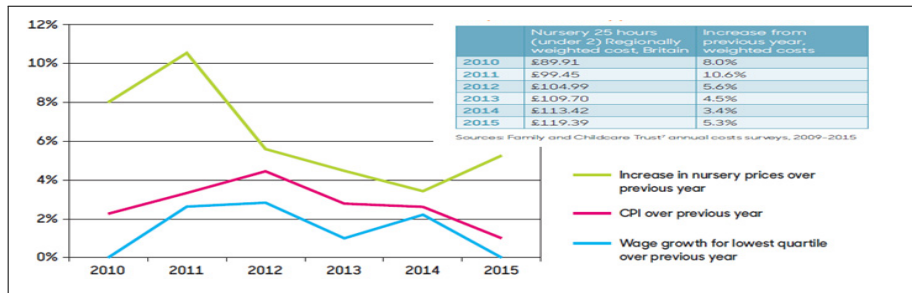
자료: Family and Childcare Trust(2015). Childcare Costs Survey 2015. p. 4의 <표 1>

[그림 1-4-7] 2015년 영국의 각 지역별 주당 평균 보육비용

2015년 보고서는 2010년 이후, 5세 미만의 교육·보육비용이 교육소비자 물가 지수와 가장 낮은 소득수준계층(소득계층을 4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낮은 소득수준계층)의 급여 상승률과 비교했을 때, 교육·보육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20) Family and Childcare Trust(2015). Childcare Costs Survey 2015에서 발췌하여 정리함.

있음을 보여주어, “사실상 많은 가족들이 보육비용을 지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우려를 낳기도 하였다(그림 I-4-8 참조).



주: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항목에 Childminder와 nursery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사되고 있음.

자료: Family and Childcare Trust(2015). Childcare Costs Survey 2015. p. 15 <Table 7>, [Figure 8]

[그림 I-4-8] 2세 미만 유아원 가격의 변화율: 2010~2015

이 보고서 이후, 영국 정부는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하면서 2세 유아의 15시간 무료 교육·보육제공과 맞벌이 부모의 9개월에서 2세 사이의 영유아를 위해서도 이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 당에서는 높은 교육·보육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 부모의 3, 4세 자녀 들의 무료 교육·보육시간을 현재의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Sure Start Centres 이용 가능 비율을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²¹⁾. 이와 같이 국가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를 토대로 정책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미국²²⁾

미국은 매해 Childcare Award of America에서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Parents and the high Cost of Child Care 2014 Report에서는 비용 조사와 함께 적절한 수준의 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개선 방안을 파악하였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교직원인건비, 건물세, 급간식비,

21) www.theguardian.com

22) Childcare Aware of America(2014). Parents and the high Cost of Child Care 2014 Report에서 발췌하여 요약.

보험(건물, 손해보험, 종사자 보험 등), 시설유지비, 화재대비시설, 홍보비, 전문가활용비(변호사, 회계사, 건강관리사 등), 교직원 연수비용, 물품구입비, 세금,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 전기세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모든 항목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비용을 책정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으로 교사 대 아동의 비율, 학급크기(원규모), 교직원 보상과 이익, 교직원 교육 및 연수, 아동이 차지하는 일정한 규모의 시설면적, 시설환경구성, 교재교구, 교육활동, 건강, 안전, 영양 등에 대한 내용이다. 비용 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교사 대 아동비율, 학급크기 등 몇몇 요인들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 내용으로 시설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이런 요인들을 모두 준수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상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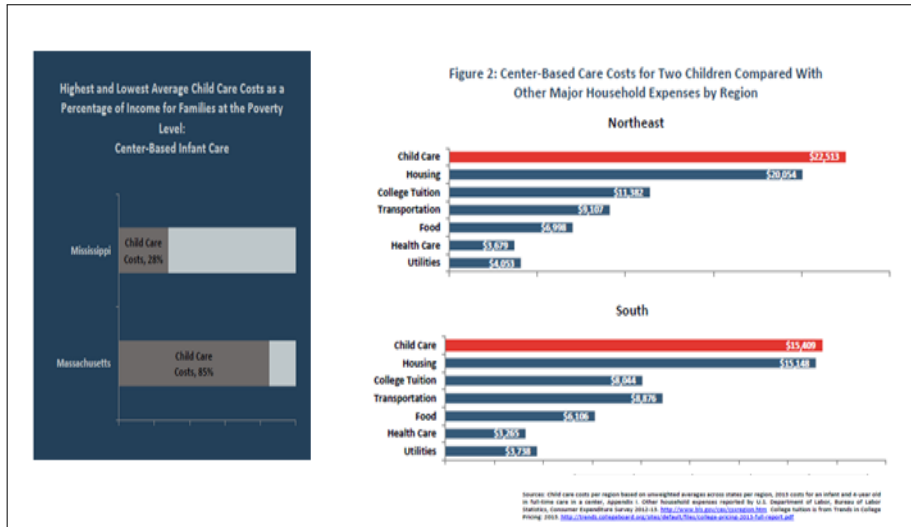
미국의 모든 주의 교육·보육비용을 비교하기 위해서 각 주별로 결혼한 (married couple) 부부와 한부모(single mother)의 중간소득(Median Income)과 대비하여 교육·보육비용 지급가능성을 제시한다(예시, 그림 I-4-9 참조).

Rank	State	Average Annual Cost of Infant Care in a Center*	State Median Income for Single Mother Family**	Cost of Care as a Percentage of Median Income for a Single Mother	State Median Income for a Married Couple**	Cost of Care as a Percentage of State Median Income for a Married Couple
1	New York^^	\$14,508.00	\$25,887.00	56.0%	\$91,525.00	15.9%
2	Colorado	\$13,143.00	\$27,491.00	47.8%	\$85,961.00	15.3%
2	Oregon	\$11,078.00	\$21,472.00	51.6%	\$72,631.00	15.3%
4	Minnesota	\$13,993.00	\$26,060.00	53.7%	\$92,299.00	15.2%
5	Massachusetts	\$16,549.00	\$27,323.00	60.6%	\$111,368.00	14.9%

자료: Childcare Aware of America(2014). Parents and the high Cost of Child Care 2014 Report. p. 16 <Table 2>

[그림 I-4-9] 중간소득 대비 교육·보육비용 상위 10개주(12개월 미만)

또한 각 주별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3인 가족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교육·보육비용이 가계 수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과 비율을 대비해서 제시하기도 하고, 다른 가계 지출 용도의 비용과도 대비한 조사 결과를 제시한다(예시, 그림 I-4-10 참조).



자료: Childcare Aware of America(2014). Parents and the high Cost of Child Care. p. 23 [Figure 2], p. 24

[그림 1-4-10] 주별 가구 수입 및 지출항목 대비 교육·보육비용 지출 현황(12개월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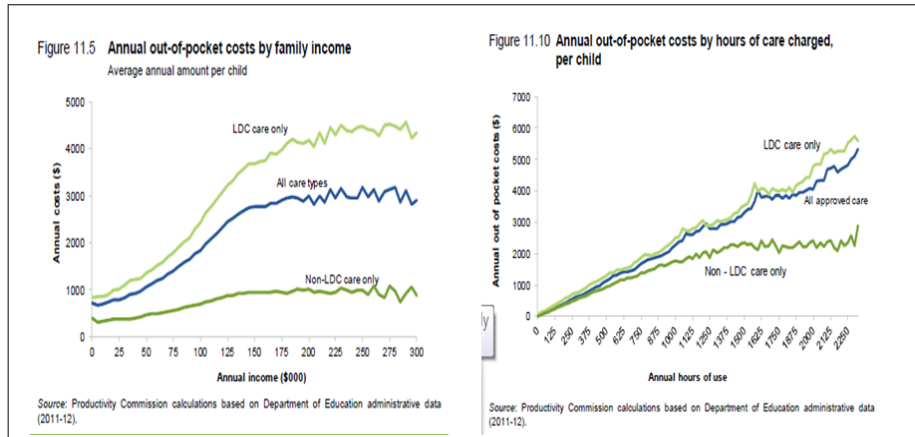
미국은 각 주별로 경제적 상황이 다르므로, 각 주별로 조사하고, 해당 주의 경제적·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호주²³⁾

호주는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정책으로 교육·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 가정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비용 지출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유형, 가구소득, 교육·보육비용을 받는 자녀 수와 이용 시간, 거주지역, 정부재정 지원금 비율, 재정 지원 기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출 여력 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가정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육·보육비용은 증가한다. 이는 정부 재정지원금이 가구 수입에 근거하여 책정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맞벌이일 확률이 높아서 그에 따른 교육·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그림 I-4-11 참조).

23)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Chapt. 11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정리함.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Child Care and Early Childhood Learning, p. 456 <표 11.5>, p.641 <표 11.10>

[그림 1-4-11] 호주 가정의 가구수입, 이용기관유형 및 시간 수에 따른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은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대해 부모의 지출을 감소시켜 주고 있으나, 주당 소득 상승률에 비해 교육·보육비용 증가율이 빠르고, 소비자물가지수 이상으로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가계경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호주의 한 가구당 교육·보육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궁극적으로 교육·보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가계경비 부담은 현재 호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 정책에 변화를 함께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상과 같이 영국, 호주, 미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수준의 교육·보육비용 실태 조사는 단순한 비용 정책 수립 뿐 아니라, 전반적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정책 수립에 근거가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5. 용어정리 및 범주화

가. 용어정리²⁴⁾

2015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II)에서 사용한 주요 용어 개념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1~3차년도 연구(서문희 외, 2012; 양미선 외, 2013, 2014)의 용어 정리를 반영한다. 구체적인 용어정리는 아래와 같다.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라 함은 출생에서 취학 전 영유아가 이용하는 교육·보육 서비스를 위해 가구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서문희 외, 2012; 양미선 외, 2013, 2014). 본 연구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직장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영유아 2015년 교육·보육비용은 부모가 교육·보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2015년 5월 기준 조사로 작성하였다.

• 영유아 사교육비²⁵⁾

영유아 사교육비는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보육 활동 이외에 부모가 영유아의 교육·보육을 위한 목적으로 순전히 개인 부담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사교육비 정의를 초·중·등 등 기타 학령기와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특성화 활동, 특별활동을 제외한다. 또한 영유아의 순수 돌봄의 목적을 가진 개별돌봄 비용 역시 사교육비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교육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및 그룹교습, 시간제 및 반일제 이상학원,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영유아기 정부 재정 지원으로 공공성을 가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을 제외한 부모와 영유아의 개별 요구에 의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을 ‘사교육’이란 용어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영유아기 개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은 초·중·등의 사교육 차원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는 영유아기의 개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이 ‘돌봄’이 주목적이 되는 경우와 교육·보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www.law.go.kr에서 용어 정리 중 법 관련 내용 발췌(2015. 6. 15. 인출).

25) 영유아기 ‘사교육’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나, 본 보고서는 위의 기준을 따르며,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일컫는 ‘사교육’이란 용어를 사용함.

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초중등 학령기의 사교육의 의미와는 부모의 이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미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용어인 ‘사교육’으로 사용한다.

• 영유아

영유아 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만 6세 이후에라도 취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영유아 범주에 포함한다. 영아와 유아의 구별은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 의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구분과도 동일하다. 유아교육법에 의해 유아로 구분되는 만 3세부터의 아동과 만 3세 미만의 아동을 구분한다. 만 3세 미만의 경우는 영아,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유아로 구분한다.

• 유치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이다. 유치원은 크게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국)공립유치원은 국립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공립초등병설유치원으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인 형태인 학교법인 유치원, 개인이 운영하는 관인 형태의 유치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은 학교라는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13조에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과정이라고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은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 교육(기본)과정은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기본)과정은 방과후 과정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누리과정 고시문에서 1일 45시간 운영을 권장하고 있어서, 유치원의 교육(기본)과정은 이 시간에 준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누리과정 지원금은 교육(기본)과정 시간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것이다.

방과후 과정

유아교육법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과 돌봄을 방과후

과정으로 정의한다.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 종료 시각 이후부터 시작하여 저녁 돌봄 시작 시각까지 혹은 돌봄을 운영하지 않는 유치원의 경우는 방과후 과정 종료 시각까지를 말한다. 방과후 과정 시간을 위해 시·도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방과후 과정을 희망하는 유아들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희망자에 한한다.

방과후 특성화 활동

방과후 특성화 활동은 방과후 과정 시간을 이용하여 운영된다. 유아의 다양한 흥미에 기초한 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문화예술, 생활체육, 과학창의, 언어 등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시간에 운영한다.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종일제를 방과후로 명칭이 변경되어,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방과후 교실로 오인함으로써 지나친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김은영·김정숙·양유진, 2013).

엄마품은종일돌봄교실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는 교육과정 시작 시각 이전에 이루어지는 아침돌봄과 방과후 과정 시각 종료 이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저녁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위한 시설이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으로 구분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7. 4. 인출).

특별활동

영유아보육법 제29조3 및 4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의 영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시간대 동안 특정한 시간을 정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활동은 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이란 종일보육, 시간연장보육과 새벽보육을 포함한 24시간 보육, 시간연장보육, 시간연장보육과 새벽보육을 포함한 야간 보육 및 휴일보육을

의미한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의 종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한 아동 및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아동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2015).

- **반일제이상학원 및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 반일제 이상 학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학원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동법 제2조 1항의 가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 2조2항의 학원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으로 유아놀이학교, 유아대상 예체능학원, 어학원 유치부 등이 포함된다.

- 시간제학원

시간제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반일제이상학원이 주 5일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교육 실시 시기와 횟수가 별도로 정해진다.

- **개별 및 그룹교습**

개별 및 그룹교습지도 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특정한 장소를 교습소로 신고하여 개별 혹은 그룹으로 교습할 수 있으며, 가정 방문 교습도 있다. 학문적인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수학, 한글, 영어, 한문 등의 교습과정도 있으나, 다양한 예체능 교육도 포함된다.

- **학습지**

학습지는 인쇄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습활동을 말한다(양미선 외, 2014). 가정 방문을 통한 교습활동과 학습지만 전달하고 부모가 교습하는 활동 등이 있다.

- **교구교육**

교구교육은 특정한 명칭을 가진 교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교구교육은 개별 혹은 그룹, 교습소 혹은 가정 방문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재 대표적인 교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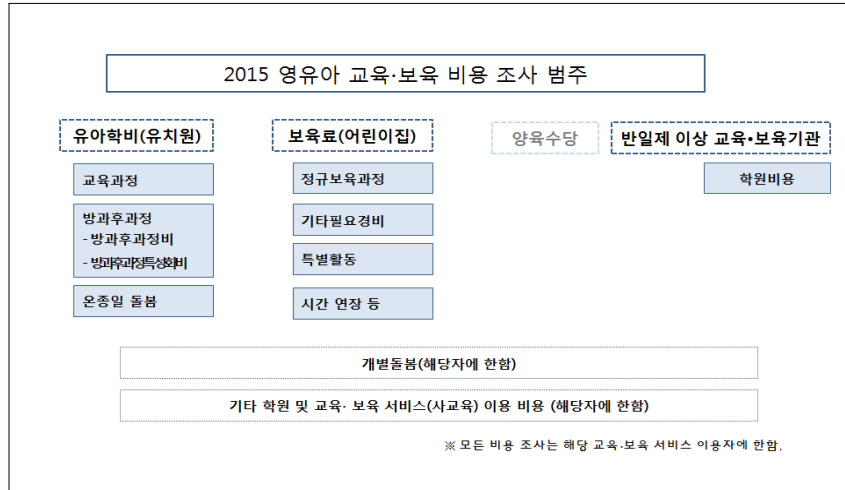
육으로는 가베, 몬테소리, 오르다, 레고 등이 있다.

• 개별돌봄

개별돌봄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아닌 가정 혹은 친척, 친구의 집 등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개별보육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어서 조부모, 친척 등의 혈연관계에서부터 비혈연 관계인 전문육아돌보미, 베이비시터 등을 활용한다.

나. 용어 정리에 따른 범주화²⁶⁾

본 연구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위에서 제시한 용어들을 해당 범주별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본 조사 항목을 범주별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 [그림 1-5-1]과 같다.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지원 종류별로 범주화해서 조사하였다. 각 범주별로 조사 항목을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1-5-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범주

26) 본 조사에서는 ‘영아종일돌봄서비스’ 이용자는 2명으로 매우 작은 사례여서 향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6. 연구의 제한점

2015년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가계지출 및 부담의 실태 조사 결과가 주된 분석 자료이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2015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규모 및 결정 요인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사의 제한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용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조사가 1회 이루어지고, 5월을 기준 달로 설정하여 한 달 동안 사용한 교육·보육비용을 기준으로 연간규모를 추정한 점에서 해석 시 유의가 필요하다. 5월을 선정한 이유는 연구기간, 조사기간, 기타 사회현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한편 제주를 제외한 전국 단위로 표집되었으나, 영유아 가구 모집단 추정이 불확실한 한 점과 지역별 소득편차, 영유아 이용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서비스 기관 표집 비율 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속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나, 매해 표집된 대상의 소득 및 지출 등 가구 특성의 차이가 있고, 비용 산출을 위한 용어 정의 특히 '사교육비' 등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으므로, 결과값만을 이용한 단순 비교는 주의가 필요하며, 이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II. 연구의 배경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개요

가. 유아학비

1) 법적근거

가) 유아학비 법적 근거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학비 지원 제도는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과 내용은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유아학비의 근거 법령 및 내용

근거 법령	내용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표 II-1-1 계속)

근거 법령	내용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7. 1. 인출).

나) 유아학비 지원 법적 근거

유아학비는 만 3~5세 유아가 유치원에 취원하고 있을 때, 이를 위한 정부재정 지원으로 지원 법적 근거는 <표 II-1-2>와 같다.

〈표 II-1-2〉 유아학비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근거 법령	내용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만 3~5세 유아의 교육에 대한 비용으로, 정부는 2012년 3월 1일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3년 3월부터 만3~4세로 누리과정을 확장하여 유아학비를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유아학비의 지원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유아의 부모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 2015년 현재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은 <표 II-1-3>과 같다.

<표 II-1-3> 2015년 유아학비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

단위: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월 지원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	만 3세	2011.1.1~2012.2.29	60,000	220,000
	만 4세	2010.1.1~2010.12.31		
	만 5세	2009.1.1~2009.12.31		

주: 1) 국공립 유치원은 2013년 3월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2)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2년 1, 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3)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유아학비 재지원.
 4)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자료: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홈페이지(<http://childschool.moe.go.kr>, 2015. 6. 5. 인출).

2) 방과후 과정 운영 및 지원 근거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교육(기본)과정 시각 종료 이후부터 저녁돌봄 시작 전 까지이다. 시·도에 따라서 돌봄을 방과후 과정에 포함하여 제시하기도 한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방과후 과정은 교육(기본)과정 종료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며, 방과후 과정을 위한 단독학급 혹은 오후 재편성 학급으로 운영한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수업료 외에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 자에게 지원한다. 지원비용 범위는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 교구비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다.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연령과 금액은 <표 II-1-4>와 같다.

<표 II-1-4> 2015년 방과후 과정 지원 대상 연령 및 금액

단위: 원

구분	연령	생년월일	월 지원액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만 3세	2011.1.1~2012.02.29	50,000	70,000
	만 4세	2010.1.1~2010.12.31		
	만 5세	2009.1.1~2009.12.31		

주: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일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 과정비 지원 제외.
 자료: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홈페이지(<http://childschool.moe.go.kr>, 2015. 6. 5. 인출).

방과후 과정의 기본 방향은 취업모 가정의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의 심화·확장, 편한 휴식, 낮잠, 바깥놀이 등 돌봄의 역할을 수행한다(김은영 외, 2013). 특히 유아교육법에 의하면 시·도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 방과후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이 목적 중 하나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3) 방과후 특성화 활동 운영 근거

방과후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은 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영유아의 흥미에 기초한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방과후 특성화 활동은 방과후 과정 시간에 한해서 운영되며, 지나친 방과후 특성화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과후 특성화 활동 운영 지침과 방과후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의 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표 II-1-5 참조).

〈표 II-1-5〉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비용 기준

단위: 원

분야	프로그램	월 재료비 및 강사비		유아 1인당	계(A+B)
		재료비(A)	강사비(월4회기준)	월 강사비(B) (1학급 20명 기준)	
생활	일반 체육	-	120,000	6,000	6,000
체육	무용/발레	-	120,000	6,000	6,000
문화	음악	-	120,000	6,000	6,000
예술	미술	6,000	120,000	6,000	12,000
과학	과학	6,000	120,000	6,000	12,000
창의	블록/교구	10,000	140,000	7,000	17,000
언어	모국어	8,000	120,000	6,000	14,000
	영어	10,000	140,000	7,000	17,000

주: 1) 선행연구와 정보공시 자료를 결과로 산출함(지역·규모별, 설립유형별, 프로그램별 편차 있음). 예를 들면, 생활체육을 월 4회 실시하며, 강사비 1회 30,000원, 참여유아 20명일 경우(강사비 30,000원×월 4회)/(참여유아 20명) = 1인당 월 6,000원.

2) 학급당 유아수, 주당 수업횟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3) 상기 금액은 월4회 1인 기준임.

자료: 교육부(2015). 2015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기준. 내부자료.

나. 보육료

1) 법적 근거

가) 보육료 법적 근거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재정 지원이 보육료 지원이다. 보육료는 만 2세 이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만 3~5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된다. 보육료의 법적 근거는 <표 II-1-6>과 같다.

<표 II-1-6> 보육료 근거 법령 및 내용

근거 법령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나) 보육료 지원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정부는 같은 법 제34조에 의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 및 내용은 <표 II-1-7>과 같다.

<표 II-1-7> 보육료 지원 근거 법령 및 내용

근거 법령	내용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표 II-1-7 계속)

근거 법령	내용
영유아보육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2) 보육료 지원 현황

정부의 보육료 지원아 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2013년도 총 보육료 지원아 수는 약 14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도 총 보육료 지원아 수는 약 14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2014년도 총 보육료 지원아 수는 약 8,122명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1%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아 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13년 및 2014년도 모두 만 2세 지원아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전체 보육료 지원아 수의 약 27.1%, 2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 정부의 보육료 지원아 수: 2013~2014

구분	단위: 명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2014	136,768	339,448	407,407	263,520	175,742	159,882	1,482,767
2013	146,347	323,921	398,996	254,383	183,494	167,504	1,474,645

주: 보육료 지원아 수에는 영아(만 0~2세)법정 보육료, 영아(만 0~2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누리(만 3~5세)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지원아 수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3) 보육료 지원 단가

보육료에 대한 정부지원은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에서 차이가 있으나, 연령별 보육료 총액은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이나 동일하다(표 II-1-9 참조). 구체적으로 보육료는 기본보육료, 보육지원단가로 나뉘 볼 수 있다.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어린이집²⁷⁾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종일반은 제외)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의 아동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 2015). 기본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부모 부담은 없다. 2009년 이후 기본보육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써 2015년 만 0세아 보육료의 2014년 대비 증가율은 3.05%, 만 1세아는 3.07%, 만 2세아는 2.99% 증가율을 나타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2년 누리과정 제도의 도입으로 만 5세아는 월 22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2013년부터는 만 3~5세아는 월 220,000원으로 동일하게 수혜받는다. 구체적인 연도별 및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표 II-1-9>와 같다.

<표 II-1-9> 영유아 연령별 보육료: 2009~2015

단위: 천원, %

구분	2009~2010			2011~2012			2013~2014			2015			2013~2015 4대비 2015증감 률
	기본 보육 료	지원 단가	보육 료	기본 보육 료	지원 단가	보육 료	기본 보육 료	지원 단가	보육 료	기본 보육 료	지원 단가	보육 료	
만 0세	350	383	733	361	394	755	361	394	755	372	406	778	△3.05
만 1세	169	337	506	174	347	521	174	347	521	180	357	537	△3.07
만 2세	112	278	390	115	286	401	115	286	401	118	295	413	△2.99
만 3세	-	191	191	-	197	197	-	220	220	-	220	220	-
만 4세	-	172	172	-	177	177	-	220	220	-	220	220	-
만 5세	-	172	172	-	2011: 177 2012: 220	2011: 177 2012: 220	-	220	220	-	220	220	-

주: 1)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37<표 II-2-2>내용에 추가·보완함.

2) 누리과정은 오후반비 별도 지원.

3) 증감률=[(2015보육료) - (2013~2014보육료)]/(2013~2014보육료)×100.

자료: 1)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 272.

2)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 41<표 II-2-2>.

3)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37.

27) 보건복지부(2015). 2015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이며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임.

일반 영유아 대상의 보육료 지원 이외에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다. 먼저 장애아 보육료는 소득 및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2015년 기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12세 이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 가구에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의 경우 월 406,000원,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유아의 경우 월 420,000원, 일반 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의 경우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각각 지원한다.²⁸⁾ 다문화 보육료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이하 영유아 가구에 지원한다. 장애아 및 다문화 보육료의 연도별 지원 단가 및 2013~2014년 대비 2015년 보육료 증감률은 <표 II-1-10>과 같다.

<표 II-1-10> 장애아 및 다문화 보육료 연도별 지원 단가

단위: 천원, %

구분	2011-2012		2013-2014		2015		2013-2014 대비 2015 증감률	
	장애아	다문화	장애아	다문화	장애아	다문화	장애아	다문화
만 0세		394		394		406		△3.0
만 1세		347		347		357		△2.9
만 2세		286		286		295		△3.1
만 3세		197		220		220		-
만 4세	394	177	394	220	406	220	-	-
만 5세		2011: 177		220		220		-
		2012: 200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다음은 야간 및 24시간 보육료 지원에 관한 것으로 2015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5)에 따르면, 먼저 야간 보육료의 경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어린이집의 야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가 지원된다. 야간 보육 운영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익일 07시 30분까지이며, 2015년 10월 4일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야간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24시간 보육료는 오전 0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주간 보육과 오

28) 복지포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 2015. 6. 11. 인출).

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0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야간 보육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육료이다. 지원 대상은 주간 및 야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으로서, 주양육자가 야간 근무가 필요한 사업체 등에 종사하여 야간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야간 및 24시 보육료의 연도별 지원 단가 및 2013~2014년 대비 2015년 증감률 현황은 <표 II-1-11>과 같다.

<표 II-1-11> 야간 및 24시 보육료 연도별 지원 단가

단위: 천원, %

구분	2011-2012		2013-2014		2015		2013-2014 대비 2015증감률	
	야간	24시	야간	24시	야간	24시	야간	24시
만 0세	394	591.0	394	591	406	609.0	△3.05	△3.05
만 1세	347	520.5	347	520	357	535.5	△2.88	△2.98
만 2세	286	429.0	286	429	295	442.5	△3.12	△3.15
만 3세	197	295.5	220	330	220	330.0	-	-
만 4세	177	265.5	-	-	-	-	-	-
만 5세	2011:177	2011:65.5	-	-	-	-	-	-
	2012:220	2012:300						

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육사업안내.

4) 보육료 상한액

시·도지사는 보육료를 매해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료의 수납 한도액을 매년 1월말까지 결정하여,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통보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15). 이때 일반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미지원시설의 만 3세 이상의 유아는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1-12>는 각 시도별 국공립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액과 증감률을 나타낸 것이다.

<표 II-1-12>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상한액: 2014-2015

단위: 천원, %

구분	2014				2015			
	민간		가정		민간		가정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서울	274	263	274	263	283	270	283	270
부산	286	4세 265	265	250	275	260	275	260
	286	5세 250	265	250	275	260	275	260

(표 II-1-12 계속)

구분	2014				2015			
	민간		가정		민간		가정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만 3세	만 4-5세
대구	264	250	276	265	273	257	278	267
인천	274	261	274	261	283	269	283	269
광주	253	239	267	258	261	247	276	266
대전	265	248	269	269	273	258	274	269
울산	267	251	282	264	275	259	290	272
세종	272	259	276	258	272	259	276	258
경기	283	261	286	286	288	266	291	291
강원	259	243	271	261	267	250	279	269
충북	266	243	278	272	266	249	278	272
충남	269	256	279	271	277	264	287	279
전북	270	258	270	258	270	258	248	237
전남	252	236	264	254	259	243	271	261
경북	261	244	275	260	268	251	275	260
경남	259	243	275	267	267	250	283	275
제주	236	228	261	261	247	239	274	263

주: 1) 전라북도에서 민간 어린이집 수납 한도액은 시지역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수납 한도액은 군지역 수납 한도액을 의미함.

2) 전년대비 증감률= (2015보육료-2014보육료)/(2014보육료)×100.

3) 음영은 감소한 지역을 나타냄.

자료: 1) 각 시·도청 홈페이지(2015. 6. 12.~2015. 6. 14. 인출).

2) 이정민·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37 <표 II-2-2>

5)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²⁹⁾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는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세부종류와 수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15: 74).

필요경비의 세부종류는 입학준비금, 표준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개인용 소모품 등이며 “시·도지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 수납 한도액 및 수납주기를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76). 각 시도별 어린이집의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식비 및 특성화비 현황은 <표 II-1-13>과 같다.

29)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 74~76.

〈표 II-1-13〉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상한액: 2015³⁰⁾

단위: 천원

구분	입학준비금 (년)	특별활동비 (월)	차량운행비 (월)	현장학습 (월)	행사비 (년)	급식비 (월)	특성화비 (월)
서울	시·구에 위임	시·구에 위임	시·구에 위임	시·구에 위임	시·구에 위임	시·구에 위임	시·구에 위임
부산	100	국공립: 70 국공립 외: 80	20	40(분기)	21(분기)	1,745원(1식)	-
대구	국공립: 90 국공립 외: 100	국공립: 65 국공립 외: 75	25	120(년)	80	1,400원(1식)	-
인천	정부지원시설: 90 민간: 100 가정: 100	정부지원시설: 유아: 44(분기) 민간가정 유아: 49(분기)	민간·가정: 30(분기)	정부지원시설 유아: 186(분기) 정부지원시설 영아: 180(분기) 민간가정 유아: 186(분기) 민간가정 영아: 210(분기)	정부지원시설 유아: 186(분기) 정부지원시설 영아: 180(분기) 민간가정 유아: 186(분기) 민간가정 영아: 210(분기)	1,000원(1식)	
광주	85	국공립: 55 국공립 외: 60	15	35(분기)	60	1,000원(1식)	30
대전	90	국공립: 50 민간 등: 60	국공립: 18 민간 등: 25	51(분기)	70	1,200원(1식)	20
울산	90	85	85	60(분기)	100	1,745원(1식)	
세종	90	80	20	50	100	34.9	30
경기	100	시·군에 위임	20	시·군에 위임	시·군에 위임	시·군에 위임	시·군에 위임
강원	신입생: 70 재학생: 30	72	20	80(분기)	60	1,000원(1식)	-
충북	상해보험료: 10 피복류구입비: 80	국공립: 80 민간·가정: 90	28	40(분기)	50	1,000원(1식) 20,000원(월)	특별활동비 의 50%이내
충남	90	90	30	160(년)	70	1,000원(1식)	30
전북	70	시지역: 90 군지역: 80	시지역: 40 군지역: 50	40(분기)	시지역: 150 군지역: 130	시지역: 30 군지역: 20	30
전남	80	국공립: 70 국공립 외: 80	20	50(분기)	행사비: 90 앨범비: 60	10	50(년)
경북	100	70	20	160(년)	60	10	20
경남	80	국공립: 60 민간가정: 55 기타: 65	17	30(분기)	75	20	국공립: 20 민간가정: 30 기타: 20
제주	55	60	20	20(분기)	70	20	10

자료: 각 시·도청 홈페이지(2015. 6. 12.~2015. 6. 14. 인출).

30) 서울과 경기도의 필요경비 시·군·구별 세부 사항은 부록에 있음.

다. 양육수당

1) 양육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

어린이집, 유치원,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지원하는 양육수당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과 내용은 <표 II-1-14>과 같다.

<표 II-1-14> 양육수당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근거 법령	내용
영유아 보육법	<p>제34조의2(양육수당)</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가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영유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한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2) 양육수당 지원 현황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2014년 현재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육수당 예산 또한 2013년 약 8,809억에서 2014년 1조 2,153억으로 약 3,344억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약 38.0% 증가율을 나타냈다.

양육수당 지원아 수를 살펴보면, 2013년 정부의 양육수당 총 지원아 수는 1,060,484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1,053,071명, 장애 영유아 2,112명, 농어촌 영유아 5,301명이다. 또한, 2014년 총 지원아 수는 1,012,336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1,006,825명, 장애 영유아 2,032명, 농어촌 영유아 3,479명이다.

이 중에서 어린이집 미이용으로 인해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수의 비율이 2013년 99.3%, 2014년 9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수당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014년은 2013년 대비 약 38%증가하였고, 2015년은 2014년 대비 약 9.3%가량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15〉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예산 및 지원아 수 현황: 2013~2014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	지원아 수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	농어촌	계
2015	1,101,768	-	-	-	-
2014	1,215,319	1,006,825	2,032	3,479	1,012,336
2013	880,950	1,053,071	2,112	5,301	1,060,484

자료: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 193.

2013년과 2014년의 양육수당 지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II-1-16>과 같다. 만 0~2세(약 62.3%)가 3~5세(9.6%)에 비해 양육수당 수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세 보다는 23개월 이하의 영아들의 수혜 비율이 월등하게 높다. 연령별로 자세히 보면, 어린이집 이용이 점차 증가하는 24개월 이상부터 양육수당 수혜가 줄어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공히 이용할 수 있는 36개월 이상부터는 양육수당 수혜율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양육수당의 종류별로 보면, 어린이집 미이용으로 인한 비율이 2013, 2014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1-16〉 양육수당 지급 영유아 현황(2013~2014)

단위: 명

구분	2013				2014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	농어촌	계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	농어촌	계
0-11개월	382,327	6	3,252	385,585	382,325	7	1,057	383,379
12-23개월	345,442	200	1,310	346,952	308,741	194	973	309,908
24-35개월	143,948	557	541	145,046	143,650	529	896	145,075
0-35개월	871,717	763	5,103	877,583	834,706	730	2,926	838,362
36-47개월	62,526	535	103	63,164	59,191	521	414	60,126
48-59개월	37,977	335	48	38,360	38,747	330	75	39,152
60-71개월	40,137	261	47	40,445	34,513	254	36	34,803
36-71개월	140,640	1,131	198	141,969	132,451	1,105	525	134,081
0-71개월	1,012,357	1,894	5,301	1,019,552	967,157	1,835	3,451	972,443

(표 II-1-16 계속)

구분	2013				2014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	농어촌	계	어린이집 미이용	장애아	농어촌	계
0-71개월	1,012,357	1,894	5,301	1,019,552	967,157	1,835	3,451	972,443
72-취학전	40,714	215	-	40,929	39,658	197	28	39,883
계	1,053,071	2,109	5,301	1,060,481	1,006,825	2,032	3,479	1,012,326

자료: 1)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59 <표 II-8-1>
2)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3) 양육수당 지원단가

양육수당은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지원되며, 기타 다른 자녀 지원 정책과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 2015년 현재 지원 연령 및 종류별 지원 금액은 다음의 <표 II-1-17>와 같다. 양육수당의 연령별 지원단가는 동일 연령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단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양육수당 연령별 지원단가 일반 양육수당 등은 2014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표 II-1-17> 2015년 연령별 지원 단가

단위: 천원

연령	양육수당		
	영유아	장애	농어촌
0~11개월	200	200	200
12~23개월	150	200	177
24~35개월	100	200	156
36~47개월	100	100	129
48~59개월	100	100	100
60~71개월	100	100	100
72~84개월 미만	100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사업안내. p. 284.

라.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³¹⁾

1)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일시적인 돌봄 상황에 탄력적으

3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2015. 6. 5. 인출).

로 대응하고,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진되었다.

아이돌봄지원 추진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인 법령과 내용은 <표 II-1-18>과 같다.

<표 II-1-1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근거 법령 및 내용

근거 법령	내용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2) 아이돌봄서비스 현황 및 지원단가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로서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 돌봄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종일제 돌봄서비스, 기관과건 돌봄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³²⁾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2013년에 시간당 5,000원이었던 돌보미 수당을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액한 2014년의 예산보다 약 437억 증가하였으며, 이로서 2014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55.2%인 것으로 나타났다.³³⁾

<표 II-1-19>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2013~2014

구분	2012	2013	2014	단위: 백만원		
				중앙	지방	계
예산액	43,464	70,818 ¹⁾	79,194	78,761	4,487	122,848

주: 추경예산 포함.

자료: 1)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3 <표II-10-1>.

2)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89.

32)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2015. 6. 4. 인출).

3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1. 28). 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로서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야간, 공휴일 등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정부지원이 가능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전액 부모부담(시간당 6,000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일반형, 종합형)서비스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 기관과건서비스,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서비스가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표 II-1-20>와 같다.

<표 II-1-20> 영아종일제 이용대상, 서비스 종류 및 내용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제	시간제(일반형) 돌봄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종합형 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종일제 (만 3개월 이상~만 24개월 이하 영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¹⁾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20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지원 ·정부지원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 ²⁾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의 월간 활동 계획에 따른 영아 표준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44만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제공

주: 1) 1일 최소 6시간 이상 사용이 원칙임.

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금 차등 지원함.

자료: 1)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2015. 6. 5. 인출).

2)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 6. 5. 인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단가는 2014년에 비해 시간제돌봄과 영아종일제돌봄 모두 상향되었다(표 II-1-21 참조).

〈표 II-1-21〉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단가 및 본인부담금: 2015

단위: 원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돌봄		영아종일제(월 200시간기준)			
				12개월이하		13-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이하 (월2.487천원)	4,500(75%)	1,500(25%)	840,000 (70%)	360,000 (30%)	780,000 (65%)	420,000 (35%)
나형	50-70%이하 (월3.482천원)	2,700(45%)	3,300(55%)	720,000 (60%)	480,000 (40%)	660,000 (55%)	540,000 (45%)
다형	70-100%이하 (월4.974천원)	1,500(25%)	2,500(75%)	600,000 (50%)	600,000 (50%)	540,000 (45%)	660,000 (55%)
라형	100%초과	-	6,000(100%)	480,000 (40%)	720,000 (60%)	420,000 (35%)	780,000 (65%)

주: 소득기준은 전국 4인가구 평균소득임.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EgovPageLink.do>, 2015. 6. 15. 인출).

영아종일제돌봄은 정부지원단가와 본인부담금을 포함하면 1,200,000원이다. 2014년 정부지원과 본인부담금이 1,100,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금액상으로는 100,000만원이 올랐고, 2015년은 2014년 대비 약 9.1%가량 상승하였다. 내역을 보면, 본인부담금에 비해 정부지원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상승하였다. 구체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단가와 본인부담금은 같다.

마. 기타 정부 재정 지원서비스 현황

먼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³⁴⁾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표 II-1-22>와 같다.

〈표 II-1-2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00%이하 만 2세~6세 아동	-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독서도우미를 주1회 이상 파견 (방문 1회당 20분 이상)하여 책읽어주기, 도서지급(또는 대여) 및 독후활동을 실시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독서지도 서비스

34)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2015. 6. 11. 인출).

(표 II-1-22 계속)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100%이하 만 2세~6세 아동	- 신청 후 10개월(1등급은 10개월 추가 지원 가능)간 월 15,000원(1등급은 25,000원) 바우처로 지원(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주: 1등급대상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국내입양, 가정위탁,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 양부모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아동,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아동임.

자료: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홈페이지(<http://momplus.mw.go.kr>, 2015. 6. 11. 인출).

다음으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³⁵⁾는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정부는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영역 등의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표 II-1-23 참조).

<표 II-1-23>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발달기초영역	주2회 (회당 60분)
	언어발달 영역	
	초기인지영역	
	정서·사회성 영역	
기타 서비스	- 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보고서: 월1회 부모상담: 월1회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2015. 6. 11. 인출).

한편,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금액은 <표 II-1-24>과 같다.

3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2015. 6. 11. 인출).

〈표 II-1-24〉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 및 금액

구분	내용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만 0~6세 -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결과, 추후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자 - 유아교육기관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 II, 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며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지원 금액	- 사업 이용금액: 200,000원 - 1등급에 대한 정부지원금: 180,000원 - 2등급에 대한 정부지원금: 160,000원 - 1등급의 본인부담금: 20,000원 - 2등급의 본인부담금: 40,000원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http://csi.welfare.seoul.kr>, 2015. 6. 11. 인출).

2.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관 이용 변화 추이

가. 유치원·어린이집 수 변화 추이

2014년 기준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수는 52,568개이다. 이중 유치원은 8,826개 원, 어린이집은 43,742개소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 영유아의 연령과 학급·반 당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이 서로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표 II-2-1 참조).

〈표 II-2-1〉 유치원·어린이집 수: 2005~2015

단위: 개원(개소)

구분	유치원 ¹⁾			어린이집 ²⁾								전체 (a+b)
	국공립	사립	계(a)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계(b)	
2015 ³⁾	4,678	4,252	8,930	2,629	1,414	834	14,626	22,074	785	155	42,517	51,447
2014	4,619	4,207	8,826	2,489	1,420	852	14,822	23,318	692	149	43,742	52,568
2013	4,577	4,101	8,678	2,332	1,439	868	14,751	23,632	619	129	43,770	52,448
2012	4,525	4,013	8,538	2,203	1,444	869	14,440	22,935	523	113	42,527	51,065
2011	4,502	3,922	8,424	2,116	1,462	870	14,134	20,722	449	89	39,842	48,266
2010	4,501	3,887	8,388	2,034	1,468	888	13,789	19,369	401	74	38,023	46,411
2009	4,493	3,880	8,373	1,917	1,470	935	13,433	17,359	370	66	35,550	43,923

(표 II-2-1 계속)

구분	유치원 ¹⁾			어린이집 ²⁾							전체 (a+b)	
	국공립	사립	계(a)	국공립	사회복 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계(b)
2008	4,483	3,861	8,344	1,826	1,458	969	13,306	15,525	350	65	33,499	41,843
2007	4,448	3,846	8,294	1,748	1,460	1,002	13,081	13,184	320	61	30,856	39,150
2006	4,460	3,830	8,290	1,643	1,475	1,066	12,864	11,828	298	59	29,233	37,523
2005	4,412	3,863	8,275	1,473	1,495	979	12,769	11,346	263	42	28,367	36,642

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원 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주의를 요함.

자료: 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p. 11.

2) 이정민·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5 <표 II-1-7>.

3)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

4)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2015년 어린이집 자료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dildaregkkr/info/pris/search/NurseryNameSL.jsp>"에서 2015. 12월 기준으로 인출함.

나.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아 수와 취원을 변화 추이

2014년 유치원 원아수는 652,546명이며, 어린이집 이용아 수는 1,496,671명이다(표 II-2-2 참조).

〈표 II-2-2〉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아 수: 2005~2014

단위: 명

구분	유치원 ¹⁾			어린이집 ²⁾							전체 (a+b)	
	국공립	사립	계(a)	국공립	사회복 지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계(b)
2015 ³⁾	161,339	521,214	682,55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4,765	4,127	1,452,813	2,135,366
2014	148,249	504,277	652,546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9,265	3,774	1,496,671	2,149,217
2013	142,052	516,136	658,188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4,479	3,226	1,486,980	2,145,186
2012	127,347	486,402	613,749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881	2,913	1,487,361	2,101,110
2011	126,095	438,739	564,834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84,729	1,949,563
2010	126,577	412,010	538,587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1,818,497
2009	125,536	411,825	537,361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1,712,410
2008	119,128	418,694	537,822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1,673,324
2007	118,422	423,128	541,550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1,641,483
2006	121,324	424,488	545,812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1,586,173
2005	124,283	417,320	541,603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1,530,993

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취원 대상 연령이 다르므로 직접적인 취원아 수 비교는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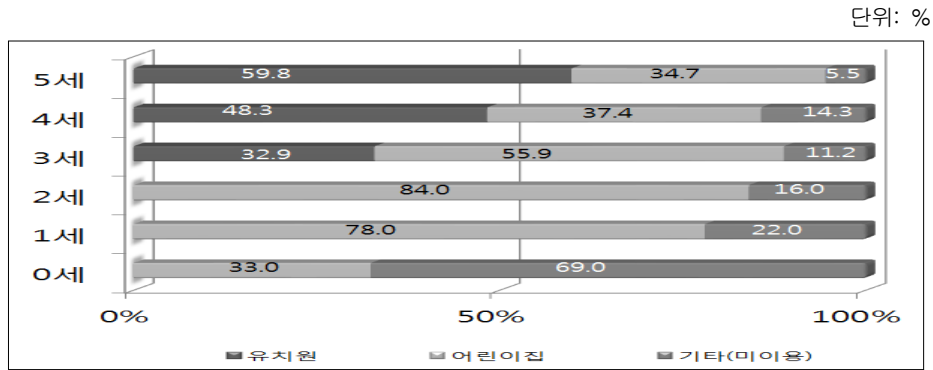
자료: 1)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3-2014 유아교육연차보고서. p. 11.

2) 이정민·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26<표 II-1-8>.

3)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

4)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2015년 어린이집 자료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infodildaregkkr/info/pris/search/NurseryNameSL.jsp>"에서 2015. 12월 기준으로 인출함.



[그림 II-2-1] 2014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

다. 기타 교육·보육 기관(서비스) 현황

본 절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 이외에 대표적인 유사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현황으로 영유아 대상 어학원, 영어학원 유치부, 유아대상 미술학원 현황을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자료를 파악하여 제시하였다.³⁶⁾ 각 시도별 영어 학원, 어학원, 미술학원 수는 <표 II-2-3>와 같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에서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언어명을 표기하지 않은 학원을 어학원으로 분류하였다.

<표 II-2-3> 영유아 대상 학원

단위: 개소

구분	영어학원	어학원	유아미술학원
서울	383	373	229
부산	95	122	39
대구	8	56	119
인천	15	29	207
광주	37	3	10
대전	90	15	7
울산	18	16	10
세종	1	1	28
경기	432	187	818

36) 학원현황은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pas_mms_nv99_001.do#none)의 '학원민원서비스'의 각 시·도교육청별 페이지의 '학원교습소정보'의 '교습과목'에서 검색어 '유치부', '유아'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2015. 9. 14.~2015. 9. 15. 인출).

(표 II-2-3 계속)

구분	영어학원	어학원	유아미술학원
강원	43	9	112
충북	46	20	94
충남	58	9	91
전북	33	11	61
전남	23	12	37
경북	31	5	116
경남	132	44	161
제주	45	2	76

주: 1) 2015. 9. 14.~2015. 9. 15. 기준 자료.

자료: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www.neis.go.kr/pas_mms_nv99_001.do#:none)의 '학원민원 서비스' > '각 시·도교육청별 페이지' > '학원교습소정보'의 '교습과목'에서 검색어 '유치부', '유아'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2015. 9. 14.~2015. 9. 15. 인출).

Ⅲ. 조사대상 특성

1. 조사 가구 특성

본 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Ⅲ-1-1>과 같다. 조사 참여가구의 64.6%는 대도시, 27.4%는 중소도시, 8.0%는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3인 이하의 가구원수는 약 47.7%, 4인 이상은 43.3%, 5인 이상은 8.9%이다. 부의 연령은 36~40세가 49.3%, 모의 연령은 31~35세가 43.6%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부모 모두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다.

<표 Ⅲ-1-1> 조사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가구

구분	비율	빈도	구분	비율	빈도
전체	100.0	2,500	전체	100.0	2,500
지역규모			가구원수		
대도시	64.6	1,614	3인 이하	47.7	1,193
중소도시	27.4	686	4인	43.3	1,083
읍면지역	8.0	201	5인 이상	8.9	224
부연령(모연령)			총 자녀수		
30세이하	4.7(14.1)	119(352)	1인	50.7	1,267
31~35세	29.1(43.6)	727(1,089)	2인	43.4	1,084
36~40세	49.3(35.4)	1,233(885)	3인 이상	5.9	149
41~45세	14.3(6.3)	357(157)	미취학 영유아 자녀수		
45세 이상	2.3(0.6)	59(15)	1인	77.0	1,926
기타	0.2(0.1)	6(1)	2인	22.3	557
부학력(모학력)			3인 이상	0.7	18
고졸이하	17.5(26.6)	437(666)	조사응답자		
전문대졸	22.7(30.2)	566(754)	어머니	95.1	2,378
대학교졸	57.5(42.6)	1,437(1,066)	아버지	4.0	100
대학원졸	2.1(0.5)	53(12)	조부모	0.9	22
기타	0.2(0.1)	6(1)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Ⅲ)」의 결과임.

다음은 조사 가구의 경제적 특성이다(표 III-1-2 참조). 조사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399만원이 38.2%로 가장 많았다. 부모취업유무에서는 맞벌이에 비해 외벌이의 비율이 높았고, 부모 모두 전일제 고용형태 비율이 높았다.

〈표 III-1-2〉 조사 가구의 경제적 특성³⁷⁾

단위: %, 가구

구분	비율	빈도	구분	비율	빈도
전체	100.0	2,500	전체	100.0	2,500
월평균 소득			부고용형태 (모고용형태 N=894)		
199만원 이하	2.9	72	전일제	97.9 (27.3)	2,448 (683)
200~299만원	27.7	691	비전일제	1.8 (8.4)	44 (211)
300~399만원	38.2	955	무직(가사직)	0.1 (64.2)	1 (1,605)
400~499만원	18.4	460	기타	0.2 (0.1)	6 (1)
500만원 이상	12.9	322			
부평균소득(모평균소득 N=894)			부모취업유무		
199만원 이하	5.6 (62.9)	140 (563)	맞벌이	35.5	887
200~299만원	44.1 (29.9)	1,099 (267)	외벌이	64.5	1,612
300~399만원	39.4 (5.5)	982 (49)	기타	-	1
400~499만원	7.8 (1)	194 (9)	부직종(모직종)		
500만원 이상	3.1 (0.7)	77 (6)	관리직	3.8 (0.6)	94 (5)
가구소유형태			전문직	5.1 (4.5)	127 (41)
자가	41.9	1,048	사무직	50.9 (35.9)	1,268 (321)
전세	54.2	1,356	서비스직	8.2 (32.2)	205 (288)
전·월세	2.6	65	판매직	4.9 (13.7)	123 (123)
월세	1.2	31	농림어업직	1.6 (0.5)	39 (4)
부 1일 근로시간(모 1일 근로시간 N=894)			단순기능직	6.9 (2.0)	172 (18)
5시간 미만	-	49 (5.4)	단순노무직	0.7 (1.8)	18 (16)
5~8시간 미만	1 (0.1)	106 (11.9)	군인	0.7 (0.1)	16 (1)
8시간 이상	2,491 (99.9)	739 (82.7)	전문기술직	6.5 (0.5)	163 (5)
기초생활수급여부			자영업	9.1 (8.0)	228 (71)
예	2.3	56	장치, 기계조작 등	1.6 (0.1)	40 (1)
아니오	97.7	2,444	무직	0.1	1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499가구의 평균 소득은 3,549,000원이고, 중앙값은 3,300,000원으로 나타났다.

37) 조사가구 2,500가구에서 부모 무직 1가구, 종일제영아반 돌봄 서비스 이용 1가구는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사대상의 가중치 적용으로 2,499가구로 환산되어 적용하였으며, 조사자 특성표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어머니 관련임.

〈표 III-1-3〉 총 가구소득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199만원 이하	200~299 만원	300~399 만원	400~499 만원	500만원 이상	계(수)	분포		
							평균	중앙	
전체	2.8	27.7	38.2	18.4	12.9	100.0(2,499)	354.91	330.00	
지역구분									
대도시	1.6	25.0	39.6	18.6	15.2	100.0(1,614)	367.12	350.00	
중소도시	4.7	31.0	35.8	19.6	8.9	100.0(686)	338.11	312.57	
읍면지역	6.7	37.6	35.0	12.9	7.8	100.0(199)	313.91	300.00	
$X^2(df)/F$							67.27(8)***	26.77***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0.2	6.6	29.0	34.9	29.3	100.0(886)	443.32	430.00	
외벌이	4.3	39.3	43.2	9.4	3.8	100.0(1,612)	306.31	300.00	
$X^2(df)/t$							773.03(4)***	1036.43***	
가구원수									
3인이하	3.7	32.8	36.7	14.3	12.5	100.0(1,192)	346.09	320.00	
4인	1.7	23.0	39.2	22.9	13.3	100.0(1,083)	365.83	350.00	
5인이상	4.0	23.2	41.8	18.2	12.7	100.0(223)	349.10	330.00	
$X^2(df)/F$							55.36(8)***	7.87***	
자녀수									
1인	3.7	31.9	36.3	15.3	12.7	100.0(1,266)	347.85	320.00	
2인	1.6	23.4	39.9	22.2	12.9	100.0(1,084)	364.15	350.00	
3인 이상	4.7	22.7	41.5	17.4	13.8	100.0(149)	347.67	330.00	
$X^2(df)/F$							45.24(8)***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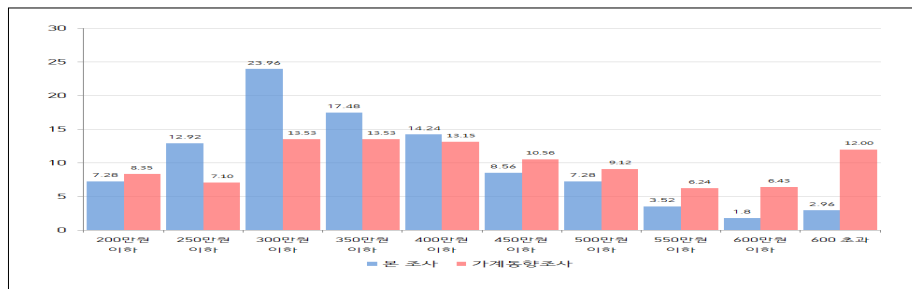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본 조사의 가구소득분포를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하면 [그림 III-1-1]과 같다.

단위: %



자료: 본 조사 참여 가구와 201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현황

[그림 III-1-1] 가구소득분포: 본조사와 가계동향조사(2015년 2분기 영유아가구) 비교

조사 가구의 지출 분포를 보면, 평균 지출은 약 3,005,000원 수준이며 가구 지출의 중앙값은 3,000,000원이다. 200~299만원 구간이 약 40.6%로 가장 높았고, 300~399만원 구간이 36.2%로 그 다음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가구원수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출이 함께 증가하지만,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수는 줄어들었다. 부모가 맞벌이일수록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II-1-4〉 총 가구 지출 분포(2015년)

단위: %, 가구, 만원

구분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	500만원 이상	계(수)	분포	
							평균	중앙
전체	7.4	40.6	36.2	11.2	4.6	100.0(2,499)	300.55	300.00
지역구분								
대도시	5.9	40.1	37.1	12.3	4.6	100.0(1,614)	304.74	300.00
중소도시	10.3	40.9	35.3	9.2	4.3	100.0(686)	293.06	290.00
읍면지역	9.5	43.7	32.0	9.2	5.7	100.0(199)	292.38	280.00
$X^2(df)/F$			20.71(8)**					4.48*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2.5	20.3	44.5	23.2	9.5	100.0(886)	354.05	350.00
외벌이	10.1	51.8	31.6	4.7	1.9	100.0(1,612)	271.14	270.00
$X^2(df)/t$			457.39(4)***					531.85***
가구원수								
3인 이하	9.8	47.4	31.0	8.4	3.4	100.0(1,192)	283.84	280.00
4인	4.9	34.3	41.4	13.9	5.5	100.0(1,083)	317.09	300.00
5인 이상	6.8	35.0	38.4	13.1	6.7	100.0(223)	309.55	300.00
$X^2(df)/F$			86.06(8)***					37.16***
자녀수								
1인	9.6	46.0	31.5	9.2	3.6	100.0(1,266)	286.60	280.00
2인	4.6	35.3	41.5	13.5	5.2	100.0(1,084)	315.88	300.00
3인 이상	8.8	33.8	37.4	12.1	8.0	100.0(149)	307.47	300.00
$X^2(df)/F$			71.80(8)***					28.97***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특성

가. 아동의 기관 이용별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영유아 미취학 자녀수는 총 3,075명이다(표 III-2-1 참조).

〈표 III-2-1〉 아동특성

단위: %, 명

구분	수	비율	구분	수	비율
전체	3,075	100.0	전체	3,075	100.0
지역구분			성별		
대도시	2001	65.07	여아	1,485	48.29
중소도시	874	28.42	남아	1,590	51.71
읍면지역	200	6.51	아동연령		
형제자매순서			0세	508	16.52
첫째아	1,833	59.61	1세	509	16.55
둘째아	1,103	35.87	2세	510	16.56
셋째아 이상	138	4.49	3세	507	16.48
			4세	543	17.65
			5세	498	16.19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본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의 연령별 정부 지원 수혜 현황을 보면, 유아학비 22.5%, 보육료 49.4%, 양육수당 28.1%로 나타났다. 0-1세는 양육수당 수혜 비율이 높았고, 2-4세는 보육료 수혜비율이 높았으나 5세는 유아학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2〉 영유아 연령별 정부 재정 지원 수혜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원 종류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계(수)
아동연령	22.5	49.4	28.1	100.0(3,075)
0세	-	10.6	89.4	100.0(508)
1세	-	46.4	53.6	100.0(509)
2세	-	76.4	23.6	100.0(510)
3세	31.7	66.5	1.8	100.0(507)
4세	45.6	53.2	1.2	100.0(543)
5세	57.3	42.6	0.2	100.0(498)

주: 1) 2015. 1. 1. 이후 출생자는 0세에 포함됨.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본 조사의 영유아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현황은 0세는 어린이집 이용이 약 10.6%, 1세는 46.4%, 2세는 76.4%이다. 유치원은 3세는 32.3%, 어린이집

은 67.7%, 4세는 유치원 46.1%, 어린이집 53.9%, 5세는 유치원 57.4%, 어린이집 42.6%이다.

〈표 III-2-3〉 영유아 연령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조사 대상 아동				취원(이용)률 ¹⁾	취원(이용)율 ²⁾
	유치원	어린이집	(수)	전체		
전체	31.3(693)	68.7(1,518)	100.0(2,211)	(3,075)	71.9	66.7
아동연령						
0세	-	100.0(54)	100.0(54)	(508)	10.6	16.1
1세	-	100.0(236)	100.0(236)	(509)	46.4	70.1
2세	-	100.0(390)	100.0(390)	(510)	76.5	86.3
영아	-	100.0(680)	100.0(680)	(1,527)	44.5	48.9
3세	32.3(161)	67.7(337)	100.0(498)	(507)	98.2	89.1
4세	46.1(247)	53.9(289)	100.0(536)	(543)	98.8	90.5
5세	57.4(285)	42.6(212)	100.0(497)	(498)	99.8	90.3
유아	45.3(693)	54.7(838)	100.0(1,531)	(1,548)	98.9	90.0

주: 1) 이용률은 본 조사의 표집에서 전체대비 이용아의 비율임.

2) 취원율은 2014년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임.

3) 2015. 1. 1. 이후 출생아는 0세에 포함됨.

자료: 1) 2015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조사 결과로 2015년 5월 기준임.

2)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통계. 연구자료 2014-01. p.19. 표. I-9.

다음은 영유아 연령별로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개수를 보면, 5세아는 3가지를 포함해서 4가지 이상 이용한다는 비율이 38.7%이며, 4세는 29.4%로 나타났다.

〈표 III-2-4〉 영유아 연령별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개수(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단위: %, 명

구분	없음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이상	계(수)
전체	24.4	45.9	14.0	10.2	5.5	100.0(3,075)
아동연령						
0세	84.2	15.5	0.2	-	0.1	100.0(508)
1세	45.8	45.8	6.1	1.3	1.1	100.0(509)
2세	16.4	57.6	16.4	7.0	2.6	100.0(510)
3세	0.6	64.6	21.5	9.7	3.6	100.0(507)
4세	0.6	50.8	19.2	19.2	10.2	100.0(543)
5세	-	41.1	20.1	23.6	15.1	100.0(498)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나. 수혜지원 종류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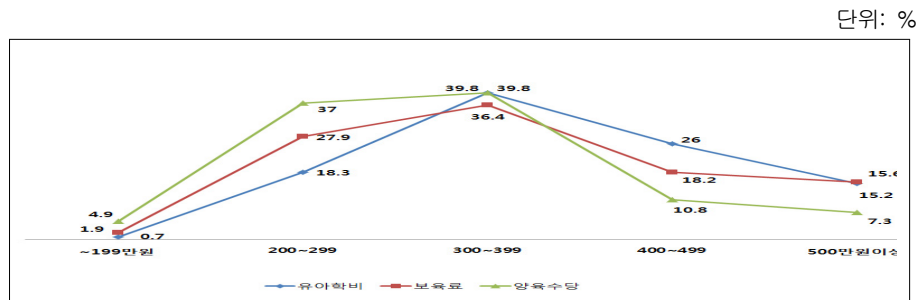
가구소득별·연령별 지원 이용에서는 300~398만원 소득 구간에서 유아학비, 어린이집, 양육수당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 가구소득별·자녀연령별 정부재정 지원 이용 현황

구분	단위: %, 명					계(수)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전체	2.4	28.4	38.1	17.8	13.2	100.0(3,075)
유아학비	0.7	18.3	39.8	26.0	15.2	100.0(693)
3세	0.9	21.7	35.0	23.8	18.6	100.0(161)
4세	1.1	19.0	38.9	28.2	12.9	100.0(247)
5세	0.4	15.9	43.4	25.2	15.0	100.0(285)
보육료	1.9	27.9	36.4	18.2	15.6	100.0(1,518)
0세	-	29.4	36.4	14.6	19.6	100.0(54)
1세	2.4	25.1	34.0	14.7	23.8	100.0(236)
2세	1.4	23.1	39.5	17.6	18.3	100.0(390)
3세	2.2	31.9	38.0	16.4	11.5	100.0(337)
4세	1.6	32.0	36.7	18.7	11.1	100.0(289)
5세	2.3	27.8	30.7	25.8	13.4	100.0(212)
양육수당	4.9	37.0	39.8	10.8	7.3	100.0(864)
0세	5.7	38.5	36.7	9.7	9.4	100.0(454)
1세	3.7	38.1	41.3	11.3	5.6	100.0(273)
2세	4.8	34.0	47.6	10.9	2.7	100.0(120)
3세	-	34.2	46.4	7.8	11.6	100.0(9)
4세	-	-	29.1	53.8	17.1	100.0(7)
5세	-	-	100.0	-	-	100.0(1)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그림 III-2-2]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가구소득별 이용률

본 조사에 참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2014년 대비 2015년에 재정 지원 수혜 종류가 변경되었는가를 확인한 결과, 전체의 16.3%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종류를 변경한 이유를 보면, 유아학비에서 보육료, 보육료에서 유아학비, 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와 보육료로 변경한 이유는 자녀의 연령증가 때문으로 나타났다으나, 지원 종류에 따른 특정한 변경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III-2-6〉 2014년 대비 2015년 재정 지원 변경 이유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전체	4.5	3.2	10.6	1.6	7.6	62.9	5.7	2.0	0.7	1.2	1000(502)	
2014	2015											
유아학비	보육료	-	30.0	7.1	-	-	36.5	19.4	6.9	-	-	1000(23)
	양육수당	-	-	-	-	100.0	-	-	-	-	-	100.0(1)
보육료	유아학비	5.1	4.2	4.1	3.5	13.4	61.8	4.1	2.6	-	1.3	1000(166)
	양육수당	-	7.2	-	-	60.5	-	8.5	-	23.8	-	1000(12)
양육수당	유아학비	-	-	3.1	2.9	4.7	85.6	1.2	-	-	2.4	1000(52)
	보육료	5.8	0.5	17.3	0.4	2.3	65.1	5.6	1.6	0.3	1.1	1000(245)
중일제	보육료	-	-	-	-	-	24.5	75.5	-	-	-	1000(3)
영아돌봄	양육수당	-	-	100.0	-	-	-	-	-	-	-	1000(1)

주: 1) ① 다른 형제·자매와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② 아이가 해당기관을 싫어해서 ③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⑤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아서 ⑥ 응답자녀의 연령이 증가해서 ⑦ 가족 및 생활환경이 변해서(예: 이사, 부모 휴·퇴직 등) ⑧ 특성화, 특별활동 등에 대한 참여 요구가 높아서 ⑨ 가정양육을 위해서 ⑩ 기타.

2)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4) 조사시점에서는 중일제영아돌봄서비스 이용 영유아는 없었으나, 2014년 기준이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IV. 영유아 이용 교육·보육 서비스별 비용

1. 유치원

가. 유치원 이용 현황

2015년 조사의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유아의 39.0%가 사립 법인, 34.8%가 사립사인을 이용하여 총 73.8%가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나 공립병설 21.2%, 국공립 단설 5%를 합친 26.2%보다 무려 47.6%p나 차이가 났다.

〈표 IV-1-1〉 연령별 유치원 이용 현황

구분	국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법인	사립사인	계(수)
전체	5.0	21.2	39.0	34.8	100.0(693)
아동연령					
3세	4.0	19.6	37.6	38.8	100.0(161)
4세	4.8	22.8	35.9	36.5	100.0(247)
5세	5.7	20.6	42.6	31.1	100.0(285)
$X^2(df)$		3.73(6)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유치원 이용자 중 가구소득·연령에 따른 유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199만원 이하는 유치원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 중 5명밖에 없었으나, 300-399만원은 276명으로 가장 이용자 수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전체 유아 중 5세 17.5%가 사립법인을 이용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4세 13%가 사립사인을, 4세와 5세 각 12.8%가 사립법인과 사립사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가구소득·연령에 따른 유치원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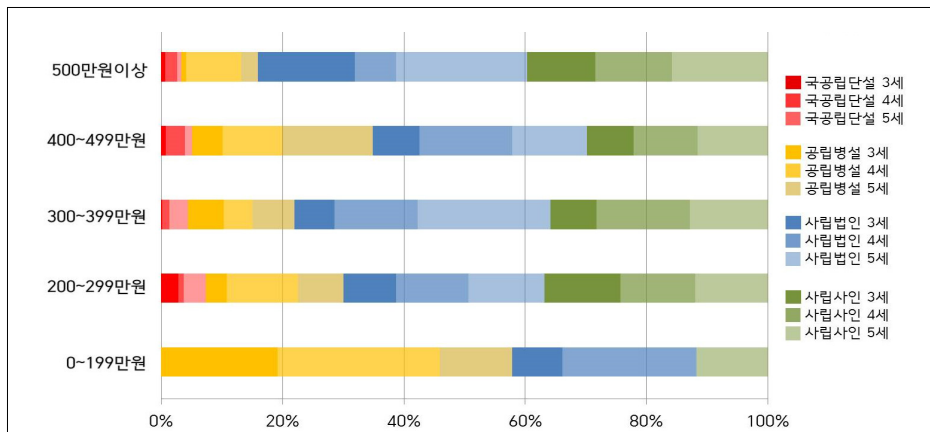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국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법인			사립사인			계(수)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3세	4세	5세	
전체	0.9	1.7	2.3	4.5	8.1	8.5	8.7	12.8	17.5	9.0	13.0	12.8	100.0(693)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	-	-	19.2	26.7	11.9	8.3	22.1	-	-	-	11.8	100.0(5)
200~299만원	2.8	0.9	3.6	3.5	11.7	7.5	8.6	11.9	12.5	12.5	12.3	12.0	100.0(127)
300~399만원	0.2	1.1	3.1	5.9	4.7	6.9	6.6	13.7	21.9	7.6	15.3	12.9	100.0(276)
400~499만원	0.8	3.1	1.2	5.0	9.9	14.9	7.7	15.2	12.4	7.7	10.5	11.6	100.0(180)
500만원 이상	0.7	1.9	0.7	0.8	9.1	2.7	16.0	6.8	21.6	11.2	12.7	15.8	100.0(105)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단위: %



[그림 IV-1-1] 가구소득·연령에 따른 유치원 이용 현황

유치원 하루 일과에서 이용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방과후 특성화 활동과 방과후 과정(종일제)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5세 모두 65.0% 이상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하였고, 47.0% 이상 방과후 과정을 이용한 반면, 저녁돌봄은 1.5%이하로 나타났다. 부모취업유무에서도 방과후 특성화 활동은 맞벌이 73.1%, 외벌이 64.6%였으며, 방과후 과정도 모두 50%가 넘었다. 반면 저녁돌봄은 맞벌이 2.6%, 외벌이 0.2%가 이용해 저조한 이용률을 나타냈다.

〈표 IV-1-3〉 유치원 하루 일과 과정 이용 현황(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아침돌봄	교육과정	방과후 과정	방과후 특화 활동	저녁돌봄	(수)
전체	7.4	100.0	54.0	68.3	1.3	(693)
아동연령						
3세	14.4	100.0	47.4	66.2	1.3	(161)
4세	3.3	100.0	57.5	65.3	1.0	(247)
5세	6.9	100.0	54.7	72.0	1.4	(285)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10.6	100.0	57.7	73.1	2.6	(297)
외벌이	4.9	100.0	51.2	64.6	0.2	(397)

주: 1) 교육과정은 모든 유치원 이용 유아에게 해당됨.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하루 평균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평균 6.96시간으로 7시간 33.4%, 6시간 17.4% 5시간 17.3%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이용시간은 늘었는데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7시간이 30%이상 나타났고, 읍면지역은 8시간이 47.2%로 다른 시간보다 유아의 이용율이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은 9시간 이상이 단설 0%, 병설 2.9%로 다른 시간에 비해 유아의 이용정도가 낮았으나 사립은 5시간 미만이 법인 2.3%, 사인 3.7%로 이용률이 낮았다. 특히 공립 단설은 6시간 이용자가 41.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9시간 이상을 이용하는 유아는 본 조사에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세가 8시간 35.4%로 가장 높았으나, 4세와 5세는 7시간이 가장 높았고, 부모취업유무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이용시간이 길었는데 특히 맞벌이 38.8%, 외벌이 29.4%가 7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시간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반면, 맞벌이는 5시간 미만이 2.0%, 외벌이는 9시간 이상이 1.8%로 다른 시간보다 낮은 이용률을 나타냈다.

〈표 IV-1-4〉 1일 평균 유치원 이용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5시간 미만	5~6 시간 미만	6~7 시간 미만	7~8 시간 미만	8~9 시간 미만	9 시간 이상	계(수)	평균(시간)
	전체	3.6	17.3	17.4	33.4	23.1		
지역구분								

(표 IV-1-4 계속)

구분	5시간 미만	5~6 시간 미만	6~7 시간 미만	7~8 시간 미만	8~9 시간 미만	9 시간 이상	계(수)	평균 (시간)
대도시	4.4	19.8	16.2	35.6	17.8	6.2	100.0(445)	6.86
중소도시	1.3	16.3	19.5	30.6	28.7	3.6	100.0(194)	7.07
읍면지역	4.6	-	19.5	25.2	47.2	3.5	100.0(54)	7.46
$X^2(df)$			41.53(10)***					
설립유형								
공립단설	3.4	3.6	41.8	27.9	23.3	-	100.0(34)	6.95
공립병설	5.8	9.9	12.0	40.3	29.1	2.9	100.0(147)	7.08
사립법인	2.3	18.4	17.7	33.1	22.5	6.0	100.0(271)	7.04
사립사인	3.7	22.6	16.7	30.4	20.1	6.6	100.0(242)	6.81
$X^2(df)$			40.38(15)***					
자녀연령								
만 3세	3.4	21.4	9.6	25.3	35.4	4.9	100.0(161)	7.07
만 4세	3.1	16.9	19.5	37.1	19.0	4.4	100.0(247)	6.90
만 5세	4.0	15.3	19.9	34.8	19.8	6.1	100.0(285)	6.96
$X^2(df)$			28.52(1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	-	-	71.6	16.6	11.8	100.0(5)	7.74
200-299만원	5.0	17.3	21.8	33.0	21.0	1.9	100.0(127)	6.78
300-399만원	2.1	20.0	21.0	27.2	25.7	4.0	100.0(276)	6.88
400-499만원	6.3	16.5	11.6	40.0	20.7	4.8	100.0(180)	6.95
500만원 이상	1.1	12.4	13.0	37.2	23.3	13.0	100.0(105)	7.38
$X^2(df)$			n.a ¹⁾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2.0	13.0	11.9	38.8	24.5	9.9	100.0(297)	7.29
외벌이	4.7	20.5	21.4	29.4	22.1	1.8	100.0(397)	6.72
$X^2(df)$			44.20(5)***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유아학비 안내 및 사용처

유아학비 안내는 전체 유아 중 666명이 안내를 받았고, 27명이 안내받지 못했다. 안내받은 경우, 그 방법은 원장의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입학설명회) 등이 6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통신문 지면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받는 방법으로 22.9%이었다. 주민자치센터, 유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관련

기관 지면으로 소개받는 방법이 2.6%로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설립유형별로는 공립보다 사립이 원장의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입학설명회)으로 소개받는 방법의 비율이 높아 사립사인인 경우 76%나 차지하였다. 반면, 관련 기관 지면으로 소개받는 방법은 사립사인인 0.6%로 가장 낮았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 알게 된 경로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전체의 52.1%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다른 형제자매가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가 24.5%, 같은 유치원 친구 아이 엄마를 통해서가 18.8%로 나타났다.

〈표 IV-1-5〉 유아학비 안내(정책설명, 수령방법 등)

단위: %, 명

구분	안내 받은 방법					미 안내 시 인지경로						계(수)
	①	②	③	④	계(수)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6.9	67.6	22.9	2.6	1000(666)	52.1	18.8	-	1.6	24.5	2.9	1000(27)
설립유형												
공립단설	4.2	56.5	20.8	18.5	1000(34)	100.0	-	-	-	-	-	1000(1)
공립병설	6.3	59.2	32.5	1.9	1000(139)	58.7	8.6	-	-	32.7	-	1000(8)
사립법인	8.8	65.8	22.7	2.7	1000(258)	43.1	29.3	-	-	27.6	-	1000(12)
사립사인	5.6	76.0	17.8	0.6	1000(235)	57.2	13.3	-	7.3	9.5	12.7	1000(6)
$X^2(df)$		51.48(9)***				n.a ¹⁾						
아동연령												
만 3세	6.1	69.3	23.5	1.1	1000(153)	21.8	29.0	-	5.5	34.0	9.7	1000(8)
만 4세	8.4	68.7	22.6	0.3	1000(239)	83.1	9.8	-	-	7.1	-	1000(8)
만 5세	6.1	65.6	22.9	5.4	1000(274)	50.9	18.2	-	-	30.9	-	1000(11)
$X^2(df)$		14.94(6)*				n.a ¹⁾						

-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① 학부모 요청에 의한 개별 설명 ② 원장의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입학설명회 등)
 ③ 가정통신문 지면을 통한 상세 소개 ④ 주민자치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 관련 기관 지면으로 소개 ⑤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⑥ 같은 유치원 친구 아이 엄마를 통해서 ⑦ 부모의 인터넷 카페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⑧ 교육청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지면 안내 등)를 통해서 ⑨ 다른 형제자매가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⑩ 기타.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4)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유치원 학비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우, 유치원에서 설명한 주 사용처로 수업료 92.5%, 교재교구비 84.8%, 교사인건비 55.0%, 차량비 53.4%, 현장학습비 50.8% 순으로 답변하였고, 유아 학비의 사용처 설명이 필요한 이유로 유치원

의 학부모의 지원금 이외의 추가 부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라고 답변한 부모가 5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부지원은 우리의 세금이므로 24.4%, 유치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22.1%로 나타났다.

〈표 IV-1-6〉 유아학비 사용처 설명 유무

단위: %, 명

구분	사용처(중복응답)								설명 필요 없음	이유				계(수)		
	설명 합	수 업 료	교재 교구 비	교사 인건 비	행 사 비	차 량 비	현장 학습 비	기 타		설명 필요	①	②	③		④	
전체	83.8	92.5	84.8	55.0	36.6	53.4	50.8	1.0	(581)	2.9	97.1	24.4	53.3	22.1	0.2	100.0(693)
설립유형																
공립단설	91.6	98.0	93.5	63.1	43.4	63.8	65.9	-	(32)	2.5	97.5	37.9	35.5	26.6	-	100.0(34)
공립병설	78.1	89.2	75.0	40.7	39.5	55.6	54.2	3.8	(115)	1.5	98.5	27.1	45.3	26.6	1.0	100.0(147)
사립법인	88.7	93.1	83.0	54.0	31.8	58.1	49.8	0.3	(240)	2.3	97.7	20.9	60.1	19.0	-	100.0(281)
사립사인	80.6	92.9	91.3	63.4	39.7	44.7	47.7	0.4	(195)	4.5	95.5	24.9	53.0	22.1	-	100.0(242)
$X^2(df)$				n.a ¹⁾												n.a ¹⁾
아동연령																
만 3세	84.3	94.3	80.5	59.0	25.3	52.0	48.9	1.0	(136)	2.7	97.3	16.7	59.9	23.4	-	100.0(161)
만 4세	80.5	90.9	86.9	51.6	40.7	55.1	48.4	0.9	(199)	3.5	96.5	24.6	57.0	17.9	0.6	100.0(247)
만 5세	86.3	92.9	85.3	55.5	39.5	52.9	53.9	1.1	(246)	2.5	97.5	28.7	46.3	25.0	-	100.0(285)
$X^2(df)$	0.77															n.a ¹⁾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① 정부지원은 우리의 세금이므로

② 유치원의 학부모 추가 부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

③ 유치원의 의무라고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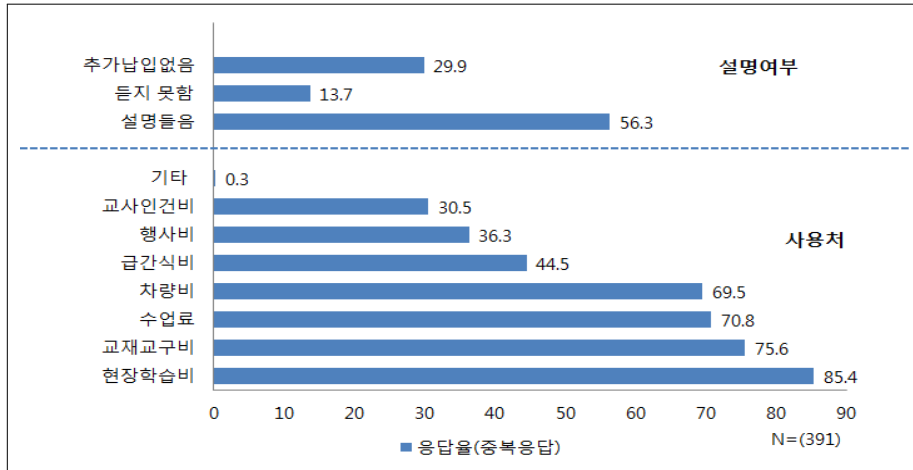
④ 기타.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유치원 추가 비용의 사용처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경우가 56.3%, 듣지 못한 경우 13.7%이다. 추가 비용이 많은 사용처는 현장학습비가 8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재교구비 75.6%, 수업료 70.8%, 차량비 69.5%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V-1- 참조). 현장학습비와 차량비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은 이유는 조사 시점이 5월로 현장학습과 야외 나들이 등이 많이 진행되는 달이란 점을 고려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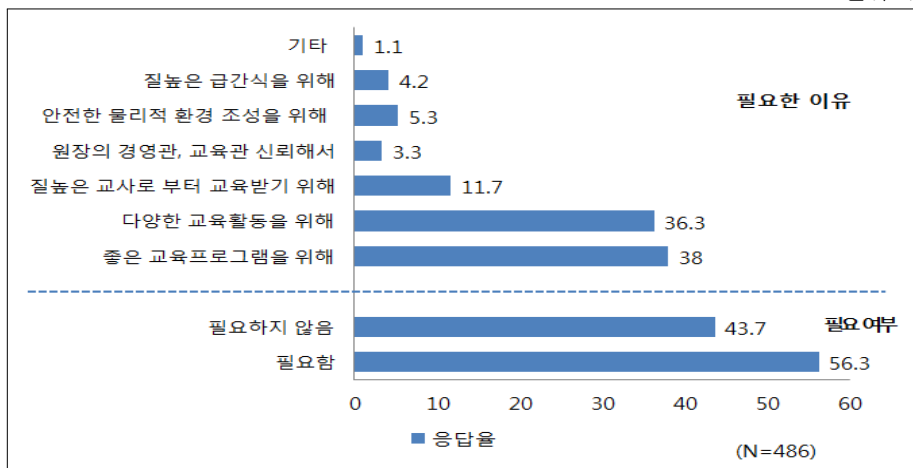
단위: %



[그림 IV-1-2] 유치원 교육비 추가 사용처(전체)

추가 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약 56.3%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약 43.7%에 비해 아주 약간 높게 나타났다. 추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이유를 물은 결과,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38%,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받기 위해 36.3%로 다른 이유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단위: %



[그림 IV-1-3] 유치원 추가 비용 사용처 설명 유무

다. 유치원 비용

1)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의 납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납부했다는 응답이 70.1%, 안했다 29.9%로 나타났다. 납부한 경우 현장학습비가 4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통학 차량비 38.6%, 수업료 38.3%, 급간식비 31.5%, 교재교구비 28.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수업료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납부한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7〉 유치원 교육비 납입 여부(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지출항목(중복응답)						(수)
	수업료	교재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기타	
전체	38.3	28.8	38.6	48.6	31.5	2.1	(693)
아동연령							
만 3세	31.6	29.5	34.1	42.2	29.5	3.2	(161)
만 4세	37.1	26.9	44.2	54.0	34.4	2.2	(247)
만 5세	43.2	30.0	36.3	47.4	30.2	1.3	(285)
설립유형							
공립	-	8.8	9.9	30.9	13.3	3.9	(181)
사립	50.6	35.9	48.8	54.7	37.9	2.7	(512)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 5. 기준임.

3) 응답자가 지불 항목을 모르거나 전체 항목으로 응답 한 경우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유치원 비용을 수업료,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기타 비용 등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표 IV-1-8 참조). 유치원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평균 비용은 107,680원, 중앙값은 90,000원이다. 연령별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교육비 분포와 평균을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출시 평균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각 연령이 서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V-1-8〉 유치원 교육비 분포와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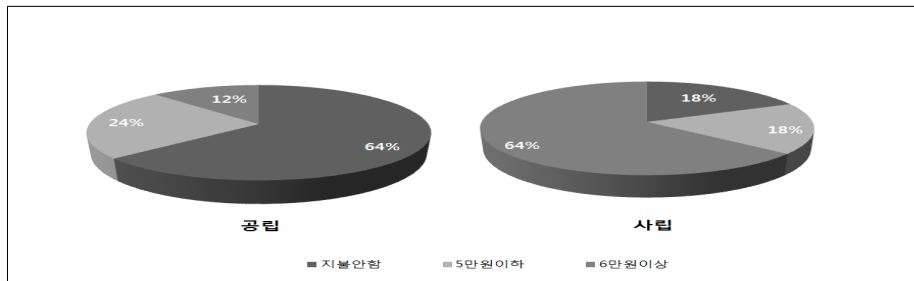
단위: 천원, 명

구분	자불안함	~ 5만원	6~ 10만원	11~ 15만원	16~ 20만원	21~ 30만원	계	지출시	
								중앙	평균
전체	29.8	19.2	21.6	11.8	7.2	10.3	100(693)	90.00	107.68

(표 IV-1-8 계속)

구분	지불안함	~ 5만원	6~ 10만원	11~ 15만원	16~ 20만원	21~ 30만원	계	지출시	
								중앙	평균
아동연령									
3세	37.4	15.5	21.7	10.6	7.5	7.4	1000(161)	90.00	103.35
4세	26.5	22.8	21.5	11.0	6.1	12.2	1000(247)	80.00	105.21
5세	28.8	17.8	21.7	12.9	7.7	11.2	1000(285)	90.00	112.05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그림 IV-1-4] 유치원 교육비(유형별) 분포 현황

유치원 교육비 분포와 평균에서 연령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교육비 분포 상에서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유치원 알리미 등을 통해서도 나타난 주지의 사실이다. 이 같은 설립유형에 따른 결과는 단순히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서 어느 쪽이 교육비를 많이 사용하느냐를 논의하는 대상이 되기보다는 비용격차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부모가 지출하는 유치원 교육비는 유치원 운영과 관련되는 비중이 크므로 설립유형 간의 단순 비교를 통한 해석 보다는 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세전) 대비 교육비에 대한 전체적인 부담 정도를 조사해 보면, 평균 2.28점으로 적절하다고 보았고,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3.63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담정도는 공립보다는 사립이 다소 부담정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비용 대비 교육서비스 만족도가 4세가 3.71점으로 가장 높았고, 5세가 3.54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V-1-9〉 월 세전 대비 유치원 비용 부담 정도(지불아동기준)

단위: %, 점, 명

구분	지출안함	부담정도			비용대비 교육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8	2.28	0.70	(486)	3.63	0.67	(486)
아동연령							
만 3세	37.4	2.31	0.67	(101)	3.67	0.61	(101)
만 4세	26.5	2.26	0.74	(182)	3.71	0.59	(182)
만 5세	28.8	2.27	0.68	(203)	3.54	0.75	(203)
$X^2(df)/F$	5.85(2)	0.12			3.30*		
설립유형							
공립	63.5	1.62	0.63	(66)	3.87	0.70	(66)
사립	17.9	2.38	0.66	(419)	3.59	0.67	(419)
$X^2(df)/F$		n.a			n.a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01$

2) 방과후과정 및 특성화활동

가) 방과후과정

유치원 이용 응답 유아의 약 54%인 374명이 방과후과정을 이용한다고 응답 하였으며(표 IV-1-3 참조), 그 중에서 방과후 과정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이 약 38.2%로 143명이다. 여기서는 연령별로 방과후과정 지출비용과 부담 및 만족 정도를 살펴보겠다. 평균 비용은 약 62,850원이며, 중앙값은 53,730원이다. 지출시 부담정도는 2.26으로 보통정도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비해 만족도는 3.61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0〉 유치원 방과후 과정 비용 및 만족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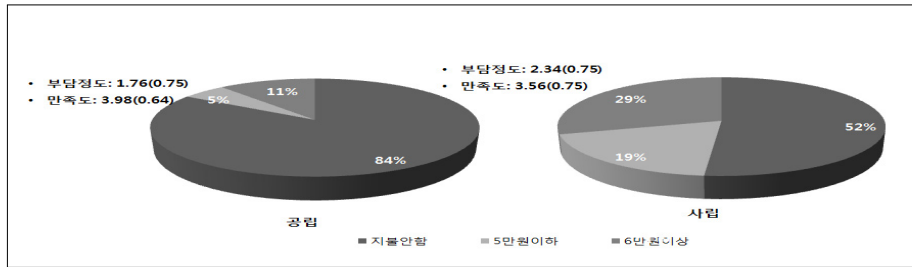
단위: %, 명,천원

구분	지출여부			지출시		부담정도		만족도		(수)
	지출안함	지출함	(수)	평균	중앙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61.6	38.2	(374)	62.85	53.73 (143)	2.26	0.77	3.61	0.75	(143)
아동연령										
만 3세	60.5	39.5	(76)	69.54	60.27 (30)	2.30	0.73	3.76	0.76	(30)
만 4세	62.1	37.9	(142)	61.90	50.30 (54)	2.27	0.79	3.60	0.69	(54)

(표 IV-1-10 계속)

구분	지출여부			지출시		부담정도		만족도		(수)	
	지출안함	지출함	(수)	평균	중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만 5세	61.9	38.1	(156)	60.33	54.09	(59)	2.24	0.78	3.55	0.78	(59)
							0.61		0.83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비용응답 항목을 모르는 경우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그림 IV-1-5] 유치원 방과후과정비(유형별) 분포 및 만족도 등

방과후 과정에 참여한 이유 및 방과후 과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면 참여 이유로 맞벌이 가정이어서 아이를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6%, 자녀가 친구들과 있는 것을 좋아해서가 32.6%, 방과후 과정비 지원이 있어서가 27.1%로 나타났다. 방과후 과정의 개선 요구 사항은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5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합리적인 방과후 과정비(가격규제) 산출이 19.2%, 담당 교·강사 자격과 자질 향상이 1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방과후 과정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단위: %, 명

구분	참여 이유					계(수)	개선 요구 사항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35.6	32.6	27.1	3.3	1.4	1000(374)	56.2	19.2	11.5	7.0	4.1	0.6	0.6	0.8	100.0(374)
아동연령															
만 3세	35.8	35.4	24.4	4.4	-	1000(76)	45.2	30.0	10.6	9.9	2.4	-	0.7	1.2	100.0(76)
만 4세	36.0	35.5	24.6	2.8	1.0	1000(142)	61.5	16.7	12.6	6.2	2.3	0.6	-	-	100.0(142)

(표 IV-1-11 계속)

구분	참여 이유					계(수)	개선 요구 사항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만 5세	35.1	28.5	30.7	3.3	2.5	100.0(156)	56.8	16.2	11.0	6.2	6.6	0.8	1.0	1.4	100.0(156)

- 주: 1) 참여 이유 ① 맞벌이 가정이어서 아이를 기관에 맡겨야 해서 ② 자녀가 친구들과 있는 것을 좋아해서 ③ 방과후 과정비 지원이 있어서 ④ 유치원에서 권해서 ⑤ 기타.
 2) 개선 요구 사항 ①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② 합리적인 방과후 과정비(가격 규제 등) ③ 담당 교·강사 자격과 자질향상 ④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확대 ⑤ 방과후 과정을 위한 별도 공간마련 ⑥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폐지 ⑦ 방과후 과정 신청자격 제한(예: 맞벌이 가정) ⑧ 기타.
 3)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4)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나) 방과후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이 68.2%, 미이용이 31.8%로 이용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이용하는 유아는 평균 참여 개수가 2.69이다.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이용하는 유아 중,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약 79.3%이며, 지출시 평균 비용은 83,540원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방과후과정 특성화 활동 이용 개수와 평균 비용

단위: %, 명, 개, 천원

구분	미이용	이용	계(수)	이용 시 평균개수	비용지출	계(수)	지출시	
							(수)	평균
전체	31.8	68.2	100.0(693)	2.69	79.3	100.0(473)	(373)	83.54
아동연령								
만 3세	33.8	66.2	100.0(161)	2.61	85.8	100.0(106)	(90)	79.81
만 4세	34.7	65.3	100.0(247)	2.73	73.9	100.0(161)	(119)	77.74
만 5세	28.0	72.0	100.0(285)	2.71	80.5	100.0(205)	(164)	89.80
설립유형								
공립	38.1	61.9	100.0(181)	2.63	41.1	100.0(112)	(46)	58.71
사립	29.8	70.2	100.0(513)	2.70	91.7	100.0(360)	(327)	86.96

-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방과후 특성화 활동으로 많이 하는 교육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영어가 7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술조형이 53.3%, 체육 41.7%, 음악 32.2%, 교구 프로그램 16.5%, 한글(언어) 14.1%, 수학 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3〉 연령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선호 교육활동(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영어	미술, 조형	체육	음악	교구 프로그램	한글(언어)	수학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전체	74.9 (342)	53.3 (243)	41.7 (190)	32.2 (147)	16.5 (75)	14.1 (64)	12.4 (57)	(456)
아동연령								
만 3세	76.0 (79)	65.0 (68)	33.7 (35)	27.4 (29)	9.9 (10)	16.1 (17)	7.6 (8)	(104)
만 4세	71.6 (109)	50.8 (77)	48.5 (74)	35.5 (54)	21.4 (32)	12.8 (19)	14.4 (22)	(152)
만 5세	76.8 (154)	49.2 (98)	40.6 (81)	32.1 (64)	16.2 (32)	14.1 (28)	13.4 (27)	(200)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이며, 항목명이 기입되지 않은 것은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세전) 대비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위한 지출 비용의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지출 안 하는 경우가 21.2%이었고, 부담 정도는 2.31로 적절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만족도는 3.67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표 IV-1-14〉 월 세전 대비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활동 교육비 부담 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지출 안함(N=100)	비용 지출				(수)	계(수)
		부담정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2	2.31	0.59	3.67	0.56	(373)	100.0(473)
아동연령							
만 3세	15.4	2.28	0.57	3.73	0.57	(90)	100.0(106)
만 4세	26.3	2.32	0.60	3.61	0.59	(119)	100.0(161)
만 5세	20.2	2.31	0.56	3.65	0.54	(164)	100.0(205)
$X^2(df)/F$	4.86(2)	0.11		1.26			
설립유형							
공립	24.9	2.22	0.52	3.84	0.45	(46)	100.0(112)
사립	64.3	2.33	0.60	3.64	0.61	(327)	100.0(360)
$X^2(df)/t$	83.90***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이며, 부담정도, 만족도는 비용 지출 유가에 한함.

3)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01$

방과후 특성화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와 방과후 특성화 활동의 실시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먼저 참여 이유로 아이가 좋아해서라고 답변한 비율이 2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기회 참여가 22.9%, 유아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2%, 학원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13%, 수업료가 저렴해서 8.1%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교육 내용의 내실화가 40.7%로 다른 사항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다음으로 다양한 방과후 특성화 활동 제공이 21.7%, 합리적인 수업료(가격규제 등) 산출 17.3%,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 향상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연령별 방과후특성화 활동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단위: %, 명

구분	참여 이유								개선 요구 사항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체	22.9	26.8	8.1	15.2	7.5	4.1	13.0	2.4	40.7	17.3	11.0	21.7	3.6	0.3	5.3	1000(473)
아동연령																
만 3세	21.1	30.8	4.1	20.6	6.0	4.2	8.8	4.5	38.9	12.8	11.5	27.4	3.8	-	5.5	1000(106)
만 4세	25.0	26.1	10.1	15.8	7.5	3.7	9.9	1.9	40.6	18.3	11.8	20.5	1.5	-	7.2	1000(161)
만 5세	22.1	25.4	8.6	12.0	8.4	4.4	17.6	1.7	41.8	18.9	10.1	19.7	5.2	0.7	3.6	1000(205)
$X^2(df)$	17.61(14)								13.70(12)							

주: 1) 참여 이유 ① 교육기회참여 ② 아이가 좋아해서 ③ 수업료가 저렴해서 ④유아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⑤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⑥유치원이 권해서 ⑦ 학원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⑧유치원 교육시간을 늘리려고.

2) 개선 요구 사항 ① 교육내용의 내실화 ② 합리적인 수업료(가격규제 등) 산출 ③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향상 ④ 다양한 방과후 특성화 활동제공 ⑤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마련 ⑥ 방과후 특성화 활동폐지 ⑦ 개선점 없음.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 참여로 부모님의 유치원 이외의 교육 비용 지출 부담이 줄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부담이 줄었다고 답변한 부모가 전체의 60.3%로 '아니오'라고 답변한 39.7%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방과후 특성화 활동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유치원에서 준수하도록 권장하는 운영기준에 대해 유치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5%가 안내를 받았다고 답변하였고, 20.5%가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표 IV-1-16〉 방과후 특성화 활동운영 부모지출감소, 운영안내여부

단위: %, 명

구분	부모지출감소		운영안내여부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60.3	39.7	79.5	20.5	100.0(473)
아동연령					
만 3세	66.6	33.4	82.0	18.0	100.0(106)
만 4세	61.1	38.9	75.0	25.0	100.0(161)
만 5세	56.5	43.5	81.7	18.3	100.0(205)
설립유형					
공립	67.3	32.7	78.8	21.2	100.0(112)
사립	58.2	41.8	79.7	20.3	100.0(360)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방과후 특성화 활동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대다수의 부모가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면 적합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답변한 부모가 5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25.0%, 지역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1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의 연령이 많을수록 정부의 일괄 규제 방법을 원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표 IV-1-17〉 방과후 특성화 활동운영 가격 규제

단위: %, 명

구분	필요성		계(수)	가격규제 방법				계(수)
	예	아니오		정부가 상한선 제시 후 일괄규제	유치원 운영 위원회 결정	지역교육청 일괄기준 제시	유치원 자율 결정	
전체	79.4	20.6	100.0(473)	55.6	25.0	15.0	4.3	100.0(376)
아동연령								
만 3세	82.8	17.2	100.0(106)	44.7	36.6	15.4	3.4	100.0(88)
만 4세	76.8	23.2	100.0(161)	56.3	19.2	19.9	4.6	100.0(124)
만 5세	79.7	20.3	100.0(205)	61.0	23.1	11.2	4.7	100.0(164)
설립유형								
공립	73.5	26.5	100.0(113)	45.1	30.5	18.3	6.1	100.0(83)
사립	81.2	18.8	100.0(360)	58.7	23.5	14	3.8	100.0(293)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가격규제방법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79.4%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3) 돌봄 비용

본 조사에서 유치원 돌봄을 이용한다는 응답비율은 전체 이용자 중 약 8.5%인 59명이다(표 IV-1-3 참조). 이 중에서 돌봄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은 약 10.7%이다. 비용 지출시, 만 5세만 비용을 평균 24,460원 지출하였다.

〈표 IV-1-18〉 돌봄 비용(아침돌봄, 저녁돌봄) 납입 여부

구분	미지출	지출	계(수)	지출시	
				평균	중앙
전체	89.3	10.7	100.0(59)	24.46	21.59
아동연령					
만 3세	100.0	0.0	100.0(25)	-	-
만 4세	100.0	0.0	100.0(10)	-	-
만 5세	73.4	26.6	100.0(24)	24.46	21.59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4) 유치원 (총) 비용³⁸⁾

2015년 5월 한 달동안 사용된 유치원 비용을 조사하였다. 각 응답자가 자신의 자녀가 이용한 유치원 과정의 모든 비용(교육비, 방과후과정비 등)을 합해서 총액을 기입하였고, 그 금액을 근거로 유치원 비용을 산출하였다. 유치원 비용은 이용자에 따라 지출 항목이 다르므로, 어느 한 항목에서라도 비용을 지불한 경우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미지불 유아를 나눠서 제시하였다.

유치원 전체 비용을 지출하는 유아의 월평균 비용은 157,120원이며,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유아를 포함한 비용은 139,280원으로 나타났다. 전체비용이므로 지출하지 않은 유아를 포함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면, 설립유형 간의 비용 격차

38) 2015년 5월 기준 유치원 이용 총 금액은 응답자가 기입한 이용 총액을 근거로 산출하였음. 이는 유치원 이용의 세부 항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임.

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령별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비용결과에서 설립유형 간의 비용격차를 단순히 비교하기 보다는 설립유형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공립과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인건비 등 비용 지원항목과 비율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표 IV-1-19〉 유치원 교육비 비용(전체)

단위: 천원, 명

구분	소요비용(미지불포함)			소요비용(지불기준)		
	평균	중앙	(수)	평균	중앙	(수)
전체	139.28	115.00	(693)	157.12	137.50	(589)
아동연령						
만 3세	132.70	104.17	(161)	140.65	116.67	(144)
만 4세	133.10	116.00	(247)	153.94	137.50	(206)
만 5세	148.34	120.00	(285)	169.90	140.00	(239)
설립유형						
공립	39.48	10.00	(181)	60.94	50.00	(100)
사립	174.59	157.50	(512)	179.83	162.83	(489)

주: 1) 총액의 (수)는 비용 항목 중 하나라도 지출한 유아 수의 합임.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이므로 입학금은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유치원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전체는 비용미지출 유아 포함 경우, 소득 대비 3.86%와 지출대비 4.72%로 나타났다. 비용지불 유아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대비 4.36%, 지출 대비 5.32%이다. 이용 유치원 유형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IV-1-20〉 유치원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비용미지출포함						비용지출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수)
전체	3.86	3.32	18.50	4.72	4.42	42.85	(693)	4.36	3.21	18.50	5.32	4.35	42.86	(589)
아동연령														
만 3세	3.66	3.01	12.78	4.72	4.20	27.25	(161)	3.88	2.95	12.78	5.01	4.14	27.25	(144)
만 4세	3.78	3.34	18.50	4.44	3.98	21.88	(247)	4.38	3.20	18.50	5.14	3.84	21.88	(206)
만 5세	4.05	3.46	17.71	4.95	4.83	42.86	(285)	4.64	3.35	17.71	5.67	4.79	42.85	(239)
F	1.57			1.14				3.98*			2.21			

(표 IV-1-21 계속)

구분	만족함 (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수)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공립	96.8 (181)	0.0	0.0	0.0	0.0	-	0.0	0.0	100.0	0.0	0.0	0.0	(1) 100.0(34)
사립	98.0 (513)	0.0	0.0	31.9	18.5	-	28.1	0.0	0.0	0.0	21.5	0.0	(3) 100.0(147)

주: 1) ① 교육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아서 ② 아이가 유치원을 싫어해서 ③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 지나치게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권해서 ⑤ 선생님이 싫어서(자질, 인성 등) ⑥ 방과후 특성화 활동이 다양하지 못해서 ⑦ 급간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⑧ 통학차량 이용이 불편해서 ⑨ 자주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 ⑩ 추가수업료, 방과후 과정비가 많아서 ⑪ 기타.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어린이집

가. 어린이집 이용 현황

조사에 참여한 1,518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영유아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으로는 민간어린이집으로 64.0%(971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0~2세인 영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 또한 민간어린이집으로 4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3~5세인 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역시, 민간 어린이집으로서 5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현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 참조).

<표 IV-2-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구분	단위: %, 명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직장	가정	계(수)
전체	16.8	6.2	4.0	64.0	1.8	7.2	100.0(1,518)
아동연령							
0세	10.6	2.6	4.8	63.5	0.0	18.4	100.0(54)
1세	8.5	6.2	7.2	65.1	3.1	9.8	100.0(236)
2세	14.5	6.5	2.8	64.4	1.6	10.2	100.0(390)
소계(영아)	(83)	(41)	(31)	(439)	(13)	(73)	(680)

(표 IV-2-1 계속)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직장	가정	계(수)
3세	17.0	7.9	2.8	64.1	1.6	6.7	100.0(337)
4세	21.1	3.9	4.0	63.9	2.9	4.2	100.0(289)
5세	25.5	7.0	3.9	62.6	0.0	0.9	100.0(212)
소계(유아)	(172)	(53)	(29)	(534)	(13)	(36)	(838)
$X^2(df)$							80.99(25)***

주: 1) 2015. 1. 1. 이후 출생한 영아는 0세에 포함함.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다음으로 가구소득 및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은 만 0~2세의 경우 대체로 300~399만원 소득 구간의 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세의 경우에는 200~299만원의 소득 구간, 5세의 경우 400~499만원 소득 구간의 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법인(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포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0세 및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300~399만원의 소득 구간을 가진 가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가정, 부모협동 포함)어린이집의 경우에는 300~399만원 소득 구간의 가구가 전 연령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및 소득 구간별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표 IV-2-2> 참조).

〈표 IV-2-2〉 가구소득·연령에 따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

	단위: %, 명					계(수)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국공립						
0세	0.0	10.8	39.5	38.0	11.7	100.0(6)
1세	0.0	20.4	28.8	21.3	29.6	100.0(20)
2세	0.0	23.6	28.3	21.6	26.6	100.0(57)
3세	0.0	41.6	32.7	14.8	11.0	100.0(57)
4세	0.0	42.9	36.5	15.3	5.3	100.0(61)
5세	1.2	17.3	24.6	44.9	12.0	100.0(54)
법인(직장)						
0세	0.0	17.9	13.2	60.1	8.7	00.0(4)
1세	1.2	18.6	41.3	16.1	22.8	100.0(39)
2세	3.6	25.0	39.8	16.8	14.7	100.0(42)

(표 IV-2-2 계속)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만원 이상	계(수)
3세	0.0	30.0	39.9	12.8	17.2	100.0(42)
4세	4.8	21.5	31.8	21.4	20.4	100.0(31)
5세	11.7	37.8	25.7	6.7	18.1	100.0(23)
민간(가정)						
0세	0.0	32.8	38.1	7.4	21.6	100.0(44)
1세	3.0	27.0	33.0	13.6	23.4	100.0(177)
2세	1.4	22.8	41.7	17.0	17.2	100.0(291)
3세	3.1	29.9	38.9	17.4	10.7	100.0(238)
4세	1.6	30.2	37.5	19.3	11.4	100.0(197)
5세	1.1	30.3	34.0	21.5	13.1	100.0(135)

주: 1) 법인(직장)은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재원아 포함하며, 민간(가정)은 민간, 가정, 부모협동 재원아를 포함함.

2) 조사아동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임.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다음으로 영유아 연령 및 부모의 맞벌이 유무에 따른 어린이집 과정의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과정 이용 현황에서는 전 연령대 모두 정규보육을 이용하였으며, 그 다음 과정으로 특별활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활동은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과정 이용 유형에서도 특별활동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정규보육 제외), 맞벌이 유무에 따른 이용률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의 경우에는 외벌이보다 야간(시간연장)보육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3 참조).

〈표 IV-2-3〉 어린이집 과정 이용 현황(중복응답)

구분	어린이집 과정					(수)
	정규보육과정	야간(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주말보육	특별활동	
전체	100.0	1.6	0.1	0.3	62.9	(1,518)
아동연령						
0세	100.0	3.0	0.0	0.0	4.1	(54)
1세	100.0	3.5	0.0	0.0	32.2	(236)
2세	100.0	0.8	0.4	0.0	63.9	(390)
3세	100.0	1.6	0.0	0.4	69.1	(337)
4세	100.0	1.7	0.0	1.0	76.5	(289)
5세	100.0	0.4	0.0	0.5	81.8	(212)

단위: %, 명

(표 IV-2-4 계속)

구분	7 시간 미만	7~8 시간 미만	8~9 시간 미만	9~10 시간 미만	10~11 시간 미만	11~12 시간 미만	12 시간 이상	계(수)	평균 (시간)
0세	31.9	26.9	28.2	6.3	6.1	0.0	0.7	100.0(54)	7.39
1세	40.3	33.0	15.5	4.3	6.7	0.2	0.0	100.0(236)	7.05
2세	45.4	26.1	16.9	7.8	3.2	0.6	0.0	100.0(390)	7.03
3세	45.1	25.7	17.0	5.0	5.8	1.2	0.2	100.0(337)	7.09
4세	35.7	32.0	17.5	6.7	7.1	1.0	0.0	100.0(289)	7.26
5세	20.9	36.8	30.1	8.5	2.8	0.6	0.4	100.0(212)	7.51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0.4	29.5	33.1	7.1	0.0	0.0	0.0	100.0(28)	7.37
200-299만원	46.2	28.4	19.8	4.6	0.8	0.2	0.0	100.0(424)	6.85
300-399만원	39.9	34.3	15.6	5.9	3.6	0.5	0.1	100.0(553)	7.09
400-499만원	28.6	25.6	20.5	11.3	11.8	2.2	0.0	100.0(275)	7.68
500만원 이상	35.9	26.1	22.4	5.4	9.1	0.5	0.5	100.0(238)	7.31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24.7	28.6	23.2	10.3	11.2	1.8	0.2	100.0(624)	7.73
외벌이	48.6	30.5	16.2	3.8	0.9	0.0	0.1	100.0(894)	6.78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나. 보육료 안내 및 사용처

본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정책 및 수혜방법에 대한 인지경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설립유형 및 아동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내 받은 방법으로는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원장의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입학설명회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서의 미 안내 시 보육료 정책에 대한 인지경로는 법인(직장 등)과 민간(가정 등)의 경우 모두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가장 높았으며, 국공립의 경우 '같은 어린이집 친구 아이 엄마를 통해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연령에 따른 인지경로를 살펴보면, 역시 '원장의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입학설명회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에서의 미 안내 시의 인지경로는 대체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세의 경우에는 '같은 어린이집 친구 아이 엄마를 통해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5 참조).

〈표 IV-2-5〉 보육료 안내(정책설명, 수혜방법 등)

단위: %, 명

구분	안내 받은 방법 (예 응답자)					계(수)	미 안내 시 인지경로(아니오 응답자)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11.1	63.9	23.8	1.2	100.0(1,343)	38.3	28.6	11.5	15.1	5.7	0.8	100.0(175)	
아동연령													
0세	14.8	62.8	22.4	0.0	100.0(45)	61.7	8.0	0.0	8.0	16.1	6.1	100.0(9)	
1세	16.6	56.4	23.8	3.2	100.0(186)	51.7	28.0	7.4	8.0	3.2	1.7	100.0(51)	
2세	13.8	65.9	19.6	0.8	100.0(320)	26.1	32.4	15.0	23.1	3.4	0.0	100.0(69)	
3세	7.6	67.3	24.0	1.1	100.0(315)	40.1	38.3	6.9	14.7	0.0	0.0	100.0(22)	
4세	8.7	69.3	20.7	1.3	100.0(275)	36.2	15.9	14.7	16.9	16.3	0.0	100.0(14)	
5세	9.4	55.3	34.9	0.4	100.0(202)	33.5	19.8	23.2	0.0	23.4	0.0	100.0(10)	
$X^2(df)$				n.a ¹⁾									
설립유형													
국공립	13.7	60.6	24.4	1.3	100.0(245)	25.8	31.4	27.3	15.5	0.0	0.0	100.0(10)	
법인(직장) 등	5.0	75.7	17.0	2.3	100.0(149)	41.5	31.8	7.1	7.2	12.4	0.0	100.0(32)	
민간(가정) 등	11.3	62.9	24.7	1.0	100.0(948)	38.5	27.6	11.4	16.9	4.5	1.1	100.0(133)	
$X^2(df)$				15.780(6)*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① 학부모 요청에 의한 개별 설명 ② 원장의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입학설명회 등)
 ③ 가정통신문 지면을 통한 상세 소개 ④ 주민자치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⑤ 아는 사람을 통해서 ⑥ 같은 어린이집 친구 아이 엄마를 통해서 ⑦ 부모의 인터넷 카페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⑧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지면 안내 등)를 통해서 ⑨ 다른 형제자매가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⑩ 기타.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보육료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우 보육료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립유형 및 연령에 상관없이 과반 수 이상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료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역시 설립유형 및 연령에 따른 차이 없이 응답자의 90% 이상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설명이 필요한 이유로는 ‘어린이집의 학부모 추가 부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가 모든 설립유형 및 연령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보육료 사용처 설명 유무와 설명 필요성 인식

단위: %, 명

구분	설 명 합	설명 안함	계(수)	설명 필요 없음	설명 필요 함	이유				계(수)
						①	②	③	④	
전체	77.9	22.1	100.0(1,183)	2.0	98.0	23.8	48.7	27.5	0.1	100.0(1,488)
아동연령										
0세	75.5	24.5	100.0(41)	1.3	98.7	26.6	49.7	23.6	0.0	100.0(53)
1세	70.5	29.5	100.0(166)	1.9	98.1	19.3	48.7	31.6	0.4	100.0(232)
2세	74.2	25.8	100.0(289)	2.2	97.8	30.1	43.8	26.1	0.0	100.0(381)
3세	79.5	20.5	100.0(268)	2.3	97.7	16.7	52.8	30.5	0.0	100.0(329)
4세	81.6	18.4	100.0(236)	1.4	98.6	20.1	49.4	30.4	0.0	100.0(285)
5세	86.0	14.0	100.0(182)	2.1	97.9	32.6	49.9	17.5	0.0	100.0(208)
설립유형										
국공립	77.3	22.7	100.0(197)	2.0	98.0	24.3	47.0	28.7	0.0	100.0(249)
법인(직장) 등	68.5	31.5	100.0(124)	0.6	99.4	22.6	44.8	32.6	0.0	100.0(180)
민간(가정) 등	79.6	20.4	100.0(862)	2.2	97.8	23.9	49.8	26.3	0.1	100.0(1,058)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① 정부지원은 우리의 세금이므로 ② 어린이집의 학부모 추가 부담에 대한 이유를 알기 위해 ③ 어린이집의 의무라고 생각함 ④ 기타.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다. 어린이집 소요 비용

1) 정규과정현황

어린이집 정규 보육비용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 납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금을 제외한 정규 비용 지출 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전체에서는 현장 학습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 설립유형, 아동연령, 가구소득 요인에서도 현장학습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비용 납입 여부(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비용 지출(중복응답)								(수)	
	보육료	교재 교구비	통학 차량비	현장 학습비	급간 식비	행사비	특성 화비	기타		
전체	17.5	18.4	36.0	59.2	17.0	23.2	7.3	0.6	(1,518)	
아동연령										
0세	-	2.3	9.6	7.1	1.6	7.2	0.0	7.4	(54)	

(표 IV-2-7 계속)

구분	비용 지출(중복응답)								(수)
	보육료	교재 교구비	통학 차량비	현장 학습비	급간 식비	행사비	특성 화비	기타	
1세	-	10.5	25.7	38.7	17.7	16.0	4.3	10.4	(236)
2세	-	15.7	33.1	56.6	15.3	25.0	10.0	13.2	(390)
3세	26.3	19.4	40.8	64.0	24.6	27.5	10.4	0.3	(337)
4세	23.9	24.6	38.6	68.8	13.6	26.3	6.2	0.0	(289)
5세	16.9	26.5	48.2	79.7	15.8	20.7	4.2	0.0	(212)
설립유형									
국공립	-	10.3	20.1	71.7	9.9	20.8	3.8	8.3	(255)
법인(직장) 등	11.0	24.1	26.1	41.3	17.0	16.0	5.1	0.0	(182)
민간(가정) 등	20.9	19.4	41.4	59.3	18.7	24.9	8.5	0.7	(1,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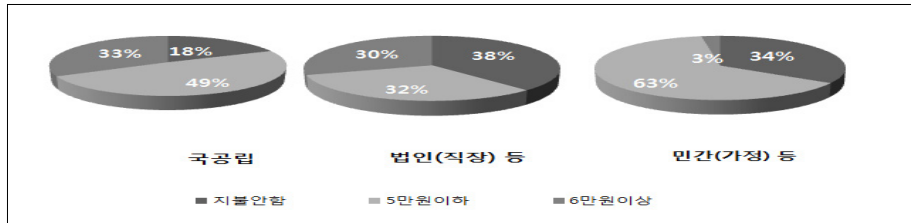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2) 응답자가 세부 항목을 모르는 등 분류 기준이 모호한 경우는 기타로 분류하였고, 2세 이하 영아에서 낮잠 이불, 도시락, 각종 필요 용품 등과 관련된 응답이 있었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어린이집 이용자 중, 비용을 지출하는 비율은 약 79.2%로 나타났다. 비용지출 기준으로 전체 평균 비용은 51,980원이다. 설립유형에서는 국공립이 가장 비용이 낮았으며, 연령에서는 2세 이하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용이 증가하였다.

<표 IV-2-8> 어린이집 비용 분포 및 평균

구분	지불 안함	지불 함	지출시 비율				(수)	지출시	
			~5만원	6~10만원	11~15만원	16만원이상		평균	중앙
전체	20.8	79.2	44.6	48.7	4.1	2.6	(1,518)	51.98	40.00
아동연령									
0세	71.8	28.2	75.0	25.0	0.0	0.0	(54)	24.15	20.00
1세	40.1	59.9	63.2	36.8	0.0	0.0	(236)	39.27	40.00
2세	20.6	79.4	28.0	34.0	6.0	2.0	(390)	48.46	39.78
3세	14.9	85.1	39.3	48.3	5.6	6.7	(337)	63.48	50.00
4세	14.1	85.9	53.6	43.5	2.9	0.0	(289)	54.74	43.33
5세	5.2	94.8	44.6	48.7	4.1	2.6	(212)	48.65	40.00
F	80.18(5) ^{***}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2) 지불함의 기준은 <표 IV-2-7>의 납입항목 중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는 경우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그림 IV-2-1] 어린이집(유형별) 비용 분포

월 수입 세전 대비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정도, 비용 대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먼저 부담 정도에서는 전체 평균 1.85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담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이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다소 부담정도가 낮았다. 부담정도와 연결하여 비용 대비 만족도를 보면, 3.78정도로 다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연령에 따라서는 만족도의 차이는 거의 없으나, 시설 설립유형에서는 부담정도가 낮은 국공립의 비용 대비 만족도가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게 높게 나타났다.

<표 IV-2-9> 월 세전 대비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정도와 만족도

단위: %, 점, 명

구분	추가 비용 없음	비용지출				계
		부담정도		비용대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8	1.85	0.69	3.78	0.62	(1,203) 100.0(1,518)
아동연령						
0세	71.8	1.41	0.60	3.98	0.61	(15) 100.0(54)
1세	40.1	1.64	0.68	3.83	0.61	(142) 100.0(236)
2세	20.6	1.84	0.65	3.75	0.66	(310) 100.0(390)
3세	14.9	1.99	0.69	3.73	0.65	(287) 100.0(337)
4세	14.1	1.93	0.71	3.75	0.58	(248) 100.0(289)
5세	5.2	1.78	0.71	3.88	0.57	(201) 100.0(212)
F		7.22***		2.17		
설립유형						
국공립	18.5	1.50	0.62	3.85	0.51	(208) 100.0(255)
법인(직장)등	37.7	1.92	0.69	3.59	0.77	(113) 100.0(182)
민간(가정)등	18.5	1.93	0.69	3.79	0.62	(882) 100.0(1,082)
F		34.01***		6.25**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이며, 비용지출은 지출 영유아에 한해서 조사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1$, *** $p < .001$

2) 시간연장보육 현황

본 조사에서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표본 수가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시간 연장 보육료를 지출할 경우, 그 금액은 전체 평균으로는 약 37,000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0〉 연령별 시간연장보육(주말 및 휴일 등 포함, 지원금제외) 비용 분포와 평균
단위: 천원, 명

구분	지출안함	지출함	계(수)	지출시		(수)
				평균	중앙	
전체	62.9	37.1	100.0(30)	37.77	30.00	(19)
아동연령						
영아	17.5	82.5	100.0(15)	37.07	30.00	(13)
유아	55.9	44.1	100.0(15)	39.02	30.00	(7)

주: 1) 정규보육과정 외 시간연장보육(야간 및 24시간보육), 주말 및 휴일보육 지원금은 제외함.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3) 특별활동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이용비율이 6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참여 개수는 2.63개이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약 62.9%인 955명 중에서 약 8.8%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용을 지출하는 아동 871명을 기준으로 특별활동을 이용 시, 소요되는 평균 지출 비용은 약 62,700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립유형별, 아동연령별로는 특별활동 이용 현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특별활동 이용율이 높아졌으나, 이용 평균 개수와 지출 비용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설립유형은 국공립에 비해 법인(직장),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유형의 이용율은 국공립이 높으나, 실제적인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은 국공립이 가장 낮았다. 이는 국공립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별활동 참여율은 높으나, 참여 활동 프로그램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해된다.

〈표 IV-2-11〉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와 평균 비용

단위: %, 명, 개, 천원

구분	미이용	이용	계(수)	이용평균 개수	비용미 지출	비용지출	계(수)	지출	
								(수)	평균
전체	37.1	62.9	100.0(1,518)	2.63	8.8	91.2	(955)	(871)	62.70
아동연령									
2세 이하	51.9	48.1	100.0(680)	2.55	11.5	88.5	(327)	(290)	58.42
3세	30.9	69.1	100.0(337)	2.66	6.0	94.0	(233)	(219)	61.94
4세	23.5	76.5	100.0(289)	2.82	8.0	92.0	(221)	(204)	67.81
5세	18.2	81.8	100.0(212)	2.49	8.6	91.4	(173)	(158)	66.22
$X^2(df)$	236.60***								
설립유형									
국공립	25.2	74.8	100.0(255)	2.26	4.8	95.2	(190)	(181)	52.21
법인(직장)등	46.7	53.3	100.0(182)	3.16	28.3	71.7	(97)	(69)	61.99
민간(가정)등	38.3	61.7	100.0(1,082)	2.66	7.2	92.8	(668)	(620)	65.84
$X^2(df)$	23.24***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다음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선호하는 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영어(70.5%)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육(47.0%), 미술·조형(46.6%)을 그 다음으로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설립 유형, 아동연령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IV-2-12〉 어린이집 특별활동 선호 활동(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영어	체육	미술·조형	음악	교구 프로그램	한글(언어)	수학	(수)
전체	70.5	47.0	46.6	36.2	25.0	11.6	7.7	(947)
아동연령								
2세 이하	53.9	55.7	47.8	39.4	34.1	9.0	3.4	(327)
3세	68.6	46.3	56.1	42.2	21.3	9.9	9.1	(228)
4세	88.6	45.9	43.7	30.8	21.6	14.9	10.3	(220)
5세	81.3	32.3	34.1	29.0	16.5	14.5	10.8	(172)
설립유형								
국공립	67.5	35.2	47.2	29.7	13.3	3.9	6.1	(190)
법인(직장)등	72.1	53.5	43.5	40.9	25.7	21.4	17.0	(97)
민간(가정)등	71.2	49.4	46.6	37.4	28.2	12.4	6.8	(660)

주: 1) 본 자료는 이용 빈도 7순위까지의 활동프로그램만 해당이 된 것이며, 7순위까지의 사례수는 947명임.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월 가구소득 대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담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 2.06으로 나타나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이거나 비용 대비 만족도는 3.62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동연령을 보면, 2세 이하의 특별활동 지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게 나타났으나 비용대비 만족도는 별다른 연령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설립유형 간에는 부담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용 대비 만족도가 민간(가정)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2-13〉 월 세전 대비 어린이집특별활동비 부담 정도

단위: %, 점, 명

구분	지출 없음	비용 지출				(수)	(수)
		부담정도		비용대비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8.8	2.06	0.62	3.62	0.58	(871)	(955)
아동연령							
2세 이하	11.5	2.33	0.83	3.84	0.10	(290)	(327)
3세	6.0	2.02	0.63	3.68	0.62	(219)	(233)
4세	8.0	2.06	0.62	3.58	0.55	(204)	(221)
5세	8.6	1.99	0.71	3.68	0.55	(158)	(173)
<i>F</i>		1.09		1.84			
설립유형							
국공립	4.8	1.81	0.58	3.47	0.54	(181)	(190)
법인(직장)등	28.3	2.09	0.72	3.61	0.62	(69)	(97)
민간(가정)등	7.2	2.12	0.60	3.66	0.58	(620)	(668)
<i>F</i>		18.31***		7.53***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다음으로 특별활동을 참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교육기회참여'가 가장 많았으며(29.9%), 다음으로 '아이가 좋아해서'(28.0%)로 나타났다. 또한 특별활동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3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특별활동 제공'이 19.5%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연령별 특별활동 참여 이유 및 개선 요구 사항

단위: %, 명

구분	참여 이유								개선 요구 사항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9.9	28.0	7.5	14.6	10.0	4.7	5.0	0.2	32.5	16.6	14.9	19.5	5.7	1.2	0.2	9.3	100.0(955)
아동연령																	
2세 이하	28.1	23.8	7.5	19.8	8.3	5.1	7.5	0.0	27.8	14.7	14.4	21.3	7.6	1.2	0.0	12.9	100.0(327)
3세	34.0	27.7	6.8	15.2	9.4	4.0	2.8	0.0	32.5	18.1	19.5	17.0	4.5	1.3	0.2	6.8	100.0(233)
4세	30.1	24.8	10.5	10.1	11.9	5.3	7.0	0.4	31.4	17.6	16.5	17.4	4.4	1.4	0.5	10.8	100.0(221)
5세	27.6	40.3	4.7	9.6	11.8	4.3	1.0	0.6	42.9	17.0	7.6	21.9	5.5	0.7	0.4	3.9	100.0(173)

-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① 교육기회참여 ② 아이가 좋아해서 ③ 수업료가 저렴해서 ④유아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⑤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⑥어린이집에서 권해서 ⑦ 특별활동시간에 아이에게 다른 보육활동이 제공되지 않아서 ⑧ 기타.
 3)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① 교육내용의 내실화 ② 합리적인 수업료(가격규제 등) 산출 ③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향상 ④ 다양한 특별활동 제공 ⑤ 특별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마련 ⑥ 특별활동폐지가 바람직함 ⑦ 기타 ⑧ 개선점 없음' 등임.
 4)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다음으로 특별활동 참여로 인하여 부모의 지출이 감소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비율이 59.5%로 과반 수 이상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 참여 시 어린이집으로부터 동의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87.9%가 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5〉 특별활동운영 관련 부모지출감소 및 동의서 여부

단위: %, 명

구분	부모지출감소		동의서 수령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체	59.5	40.5	87.9	12.1	100.0(955)
아동연령					
2세 이하	55.8	44.2	85.5	14.5	100.0(327)
3세	64.8	35.2	91.3	8.7	100.0(233)
4세	61.6	38.4	88.0	12.0	100.0(221)
5세	57.0	43.0	87.8	12.2	100.0(173)
$X^2(df)$	5.48(3)		4.39(3)		
설립유형					
국공립	54.2	45.8	79.7	20.3	100.0(190)
법인(직장)등	66.8	33.2	83.4	16.6	100.0(97)

(표 IV-2-15 계속)

구분	부모지출감소		동의서 수령 여부		계(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민간(가정)등	60.0	40.0	90.9	9.1	100.0(668)
$X^2(df)$	4.55(2)		19.67(2)***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특별활동비 가격 규제에 대한 찬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91.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할 경우의 가격 규제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가 5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6〉 특별활동운영 가격 규제

단위: %, 명

구분	규제		가격규제 방법					계(수)
	찬성	반대	현재와 동일하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자체별로 기준제시	어린이집 자율결정	기타	
전체	91.3	8.7	52.7	19.1	19.0	9.0	0.2	100.0(955)
아동연령								
2세	92.7	7.3	55.3	15.4	19.7	9.2	0.4	100.0(249)
3세	89.1	10.9	52.4	18.9	19.6	9.0	0.0	100.0(233)
4세	91.6	8.4	48.4	20.2	20.5	10.6	0.4	100.0(221)
5세	91.5	8.5	56.2	19.4	18.0	6.4	0.0	100.0(173)
$X^2(df)$	2.15(5)		n.a ¹⁾					
설립유형								
국공립	88.4	11.6	55.5	22.3	15.9	6.3	0.0	100.0(190)
법인(직장)등	88.8	11.2	55.8	17.0	18.6	6.9	1.8	100.0(97)
민간(가정)등	92.5	7.5	51.4	18.5	20.0	10.1	0.0	100.0(668)
$X^2(df)$	4.07(2)		n.a ¹⁾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2세부터 자료를 제시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4) 어린이집 (총) 비용

어린이집 이용 시 소요되는 전체 비용은 응답자가 2015년 한 달 동안 사용한 금액을 기입한 것을 토대로 산출하였다. 이는 응답자마다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응답자의 전체 금액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

하다.

어린이집 이용자 중 약 11.4%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실제 비용 지불 아동은 1,345명이다. 비용지불기준으로 어린이집 월평균비용은 86,850원이며, 미지불아동을 포함한 월평균 비용은 81,130원이다.

〈표 IV-2-17〉 어린이집 (총)비용 분포와 평균 비용

단위: 천원, 명

구분	소요비용(지불기준)			소요비용(미지불포함)		
	평균	중앙	(수)	평균	중앙	(수)
전체	86.85	75.00	(1,345)	81.13	70.00	(1,518)
아동연령						
0세	16.30	7.08	(31)	13.40	4.17	54
1세	49.52	38.33	(171)	44.73	31.67	236
2세	80.99	70.00	(356)	76.20	67.50	390
3세	103.78	90.00	(313)	98.09	86.33	(337)
4세	105.94	95.00	(264)	97.53	90.83	(289)
5세	100.06	95.00	(208)	98.59	94.58	(212)
F		22.95***			46.72***	
설립유형						
국공립	75.91	70.00	(224)	69.56	65.00	(255)
법정	66.61	57.50	(132)	61.57	51.67	(182)
민간	94.81	85.00	(989)	89.24	80.00	(1,082)
F		11.63***			24.29***	

주: 1) 총액의 (수)는 비용 항목 중 하나라도 지출한 유아 수의 합임.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이며, 입학금은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비용 지출 가구의 소득 대비 어린이집 총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단위의 경우 평균 2.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구지출 대비 어린이집 총 이용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3.0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국 단위에서는 설립유형 중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이, 아동연령 중 4세가, 가구소득 구간 중 199만원 이하 구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에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 대비 2.45%, 지출 대비 2.83%이다.

〈표 IV-2-18〉 어린이집 총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비용 지출과 비용미지출

단위: %, 명

구분	비용 지출						(수)	비용미지출포함						(수)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전체	2.62	2.09	14.56	3.03	2.40	17.33	(1345)	2.45	2.12	14.56	2.83	2.43	17.33	(1518)
설립유형														
국공립	2.29	1.62	10.83	2.67	2.08	17.33	(224)	2.10	1.67	10.83	2.44	2.11	17.33	(255)
법인(직장)등	2.03	1.61	11.44	2.30	1.91	14.06	(132)	1.87	1.62	11.44	2.13	1.91	14.06	(182)
민립(가정)등	2.86	2.28	14.56	3.32	2.55	17.07	(989)	2.69	2.31	14.56	3.12	2.60	17.07	(1082)
F	8.73***			9.58***				19.48***			21.08***			
0세	0.48	0.54	3.17	0.56	0.60	3.17	(31)	0.39	0.51	3.17	0.46	0.58	3.17	(54)
1세	1.43	1.41	7.91	1.75	1.88	15.74	(171)	1.29	1.39	7.91	1.58	1.84	15.74	(236)
2세	2.32	1.77	11.02	2.71	2.09	11.02	(356)	2.18	1.80	11.02	2.55	2.12	11.02	(390)
3세	3.26	2.33	14.40	3.71	2.55	17.07	(313)	3.09	2.38	14.4	3.51	2.60	17.07	(337)
4세	3.29	2.23	14.56	3.75	2.62	17.33	(264)	3.02	2.33	14.56	3.45	2.72	17.33	(289)
5세	3.02	1.85	10.80	3.50	2.09	11.29	(208)	2.98	1.87	10.80	3.45	2.11	11.29	(212)
F	33.77***			29.86***				49.35***			45.28***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13	3.12	14.40	5.20	3.08	14.40	(26)	4.78	3.22	14.40	4.85	3.19	14.40	(28)
200-299만원	3.35	2.50	14.56	3.58	2.69	14.56	(383)	3.15	2.54	14.56	3.37	2.73	14.56	(424)
300-399만원	2.56	1.81	14.00	2.98	2.25	17.33	(494)	2.44	1.84	14.00	2.83	2.8	17.33	(553)
400-499만원	2.10	1.66	11.44	2.58	2.04	14.06	(239)	1.90	1.69	11.44	2.35	2.08	14.06	(275)
500만원 이상	1.73	1.37	6.20	2.42	2.10	10.83	(202)	1.57	1.40	6.20	2.19	2.12	10.83	(238)
F	36.27***			14.87***				35.74***			16.05***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2)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95.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연령과 설립유형에서 전반적으로 90.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특별활동이 다양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립유형, 아동연령 및 가구소득 구간별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IV-2-19〉 어린이집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만족 합 계(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95.2 100.0(1,518)	14.7	11.8	6.8	8.6	5.1	16.3	4.9	3.4	5.0	12.1	11.3	100.0(73)
아동연령													
0세	99.3 100.0(54)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0)
1세	95.8 100.0(236)	16.2	7.4	0.0	0.0	8.8	5.3	0.0	7.6	0.0	7.4	47.4	100.0(10)
2세	94.6 100.0(390)	17.5	13.6	0.0	0.0	13.3	44.1	0.0	0.0	4.7	3.3	3.5	100.0(21)
3세	95.9 100.0(337)	20.0	3.9	9.5	3.6	0.0	0.0	19.9	4.2	3.2	35.9	0.0	100.0(14)
4세	93.3 100.0(289)	7.7	22.8	14.8	18.7	0.0	0.0	0.0	5.7	11.2	4.6	14.3	100.0(19)
5세	96.4 100.0(212)	13.8	0.0	9.7	27.4	0.0	21.0	9.7	0.0	0.0	18.4	0.0	100.0(8)
설립유형													
국공립	96.3 100.0(255)	0.0	20.7	0.0	0.0	7.2	18.9	0.0	11.8	0.0	0.0	41.5	100.0(9)
법인(직장)등	91.9 100.0(182)	10.2	15.6	18.8	7.6	0.0	14.9	10.7	9.1	0.0	8.0	5.1	100.0(15)
민간(가정)등	95.5 100.0(1,082)	18.9	9.0	4.5	10.6	6.2	16.3	4.1	0.0	7.5	15.7	7.3	100.0(48)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① 보육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아서 ② 아이가 어린이집을 싫어해서 ③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④ 지나치게 특별활동을 권해서 ⑤ 선생님이 싫어서(자질, 인성 등) ⑥ 특별활동이 다양하지 못해서 ⑦ 급간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⑧ 통학차량 이용이 불편해서 ⑨ 자주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 ⑩ 현장학습비, 추가경비가 부담이 되어서 ⑪ 기타.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4)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3.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³⁹⁾

가. 이용현황

1) 반일제 이상학원

반일제이상학원 이용자는 전체 조사 대상 3,075명의 1%에 해당되는 소수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2세이하의 영아가 영어학원 유치부를 제외하면 3~5세 유아에 비해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이 많았다. 이는 본 조사에서 전체 표집의 약 72%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어서 반일제 이상 이용율이 낮게 나타

39) 전체 표집 대상의 약 1%로 매우 소수이어서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은 산출하지 않음.

난 것으로 보인다. 가구소득에서는 300~399만원 소득 구간을 가진 가구는 놀이 학교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400~5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을 가진 가구는 영어학원 유치부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1〉 반일제이상학원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영어학원 유치부	일반 보습학원	미술(예능) 학원유치부	놀이학교	선교원	계
전체	33.6	10.1	15.8	37.7	2.8	100.0(31)
아동연령						
2세 이하(영아)	26.2	12.5	19.5	41.8	0.0	100.0(25)
3세	100.0	0.0	0.0	0.0	0.0	100.0(2)
4세	63.0	0.0	0.0	37.0	0.0	100.0(3)
5세	0.0	0.0	0.0	0.0	100.0	100.0(1)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38.4	9.4	29.3	22.9	0.0	100.0(17)
외벌이	27.9	10.9	0.0	55.0	6.2	100.0(1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0.0	0.0	0.0	0.0	-
200-299	0.0	0.0	0.0	0.0	0.0	-
300~399	28.6	5.4	0.0	58.3	7.7	100.0(11)
400~499	39.5	0.0	27.3	33.2	0.0	100.0(6)
500만원 이상	35.0	18.8	24.0	22.1	0.0	100.0(13)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반일제이상학원 비용을 수업료, 교재교구비, 통학차량비, 급간식비, 행사비, 현장학습비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였고, 지출비용 분포와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표 IV-3-2〉 반일제이상학원 비용 분포와 평균

단위: 천원, 명

구분	~10 만원	11~20 만원	21~30 만원	31~40 만원	41~50 만원	51~60 만원	60만원 이상	(수)	평균	중앙
전체	0.0	18.9	12.8	0.0	2.8	2.7	62.9	(31)	584.45	675.73
설립유형										
영어학원	0.0	0.0	8.7	0.0	0.0	0.0	91.3	(10)	779.87	761.64
미술(예능)학원	0.0	37.8	62.2	0.0	0.0	0.0	0.0	(5)	192.25	200.00

(표 IV-3-2 계속)

구분	~10 만원	11~20 만원	21~30 만원	31~40 만원	41~50 만원	51~60 만원	60만원 이상	(수)	평균	중앙
놀이학교/선교원	0.0	0.0	0.0	0.0	7.5	7.0	85.5	(12)	686.84	770.00
기타	0.0	100.0	0.0	0.0	0.0	0.0	0.0	(3)	138.01	140.17
아동연령										
2세 이하	0.0	19.8	12.1	0.0	3.5	3.3	61.3	(25)	568.61	695.00
3세	0.0	0.0	0.0	0.0	0.0	0.0	100.0	(2)	641.80	646.92
4세	0.0	0.0	28.2	0.0	0.0	0.0	71.8	(3)	788.83	806.52
5세	0.0	100.0	0.0	0.0	0.0	0.0	0.0	(1)	171.00	171.00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2015년 5월 한 달 동안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먼저 이용유무와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전체 영유아 중 32.1%가 기타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에 참여하였다.

〈표 IV-3-3〉 이용유무 및 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이용유무		계(수)	이용 이유										계(수)
	예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기타	
전체	32.1	67.9	100.0(3,075)	19.0	32.1	19.2	5.9	6.0	5.6	1.0	10.0	0.2	0.8	100.0(962)
아동연령														
0세	5.3	94.7	100.0(508)	10.4	42.2	0.0	5.7	2.2	10.8	0.0	28.7	0.0	0.0	100.0(16)
1세	15.3	84.7	100.0(509)	25.6	42.6	1.2	5.4	7.7	3.7	0.0	10.7	0.0	3.0	100.0(71)
2세	28.4	71.6	100.0(510)	18.0	34.7	14.1	8.1	4.0	5.2	0.0	15.8	0.0	0.0	100.0(142)
3세	35.4	64.6	100.0(507)	23.0	33.7	13.2	6.7	3.4	8.5	2.7	8.9	0.0	0.0	100.0(178)
4세	48.8	51.2	100.0(543)	19.4	29.0	24.8	2.9	5.7	7.0	0.6	7.8	0.9	1.9	100.0(264)
5세	58.9	41.1	100.0(498)	15.7	29.5	25.7	7.3	8.7	3.1	1.1	8.5	0.0	0.3	100.0(293)
$\chi^2(df)$	471.31(5)***			na ¹⁾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① 교육기회참여 ② 아이가 좋아해서 ③ 초등대비 선행학습을 위해서 ④ 자녀가 집에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⑤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⑥ 주변에서 권해서 ⑦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⑧ 다양한 영역경험으로 아이의 재능 발견을 위해 ⑨ 아이의 추가 개별 돌봄이 필요해서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이며, 이용이유에서 무응답은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연령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져 0세가 5.3%인데 반해 5세는 58.9%로 나타났다. 이용 이유로는 아이가 좋아해서가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초등대비 선행학습을 위해서 19.2%, 교육기회 참여 19%, 다양한 영역경험으로 아이의 재능 발견을 위해 10%,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구체적인 유형과 연령에 따른 기타 학원 및 교육·보육서비스 평균 이용 개수와 평균 비용을 보면, 시간제학원은 평균 1.11개를 이용하고 비용은 109,580원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는 평균 1.71개를 이용하고 비용은 67,460원이었으며, 문화센터는 평균 1.20개이고 비용은 58,590원이다. 개인 및 그룹교습을 포함한 기타 항목에서는 평균 1.10개를 이용하고 비용은 94,03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4〉 연령에 따른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

단위: 개, 천원, 명

구분	시간제학원			학습지			문화센터			개인 및 그룹교습 등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개수	비용		개수	비용		개수	비용		개수	비용	
전체	1.11	109.58	(160)	1.71	67.46	(614)	1.20	58.59	(146)	1.10	94.03	(308)
아동연령												
0세	-	-	-	1.13	39.97	(3)	1.03	66.15	(12)	1.00	41.30	(1)
1세	1.00	98.70	(3)	1.45	58.77	(23)	1.10	47.73	(25)	1.19	79.58	(25)
2세	1.09	76.49	(8)	1.53	64.31	(77)	1.35	56.68	(47)	1.06	75.46	(43)
3세	1.21	96.46	(20)	1.63	65.13	(112)	1.15	49.02	(17)	1.04	88.70	(50)
4세	1.05	109.79	(45)	1.77	68.42	(187)	1.14	74.04	(25)	1.07	92.58	(89)
5세	1.12	116.07	(84)	1.79	70.32	(211)	1.21	60.60	(20)	1.17	110.35	(99)

주: 1) 2015년 5월 한 달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1개 프로그램(과목형태)을 1회로 작성함(예를 들어 5세 아이가 시간제 학원으로 피아노, 무용 활동에 참여한다면, 2회로 산정하여 산출함).

2) 조사 대상 수가 매우 적은 표본의 경우는 해석 시 유의가 요구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나. 비용 현황

1) 비용 분포 및 평균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79개를 이용하고, 비용은 115,790원이 지출되었다. 영유아당 이용 수도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여 2세 이

하가 1.49개인데 반해 5세는 2.09개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여러 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용은 3세가 87,220원으로 가장 적었다. 맞벌이가 외벌이에 비해 평균비용이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평균 이용 개수와 비용 분포 및 평균

단위: %, 개, 천원, 명

	평균 개수	비용 분포								지출		
		5만원 미만	5~10 만원	11~15 만원	16~20 만원	21~30 만원	31~40 만원	41~50 만원	51만원 이상	(수)	평균	중앙
전체	1.79	21.2	38.7	18.8	11.7	4.8	1.8	0.7	2.3	100.0(987)	115.79	80.00
아동연령												
2세 이하	1.49	34.8	34.5	14.5	5.3	2.2	1.3	1.0	6.4	100.0(250)	125.71	60.00
3세	1.57	24.6	51.4	14.0	6.0	2.2	0.9	0.0	1.0	100.0(179)	87.22	80.00
4세	1.91	17.2	40.8	20.9	12.4	5.8	1.2	0.3	1.5	100.0(265)	114.52	95.00
5세	2.09	11.2	32.5	23.6	20.1	7.7	3.5	1.1	0.3	100.0(293)	125.97	107.00
부모취업												
맞벌이	1.85	25.7	36.4	19.3	11.4	3.9	0.9	0.4	2.0	100.0(434)	124.31	80.00
외벌이	1.75	15.4	41.5	18.3	12.1	5.9	3.1	1.0	2.7	100.0(553)	109.09	80.0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57	0.0	52.0	23.0	25.0	0.0	0.0	0.0	0.0	100.0(7)	91.10	60.00
200-299	1.80	28.9	34.9	20.2	11.0	4.3	0.7	0.0	0.0	100.0(217)	92.33	80.00
300~399	1.76	21.2	41.7	20.3	9.2	2.8	1.4	0.5	3.0	100.0(352)	113.50	78.00
400~499	1.88	17.9	33.8	17.2	16.3	9.3	3.3	0.4	2.0	100.0(228)	129.38	90.00
500만원 이상	1.76	17.2	42.9	16.2	11.2	3.8	2.5	2.2	4.1	100.0(187)	131.84	80.00

주: 1) 2015년 5월 한 달 기준으로 지출한 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반일제 이상 학원 및 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는 소득대비 평균 3.15%, 지출 대비 3.85%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령별로는 0세가 가장 높고, 3세가 가장 낮았다. 부모취업유무별로는 전체의 소득대비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외벌이의 비율이 맞벌이보다 높았다.

〈표 IV-3-6〉 반일제이상 학원 및 교육보육서비스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체						(수)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전체	3.15	3.18	26.51	3.85	4.47	51.56	(987)

(표 IV-3-6 계속)

구분	전체						(수)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아동연령							
0세	5.24	5.61	20.69	6.78	6.54	20.69	(27)
1세	3.20	5.32	26.51	4.78	9.75	51.56	(78)
2세	3.05	4.08	24.14	3.92	5.77	33.80	(145)
3세	2.38	1.77	15.00	2.94	2.17	16.75	(179)
4세	3.17	2.82	23.75	3.62	3.34	31.67	(265)
5세	3.46	2.40	15.88	4.05	2.79	19.17	(293)
<i>F</i>		5.12***			4.82***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2.79	2.79	24.58	3.55	3.57	32.77	(434)
외벌이	3.44	3.43	26.51	4.09	5.06	51.56	(553)
<i>F</i>		10.45**			3.54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1$, *** $p < .001$

2) 부담정도

부담 정도와 비용 대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비용 부담 정도는 2.2로 인식하였고, 만족도는 3.73으로 보통 이상이었다. 연령별로는 비용 부담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 0세가 2.32로 가장 높았고, 1세가 2.04로 가장 낮았다. 부모취업유무에 따라서는 비용대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만족도가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비용 대비 만족도에서 199만원 이하가 3.57로 가장 낮았고, 400만원대가 3.8로 가장 높았다.

〈표 IV-3-7〉 부담 및 만족도

구분	단위: 점, 명		
	비용 부담	비용대비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2.20(0.63)	3.73(0.57)	(987)
아동연령			
0세	2.32(0.67)	3.55(0.72)	(27)
1세	2.04(0.60)	3.63(0.49)	(78)
2세	2.11(0.63)	3.76(0.51)	(145)

(표 I-3-1 계속)

구분	비용 부담	비용대비 만족도	(수)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3세	2.10(0.62)	3.77(0.52)	(179)
4세	2.27(0.60)	3.76(0.56)	(265)
5세	2.28(0.65)	3.70(0.65)	(293)
F	4.38***	1.48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2.22(0.64)	3.77(0.57)	(434)
외벌이	2.19(0.62)	3.69(0.58)	(553)
F	0.45	4.36*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31(0.50)	3.57(0.79)	(7)
200-299만원	2.23(0.56)	3.74(0.48)	(214)
300~399만원	2.22(0.64)	3.65(0.63)	(352)
400~499만원	2.19(0.66)	3.80(0.55)	(219)
500만원 이상	2.13(0.66)	3.78(0.57)	(195)
F	0.83	2.87*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2)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개별돌봄

개별돌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이외에 주 1회 이상(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현황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 3,075명의 영유아 중 4.7%인 146명이 개별돌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 1일 이용시간은 평균 5시간으로 5시간 미만인 74.5%로 가장 많고,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가 83.1%로 대다수의 가정이 개별돌봄을 조부모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돌봄비용을 살펴보면 평균 204,300원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비용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외벌이에 비해 맞벌이의 비용이 높았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이 다소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용지원종류에서는 양육수당을 이용 시, 지출비용이 높았는데, 이는 본 조사에서 양육수당 이용 자녀의 연령이 2세 이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IV-4-1〉 개별돌봄 이용 현황과 비용

단위: %, 시간, 명

구분	1일 이용시간					돌봄 제공자					계(수)	지출시 평균
	5 시간 미만	5~6 시간	6~7 시간	7시간 초과	평균	조부 모	친척	지인	전문 돌보 미	가사 도우 미		
전체	74.5	3.7	1.1	20.7	5.00	83.1	8.7	3.8	3.3	1.1	100.0(146)	204.30
아동연령												
0세	40.5	0.0	12.9	46.7	7.53	68.2	9.8	5.7	16.3	0.0	100.0(13)	393.95
1세	60.9	0.0	0.0	39.1	6.51	89.4	6.6	4.0	0.0	0.0	100.0(25)	306.90
2세	73.8	2.5	0.0	23.7	5.03	89.5	8.1	1.2	1.2	0.0	100.0(35)	164.16
3세	85.5	12.2	0.0	2.2	3.90	72.3	5.9	7.0	7.5	7.2	100.0(23)	172.81
4세	91.2	3.2	0.0	5.6	3.77	88.7	11.3	0.0	0.0	0.0	100.0(28)	110.79
5세	77.6	3.8	0.0	18.6	4.51	78.1	11.0	8.2	2.7	0.0	100.0(23)	196.36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74.3	3.8	0.9	21.0	5.01	83.1	9.0	3.6	3.1	1.2	100.0(141)	205.78
외벌이	80.6	0.0	8.2	11.1	4.77	80.6	0.0	11.1	8.2	0.0	100.0(5)	159.98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0.0	0.0	0.0	-	0.0	0.0	0.0	0.0	0.0	100.0(0)	0.00
200~299만원	70.1	0.0	6.5	23.4	5.28	56.8	19.9	16.8	6.5	0.0	100.0(6)	102.60
300~399만원	86.9	0.0	0.0	13.1	4.12	87.3	5.9	3.6	3.2	0.0	100.0(35)	121.70
400~499만원	74.3	1.7	2.5	21.5	5.23	84.1	9.2	0.9	5.8	0.0	100.0(49)	206.72
500만원 이상	67.4	8.2	0.0	24.4	5.32	82.3	8.8	5.2	0.7	2.9	100.0(55)	265.46
이용지원종류												
유아학비	89.7	4.3	0.0	6.0	3.84	83.6	6.7	3.8	1.6	4.3	100.0(38)	135.82
보육료	87.8	4.9	0.0	7.3	4.11	83.4	10.2	3.6	2.8	0.0	100.0(76)	166.41
양육수당	23.9	0.0	5.2	70.9	8.56	81.5	7.5	4.5	6.5	0.0	100.0(31)	379.30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개별돌봄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은 소득대비 평균 4.29%, 지출 대비 5.24%이다. 연령별로는 전체는 소득 대비, 지출 대비 모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0세가 가장 높고, 4세가 가장 낮았다. 이용지원종류별로는 전체는 소득대비, 지출 대비 모두 유아학비지원가정이 가장 낮고, 양육수당지원가정이 가장 높았다.

〈표 IV-4-2〉 개별돌봄 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전체	4.29	4.67	26.67	5.24	5.75	33.33	(146)
아동연령							
0세	8.76	8.16	26.67	10.26	8.85	26.67	(13)
1세	6.48	5.22	17.54	8.34	7.35	33.33	(25)
2세	3.68	3.41	10.26	4.41	3.99	13.33	(35)
3세	3.50	3.87	15.00	4.32	4.88	20.00	(23)
4세	2.13	2.86	9.62	2.72	3.76	13.16	(28)
5세	3.85	3.43	10.96	4.42	4.00	13.04	(23)
<i>F</i>		5.71***			5.58***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4.25	4.69	26.67	5.23	5.80	33.33	(141)
외벌이	5.60	4.26	11.43	5.69	4.20	11.43	(5)
<i>F</i>		0.38			0.03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	-	-	-	-	-	(0)
200-299만원	4.05	4.00	10.00	4.05	4.00	10.00	(6)
300-399만원	3.39	3.84	11.43	3.77	4.24	11.43	(35)
400-499만원	4.67	5.73	26.67	5.41	6.37	26.67	(49)
500만원 이상	4.55	4.16	20.00	6.16	6.06	33.33	(55)
<i>F</i>		0.60			1.34		
이용지원종류							
유아학비	2.70	3.42	15.00	3.29	4.25	20.00	(38)
보육료	3.42	3.14	10.96	4.34	4.58	33.33	(76)
양육수당	8.33	6.57	26.67	9.80	7.41	26.67	(31)
<i>F</i>		19.12***			15.63***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2)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V.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본 장에서는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하였다. 전체 2,499가구의 영유아 3,075명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모집단에 대한 총 교육·보육비용과 사교육비를 추정하였다.

1. 영유아(연령별·가구별) 총 교육·보육비용과 지출 결정 요인

가.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1) 영유아 1인당 비용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조사 결과, 교육·보육비용을 지출하는 영유아의 31.2%는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이 76,700원 이하이고, 34.5%는 76,700원을 초과하고 175,000원 이하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많을수록 총 교육·보육비용으로 175,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이 같은 현상은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불아동기준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는 <표 V-1-1>과 같다. 1인당 평균 비용은 월 162,800원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1>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비용지출기준)

단위: %, 명					
구분	7.67만원이하	17.50만원이하	17.50만원초과	중앙 평균	(수)
전체	31.2	34.5	34.3	12.00 16.28	(1,983,652)
아동연령					
0세	59.4	10.6	30.0	3.50 19.25	(78,805)
1세	64.4	21.9	13.7	5.00 10.17	(232,473)
2세	43.0	39.9	17.1	9.10 12.36	(359,425)
3세	27.6	42.5	30.0	13.00 15.11	(430,402)
4세	18.7	36.7	44.6	15.31 18.29	(436,093)
5세	15.0	31.2	53.7	18.33 21.27	(446,455)

(표 V-1-1 계속)

구분	7.67만원이하	17.50만원이하	17.50만원초과	중앙 평균	(수)
$X^2(df)$	341552.60(10)***			27356.3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7.2	33.8	9.0	7.00	8.97 (28,482)
200~299만원	38.9	34.8	26.3	10.00	12.47 (484,215)
300~399만원	29.6	39.3	31.1	11.83	15.16 (744,402)
400~499만원	29.4	29.1	41.6	14.98	18.63 (415,316)
500만원 이상	23.1	30.1	46.8	16.84	22.45 (311,236)
$X^2(df)$	70374.35(8)***			28131.80***	

주: 1) 총 교육·보육비용은 본 조사에서 1인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함.
 2)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 $p < .001$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영유아를 포함한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조사 결과 <표 V-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영유아는 25.8%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120,900원, 중앙값은 80,000원이다. 연령과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비용과 중앙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비용미지불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0원	8.50만원이하	18.60만원이하	18.60만원초과	중앙 평균	(수)
전체	25.8	23.2	25.6	25.5	8.00	12.09 (2,671,592)
아동연령						
0세	81.4	11.1	2.0	5.6	0.00	3.58 (423,417)
1세	47.3	33.9	11.5	7.2	0.71	5.36 (441,450)
2세	19.1	34.8	32.3	13.8	7.00	9.99 (444,338)
3세	3.3	26.6	41.0	29.0	12.00	14.60 (445,249)
4세	5.0	17.8	34.9	42.4	14.75	17.39 (458,876)
5세	2.6	14.7	30.4	52.3	18.00	20.72 (458,262)
$X^2(df)$	1479298.15(16)***			18054.4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3.2	21.1	12.4	3.3	0.00	3.30 (77,378)
200~299만원	35.7	25.0	22.4	16.9	4.50	8.02 (752,935)
300~399만원	25.1	22.2	29.4	23.3	8.50	11.36 (993,443)
400~499만원	16.0	24.7	24.4	34.9	11.00	15.64 (494,610)
500만원 이상	11.9	20.3	26.5	41.3	14.30	19.78 (353,225)

(표 V-1-2 계속)

구분	0원	8.50만원이하	18.60만원이하	18.60만원초과	중앙 평균	(수)
$\chi^2(df)$	223632.73(12)***				119279.09***	

- 주: 1) 총 교육·보육비용은 본 조사에서 1인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함.
 2)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 $p < .001$

가구소득과 지출에 대비하여 지출하는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비율은 <표 V-1-3>과 같다. 교육·보육 활동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평균 4.52%, 가구 지출 대비 비율은 5.41%로 조사되었다. 아동연령, 부모 취업유무에 따라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의 소득/지출 대비 비율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는 0세 4.08%, 4.87%를 제외하고 1세부터는 연령이 많을수록 소득/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3>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체(비용지출)						(수)	전체(비용미지출 포함)						(수)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전체	4.52	3.80	26.67	5.41	4.93	52.86	(1,983,652)	3.35	3.82	26.67	4.02	4.86	52.86	(2,671,592)
아동연령														
0세	4.08	5.73	26.67	4.87	6.47	26.67	(78,805)	0.76	2.93	26.67	0.91	3.37	26.67	(423,417)
1세	2.66	3.87	26.51	3.57	6.37	51.56	(232,473)	1.40	3.10	26.51	1.88	4.95	51.56	(441,450)
2세	3.43	3.18	24.14	4.14	4.21	33.80	(359,425)	2.77	3.16	24.14	3.35	4.12	33.80	(444,338)
3세	4.36	3.13	18.76	5.25	3.96	27.25	(430,402)	4.21	3.18	18.76	5.08	4.00	27.25	(445,249)
4세	5.24	3.67	23.75	6.06	4.30	31.67	(436,093)	4.98	3.75	23.75	5.76	4.39	31.67	(458,876)
5세	5.89	3.83	21.54	6.99	5.09	52.86	(446,455)	5.74	3.89	21.54	6.81	5.14	52.86	(458,262)
F	35004.17***			23554.94***				155765.73***			122564.30***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4.09	3.68	26.67	5.14	4.62	34.17	(823,405)	3.64	3.70	26.67	4.57	4.64	34.17	(925,429)
외벌이	4.82	3.86	26.51	5.60	5.13	52.86	(1,160,247)	3.20	3.88	26.51	3.72	4.94	52.86	(1,746,163)
F	18057.28***			4187.25***				7796.08***			18732.67***			

- 주: 1)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 $p < .001$

2) 지출 결정 요인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총 교육·보육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규모, 아동연령, 부모취업유무,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아동연령은 유아와 영아로 구분하여 영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가구소득은 본 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소득구간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영아에 비해 유아의 총 교육·보육 비용 지출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교육·보육 비용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구간을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200만원 미만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소득구간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 4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총 교육·보육 비용 지출이 200만원 미만 가구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구분	B	표준오차	β	t
상수	-1.028	1.476		-0.696
지역규모(기준: 소규모)				
대규모	2.751	0.830	0.092	3.317***
중규모	0.721	0.884	0.022	0.816
아동연령(기준: 영아)				
유아	11.392	0.456	0.396	24.961***
부모취업유무(기준: 외벌이)				
맞벌이	1.808	0.568	0.06	3.186***
가구소득(기준: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29	1.405	0.054	1.23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499	1.404	0.118	2.492*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6.084	1.497	0.164	4.065***
500만원 이상	11.273	1.563	0.257	7.213***
수정된 R ²	0.246			
추정값의표준오차	12.475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2) 양육수당지원을 기준으로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유아학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이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추가 모형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 $p < .05$

나. 영유아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1)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당 비용

영유아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는 다음 <표 V-1-5>와 같다. 교육·보육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의 59.4%는 월평균 30,000원~201,000원 사이로 총 교육·보육비용을 지출하고 31.2%는 201,000원을 초과하여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 부모취업유무, 가구소득, 가구원수, 자녀수에 따라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규모 지역일수록 201,000원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5>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 (비용지출기준)

단위: %, 명

구분	1.75만원이하	3만원이하	20.1만원이하	201만원 초과	중앙	평균	(수)
전체	5.6	3.8	59.4	31.2	14.00	18.13	(2,012)
지역규모							
대규모	4.9	2.9	60.2	32.0	14.42	18.85	(1,317)
중규모	5.5	5.6	57.6	31.4	13.52	17.37	(548)
소규모	12.2	5.0	59.8	23.0	10.57	14.52	(148)
$X^2(df)$		24.66(6) ^{***}			5.11 ^{**}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6.1	3.8	55.3	34.7	14.76	20.41	(822)
외벌이	5.3	3.8	62.3	28.7	13.48	16.56	(1,191)
$X^2(df)$		10.25(3) [*]			25.46 ^{***}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1	2.4	78.8	13.7	7.63	11.06	(29)
200~299만원	8.8	4.7	63.2	23.2	11.56	13.79	(493)
300~399만원	5.2	3.8	64.1	27.0	13.00	16.48	(780)
400~499만원	3.6	3.5	53.0	40.0	16.68	21.14	(419)
500만원 이상	4.4	2.8	47.8	45.0	18.71	26.27	(292)
$X^2(df)$		76.42(12) ^{***}			33.34 ^{***}		
가구원수							
3인 이하	8.3	5.5	59.6	26.6	11.86	15.81	(844)

(표 V-1-5 계속)

구분	1.75만원이하	3만원이하	20.1만원이하	20.1만원초과	중앙	평균	(수)
4인	3.8	2.1	59.5	34.6	15.50	20.02	(980)
5인이상	3.1	4.9	58.1	33.8	13.60	18.66	(188)
$X^2(df)$	41.93(6)***						
자녀수							
1인	8.2	5.2	59.3	27.4	12.00	16.04	(899)
2인	3.7	2.1	60.0	34.2	15.40	19.95	(989)
3인 이상	2.5	6.9	56.0	34.6	12.65	18.74	(125)
$X^2(df)$	41.62(6)***				12.76***		

주: 1) 총 교육·보육비용은 본 조사에서 1인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함.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음영색은 각 항목에서 해석 의미를 부여한 것의 표시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영유아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조사 결과는 다음 <표 V-1-6>과 같다.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181,300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 부모취업유무,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대규모 지역 188,500원, 중규모 173,700원, 소규모 145,2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취업유무에 따라서는 맞벌이 가구의 지출 비용이 204,100원으로 외벌이 가구 165,600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도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 262,700원으로 가장 높고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 또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1-6>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미지출 영유아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1.75만원 이하	3만원 이하	20.1만원 이하	20.1만원초과	중앙	평균	(수)
전체	24.0	3.0	47.9	25.1	10.35	14.60	(2,499)
지역규모							
대규모	22.4	2.4	49.1	26.1	11.00	15.38	(1,614)
중규모	24.5	4.5	46.0	25.1	9.50	13.87	(686)
소규모	34.9	3.7	44.3	17.0	6.00	10.77	(199)
F	26.95(6)***				7.61**		
부모취업유무							

(표 V-1-6 계속)

구분	1.75만원 이하	3만원 이하	20.1만원 이하	20.1만원초과	중앙	평균	(수)
맞벌이	13.0	3.5	51.3	32.2	13.44	18.92	(886)
외벌이	30.0	2.8	46.0	21.2	8.92	12.23	(1,612)
<i>t</i>	100.88(3)***				93.9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0.6	1.0	32.8	5.7	0.00	4.60	(71)
200~299만원	35.0	3.4	45.1	16.5	6.98	9.83	(691)
300~399만원	22.6	3.1	52.3	22.0	10.46	13.46	(955)
400~499만원	12.3	3.2	48.2	36.4	15.00	19.23	(460)
500만원 이상	13.2	2.6	43.4	40.8	17.28	23.84	(322)
<i>F</i>	216.50(12)***				59.35***		
가구원수							
3인 이하	35.1	3.9	42.2	18.9	11.10	17.09	(1,192)
4인	12.9	1.9	53.9	31.3	17.83	24.28	(1,083)
5인 이상	18.5	4.1	48.9	28.5	19.00	24.01	(223)
<i>F</i>	179.02(6)***				6.08**		
자녀수							
1인	34.8	3.7	42.1	19.5	10.83	16.85	(1,266)
2인	12.2	2.0	54.7	31.1	18.20	24.73	(1,084)
3인 이상	18.0	5.8	47.2	29.1	18.75	25.07	(149)
<i>F</i>	189.09(6)***				7.49**		

주: 1) 총 교육·보육비용은 본 조사에서 1인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함.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영유아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율은 다음 <표 V-1-7>과 같다. 교육·보육비용 지출 가구의 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은 월평균 5.06%, 6.0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모취업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대비 비율은 4.61%로 외벌이 가구 5.38%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대비 교육·보육비용 지출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지출 대비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대비 지출하는 영유아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소득 및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율은 높아 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전체 소득의 5.56%, 지출의 6.7%를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7> 가구 총 교육·보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체(비용지출)						(수)	전체(미지출 영유아 포함)						(수)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 값	
전체	5.06	4.34	31.86	6.05	5.58	52.86	(2,012)	4.08	4.38	31.86	4.87	5.55	52.86	(2,499)
지역규모														
대규모	5.11	4.21	30.50	6.21	5.60	52.86	(1,317)	4.17	4.28	30.50	5.07	5.60	52.86	(1,614)
중규모	5.12	4.66	31.86	6.01	5.71	51.56	(548)	4.09	4.64	31.86	4.80	5.64	51.56	(686)
소규모	4.45	4.30	21.54	4.74	4.65	25.37	(148)	3.30	4.18	21.54	3.52	4.51	25.37	(199)
F		1.62			4.61*				3.54*			7.01**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4.61	4.28	31.86	5.78	5.58	52.22	(822)	4.27	4.29	31.86	5.36	5.58	52.22	(886)
외벌이	5.38	4.36	30.50	6.24	5.57	52.86	(1,191)	3.97	4.43	30.50	4.61	5.52	52.86	(1,612)
F		15.43***			3.29				2.65			10.44**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12	5.90	25.19	7.34	5.93	25.19	(29)	2.96	5.16	25.19	3.05	5.25	25.19	(71)
200-299만원	5.57	4.39	26.11	6.07	4.82	28.13	(493)	3.97	4.48	26.11	4.32	4.91	28.13	(691)
300-399만원	4.96	4.20	31.86	5.92	5.79	52.86	(780)	4.05	4.25	31.86	4.83	5.71	52.86	(955)
400-499만원	4.95	4.53	30.50	6.04	5.39	34.86	(419)	4.51	4.55	30.50	5.49	5.43	34.86	(460)
500만원 이상	4.45	4.05	22.00	6.25	6.39	52.22	(292)	4.03	4.07	22.00	5.67	6.35	52.22	(322)
F		5.01**			0.59				2.38*			6.77***		
가구원수														
3인 이하	4.50	3.89	26.67	5.50	5.22	52.86	(844)	3.18	3.86	26.67	3.90	5.05	52.86	(1,192)
4인	5.49	4.59	31.86	6.45	5.68	51.56	(980)	4.96	4.65	31.86	5.84	5.72	51.56	(1,083)
5인 이상	5.42	4.63	29.89	6.41	6.40	52.22	(188)	4.56	4.68	29.89	5.39	6.32	52.22	(223)
F		12.59***			7.00**				50.09***			36.67***		
자녀수														
1인	4.50	3.83	26.67	5.49	5.13	52.86	(899)	3.19	3.82	26.67	3.90	4.99	52.86	(1,266)
2인	5.52	4.61	31.86	6.48	5.69	51.56	(989)	5.03	4.67	31.86	5.90	5.74	51.56	(1,084)
3인 이상	5.56	5.08	29.89	6.70	7.27	52.22	(125)	4.68	5.09	29.89	5.63	7.10	52.22	(149)
F		14.06**			8.25***				55.05***			40.72***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가구의 결정지출요인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V-1-8>과 같다. 가구단위로 지출하는 총 교육·보육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지역규모, 부모취업유무, 가구원수와 자녀수, 소득구간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가구원수를 제외한 변수들이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총 교육·보육 비용 지출이 많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에서 지출하는 총 교육·보육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가구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구분	B	표준오차	β	t
상수	-5.225	2.998		-1.743
지역규모(기준: 소규모)				
대규모	3.212	1.183	0.092	2.715**
중규모	1.140	1.255	0.030	0.908
부모취업유무(기준: 외벌이)				
맞벌이	2.207	0.789	0.063	2.797**
가구소득(기준: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781	1.966	0.128	2.43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356	1.964	0.212	3.74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1.857	2.091	0.275	5.669***
500만원 이상	17.203	2.186	0.338	7.870***
가구원수	0.896	0.945	0.038	0.947
자녀수	3.042	1.056	0.116	2.879**
수정된 R ²	0.115			
추정값의 표준오차	15.798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p < .1$, * $p < .05$, ** $p < .01$, *** $p < .001$

다.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규모 추정

본 연구에서는 2,499가구 3,075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에게 지출되는 교육·보육비용 총액을 조사하였다. 영유아 가구를 전체 가구에서 확률 표집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평균을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은 3조 8,756억 원으로 연령별 교육·보육비용 총액 규모는 다음 <표 V-1-9>와 같다.

<표 V-1-9>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총액 규모(비용미지출 영유아포함)

구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¹⁾	영유아수 ²⁾	단위: 만원, 명, 원
			연간총액
0세	3.58	423,417	18,189,994
1세	5.36	441,450	28,394,064
2세	9.99	444,338	53,267,239
3세	14.60	445,249	78,007,625
4세	17.39	458,876	95,758,244
5세	20.72	458,262	113,942,264
전체	12.09	2,671,592	387,559,430

주. 1)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2. 영유아(연령별·가구별) 사교육비와 지출 결정 요인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영유아의 사교육비용을 추정하였다. 사교육비용에 포함되는 지출 비용은 기타 교육·보육 서비스와 반일제학원에 지출하는 비용을 포함하였다.

가.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

1) 영유아 사교육비 분포 및 비용

영유아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조사 사례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영유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청 2014년 12월기준 추계인구통계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값이다. 분포는 다음 <표 V-2-1>과 같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25.9%는 월평균 6만원 미만으로 지출하고 18.9%는 6만원 ~8만원, 30.4%는 8만원~14만원, 24.8%는 14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의 월평균 지출 비용은 118,200원으로 조사되었다. 표본 수에 따라 0세의 평균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며 연령에 따라 일정한 분포를 보이진 않는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용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1〉 영유아의 사교육비 분포와 평균

단위: %, 명

구분	비용분포					비용	
	6만원 미만	6~8만원 미만	8~14만원 미만	14만원 이상	(수)	평균	중앙
전체	25.9	18.9	30.4	24.8	100.0(859,481)	11.82	8.0
아동연령							
0세	33.7	0.3	13.5	52.5	100.0(21,452)	33.03	14.2
1세	47.7	28.7	9.3	14.2	100.0(67,791)	11.80	6.0
2세	45.2	17.7	19.9	17.2	100.0(125,161)	10.82	6.5
3세	32.6	17.3	38.6	11.5	100.0(158,090)	8.73	8.0
4세	19.4	18.4	36.8	25.4	100.0(220,982)	11.50	9.0
5세	12	19.9	32.0	36.2	100.0(266,004)	12.69	11.0
$X^2(df)$	125838.33(15)***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4.3	20.3	19.8	25.6	100.0(6,282)	9.05	6.0
200~299만원	32.2	15.8	32.9	19.2	100.0(185,589)	9.34	8.0
300~399만원	27.3	21.6	30.0	21.0	100.0(299,280)	11.55	8.0
400~499만원	20.5	15.2	29.9	34.4	100.0(191,609)	13.12	9.3
500만원 이상	22.3	21.6	29.6	26.5	100.0(176,720)	13.58	8.0
$X^2(df)$	22446.30(12)***						

주: 1)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 $p < .001$

2)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사교육비 비율

<표 V-2-1>에서 추정된 사교육비용이 가구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 V-2-2>과 같다. 전체 소득 대비 평균 사교육비용 비율은 3.19%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3.87%이다. 지역규모, 아동연령, 부모취업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소득 및 지출 대비 모두 0세일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비용 비율이 감소하다가 4세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2〉 영유아 총 사교육비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체						(수)
	소득 대비			지출 대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전체	3.19	3.20	26.51	3.87	4.47	51.56	(859,481)
지역규모							
대규모	3.06	3.17	24.14	3.76	4.16	33.80	(588,131)
중규모	3.50	3.45	26.51	4.27	5.55	51.56	(216,768)
소규모	3.30	2.37	14.75	3.42	2.35	14.75	(54,581)
F		1513.19***			1301.25***		
아동연령							
0세	5.97	5.79	20.69	7.12	6.19	20.69	(21,452)
1세	3.21	5.34	26.51	4.83	9.85	51.56	(67,791)
2세	3.04	4.04	24.14	3.90	5.71	33.80	(125,161)
3세	2.38	1.77	15.00	2.94	2.17	16.75	(158,090)
4세	3.18	2.82	23.75	3.64	3.34	31.67	(220,982)
5세	3.50	2.43	15.88	4.08	2.79	19.17	(266,004)
F		6002.66***			4608.32***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2.80	2.81	24.58	3.53	3.49	32.77	(384,715)
외벌이	3.50	3.46	26.51	4.14	5.12	51.56	(474,766)
F		10026.31***			4016.70***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5.31	2.66	9.50	5.59	2.78	9.50	(6,282)
200~299만원	3.75	2.34	14.75	4.08	2.48	14.75	(185,589)
300~399만원	3.43	3.87	26.51	4.21	6.01	51.56	(299,280)
400~499만원	3.07	3.10	24.58	3.71	3.67	32.77	(191,609)
500만원 이상	2.23	2.56	22.00	3.18	3.74	32.22	(176,720)
F		6755.84***			1894.33***		
지원종류							
유아학비	3.04	2.21	15.88	3.65	2.57	19.17	(349,365)
보육료	2.71	1.90	12.50	3.11	2.15	13.33	(418,052)
양육수당	5.90	7.23	26.51	8.14	10.95	51.56	(92,065)
F		-			-		

주: 1) 총 교육·보육비용은 본 조사에서 1인당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함.
 2)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 $p < .001$

3) 영유아의 사교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영유아의 사교육 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 <표 V-2-3>와 같다. 사교육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규모, 아동연령, 부모 취업유무,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연령과 소득이 사교육비용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동연령으로 영아에 비해 유아의 사교육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용은 증가한다.

<표 V-2-3> 영유아의 사교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구분	B	표준오차	β	t
상수	-0.189	0.973		-0.194
지역규모(기준: 소규모)				
대규모	0.393	0.547	0.022	0.719
중규모	-0.229	0.583	-0.012	-0.394
아동연령(기준: 영아)				
유아	3.399	0.301	0.199	11.298***
부모취업유무(기준: 외벌이)				
맞벌이	0.608	0.374	0.034	1.624
가구소득(기준: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0.734	0.927	0.039	0.79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365	0.926	0.078	1.47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863	0.987	0.130	2.902**
500만원 이상	4.069	1.030	0.156	3.950***
수정된 R ²	0.071			
추정값의표준오차	8.224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영유아 가구당 사교육비용

1) 가구당 사교육비 분포 및 지출

영유아 가구당 사교육비용은 분포는 다음 <표 V-2-4>과 같다. 사교육비용 구간별로 보면, 8만원~14만원 미만이 30.6%로 가장 많고, 14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26.9%, 6만원 미만 23.6%, 6만원~8만원 18.9%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가구의 총 사교육비 평균은 121,700원이고 영유아 가구의 사교육비용

은 외벌이 보다는 맞벌이의 사교육비용이 높았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00만원 이상 구간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 비용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4〉 가구의 총 사교육비용 분포와 평균

단위: %, 만원, 가구, 명

구분	분포				비용		
	6만원 미만	6~8만원	8~14만원	14만원초과	(수)	평균	중앙
전체	23.6	18.9	30.6	26.9	100.0(938)	12.17	8.0
지역규모							
대규모	23.3	20.5	30.9	25.3	100.0(638)	12.12	8.0
중규모	25.1	13.2	32.2	29.5	100.0(232)	12.44	9.0
소규모	21.0	23.7	22.5	32.8	100.0(68)	11.75	10.0
$X^2(df)$		9.86(6)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18.4	20.3	29.5	31.7	100.0(401)	13.48	9.0
외벌이	27.4	17.9	31.4	23.3	100.0(537)	11.20	8.0
$X^2(df)$		14.88(3)**					
가구소득							
19만원 이하	0.0	23.0	36.7	40.3	100.0(6)	12.79	11.2
20~29만원	30.4	15.6	33.0	21.0	100.0(207)	9.58	8.0
30~39만원	24.9	23.0	30.8	21.3	100.0(348)	11.21	8.0
40~49만원	19.5	15.6	28.2	36.6	100.0(212)	13.98	10.0
50만원 이상	18.5	18.7	30.0	32.9	100.0(165)	15.09	9.0
$X^2(df)$		na ¹⁾					
가구원수							
3인 이하	25.9	19.0	32.9	22.2	100.0(385)	10.62	8.0
4인	22.8	18.9	26.8	31.6	100.0(471)	13.41	9.0
5인 이상	17.4	19.1	41.6	21.8	100.0(82)	12.42	9.0
$X^2(df)$		16.74(6)*					
자녀수							
1인	25.3	18.0	34.7	21.9	100.0(415)	10.68	8.0
2인	22.0	19.8	27.1	31.1	100.0(474)	13.39	9.0
3인 이상	24.5	18.7	29.3	27.5	100.0(50)	13.06	9.2
$X^2(df)$		12.57(6)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2) 가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의 가구수를 활용하였으나, 가구 수는 조사 단위의 가구 수를 제시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1$

2)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

가구에서 지출하는 사교육비용이 가구소득 및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 V-2-5>과 같다. 전체 소득 대비 평균 지출 비율은 3.34%이고 지출 대비 비율은 4.02%이다.

<표 V-2-5> 가구의 총 사교육비용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비율

단위: %, 가구

구분	소득 대비			지출 대비			(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전체	3.34	3.18	26.51	4.02	4.42	51.56	(938)
지역규모							
대규모	3.22	3.17	24.14	3.96	4.36	45.56	(638)
중규모	3.55	3.35	26.51	4.27	4.97	51.56	(232)
소규모	3.64	2.66	14.75	3.76	2.64	14.75	(68)
F		1.26			0.53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3.04	3.10	24.58	3.83	4.26	45.56	(401)
외벌이	3.56	3.23	26.51	4.17	4.54	51.56	(537)
F		6.14*			1.3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60	3.16	11.11	8.11	2.92	11.11	(6)
200~299만원	3.87	2.42	14.75	4.22	2.57	14.75	(207)
300~399만원	3.35	3.44	26.51	4.03	5.13	51.56	(348)
400~499만원	3.28	3.44	24.58	3.93	4.05	32.77	(212)
500만원 이상	2.55	2.86	22	3.73	5.08	45.56	(165)
F		6.95***			1.65		
가구원수							
3인이하	3.09	2.75	24.58	3.75	3.62	33.80	(385)
4인	3.53	3.53	26.51	4.18	4.67	51.56	(471)
5인이상	3.38	2.92	16.86	4.38	6.05	45.56	(82)
F		2.05			1.28		
자녀수							
1인	3.05	2.70	24.58	3.70	3.53	33.80	(415)
2인	3.55	3.51	26.51	4.19	4.65	51.56	(474)
3인 이상	3.67	3.51	16.86	5.12	7.59	45.56	(50)
F		2.97			2.96		

주: 1)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사교육비용 총액 추정

본 연구에서는 2,499가구 3,075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용을 조사하였다. 본 절에서 사교육비용 총액 추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제시한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별 추정된 사교육비용 평균과 영유아수를 곱하여 사교육비용 총액을 추정하고 둘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연간화 계수를 작성하여 연간 총액을 추정하였다.

1) 조사 평균비용을 이용한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 및 연간 총액

사교육에 참여한 영유아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다음 <표 V-2-6>와 같다.

<표 V-2-6> 사교육 참여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구분	단위: 만원, 명, 원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영유아수(사교육참여추정수)	연간총액
0세	33.03	21,452	8,502,715
1세	11.80	67,791	9,599,206
2세	10.82	125,161	16,250,904
3세	8.73	158,090	16,561,508
4세	11.50	220,982	30,495,516
5세	12.69	266,004	40,507,089
전체	11.82	859,481	121,916,938

주: 1)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연령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용 추정치가 12개월 동안 같을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사교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1조 2,192억 원이라고(<표 V-2-6> 참조).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간 사교육비 총액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V-2-7>과 같다. 전체 영유아의 사교육비 총액은 1조 2,05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V-2-7〉 전체 연령별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구분	단위: 만원, 명, 원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영유아수(전체인구수)	연간총액
0세	1.28	423,417	6,525,856
1세	1.79	441,450	9,495,873
2세	3.08	444,338	16,427,789
3세	3.09	445,249	16,494,232
4세	5.59	458,876	30,775,006
5세	7.42	458,262	40,789,125
전체	3.72	2,671,592	120,507,880

주: 1)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2) 연간화 계수를 활용한 사교육비용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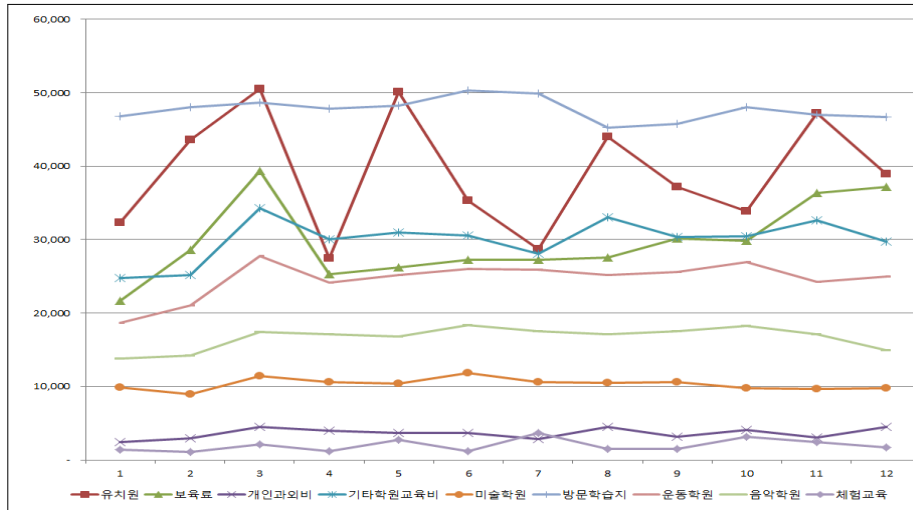
본 조사는 2015년 5월 한 달을 기준으로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조사하였다. 한 달간 지출한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연간 총액을 추정해야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간총액을 추정하였다.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는 일부 월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로 연간 추정값을 작성할 때, 월별 지출액이 균등하지 않으므로 월별 지출패턴을 반영하여 연간 추정값을 작성한다(통계청, 2013:10).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안정적인 지출패턴 확보를 위해 3개년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안정적인 CV를 제공하는 전국단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총액을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계동향조사 자료 중 영유아의 사교육비용과 관련 있는 변수를 활용하여 연간화 계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표본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를 추출하여 관련 항목을 활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일부 있으나 한시점의 자료를 일 년 동안의 지출 비용으로 추정할 경우 과대·과소 추정의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겠다.

연간화 계수 작성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에서 영유아에게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항목의 월평균 비용을 활용하였다. 다음 [그림 V-2-1]은 2014년 가계동향조사 표본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 표본의 교육·보육 관련 비용 그래프이다⁴⁰⁾.

단위: 원



자료: 통계청(2014). 2014년 월별 가계동향조사.

[그림 V-2-1] 2014 가계동향조사 월평균 지출 비용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유치원비용, 보육료, 미술학원, 방문학습지, 운동학원, 음악학원 등의 월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비용과 보육료는 월에 따라 지출 패턴이 차이가 나고 다른 비용들도 월별 지출패턴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 추정을 위해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관련 비용 중 유치원비용과 보육료는 제외하고 미술학원, 방문학습비, 운동학원 등의 교육·보육비용을 합하여 월평균 비용을 산출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5월 시점의 월평균 사교육비용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화 계수를 작성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의 월평균 사교육비용과 연간화 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한 영유아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다음 <표 V-2-8>, <표 V-2-9>과 같다. 월별로 상이한 지출 패턴을 반영하여 추정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사교육비 총액은 연간 1조 1,648억 원이고 전체 영유아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연간 1조 1,77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5월 조사시점의 월평균 지출 비용이 12개월 동안 같다고 가정하여 추정한 1조 2,192억 원(<표 V-2-6> 참조), 1조 2,051억 원(<표 V-2-7

40) 2015년 사교육비 연간 총액 추정을 위해 2015년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야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2014년 가계동향조사 월별 자료를 기준으로 연간화 계수를 작성하여 추정에 활용함.

참조)에 비해 연간 총액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V-2-8〉 사교육 참여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단위: 만원, 명, 원			
구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영유아수	연간총액
0세	23.67	21,452	6,093,226
1세	11.47	67,791	9,330,753
2세	10.60	125,161	15,920,479
3세	8.52	158,090	16,163,122
4세	11.19	220,982	29,673,463
5세	12.31	266,004	39,294,111
전체	11.31	859,481	116,475,154

주: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년 월별 가계동향조사.
 3)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표 V-2-9〉 영유아 사교육비 총액 규모

단위: 만원, 명, 원			
구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영유아수	연간총액
0세	1.26	423,417	6,402,065
1세	1.75	441,450	9,270,450
2세	3.01	444,338	16,049,489
3세	3.02	445,249	16,135,824
4세	5.46	458,876	30,065,556
5세	7.25	458,262	39,868,794
전체	3.63	2,671,592	117,792,177

주: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2014년 12월 기준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보정한 추정치임.

- 자료: 1)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2) 통계청(2014). 2014년 월별 가계동향조사.
 3)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VI. 의견조사 및 개선 방안

1. 교육·보육비용 관련 의견조사

가. 전년 대비 비용 변화 및 만족도

전년도 대비 취학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유사하다는 비율이 약 60.7%로 나타났고, 증가했다는 비율이 약 37.7%로 나타났다. 감소한 가구수가 매우 소수이나, 그 이유는 정부지원금 수혜로 인해서가 74.2%로 매우 높았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의 이유는 자녀 연령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며, 비용 충당 방법으로는 가족 생활비 경감이었다.

〈표 VI-1-1〉 취학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전년도 대비 변화추이: 증가

단위: %, 명

구분	유사 감소		감소이유					증가	증가이유						충당방법					
	(N=1866)	(N=51)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기타	①	②	③	④	⑤	기타
전체	60.7	1.6	74.2	1.0	5.8	9.3	9.8	37.7 (119)	80.4	1	3.3	13	1.2	1.0	3.1	50.8	17.3	1.6	26.4	0.7
0세	68.5	0.6	100	0.0	0.0	0.0	0.0	30.9 (15)	86.4	0.9	2.2	5.9	1.6	3.0	1.9	59.5	13.2	1.0	22.9	1.5
1세	61.2	3.6	69.2	2.7	8.0	7.0	12.9	35.2 (17)	74.6	2.1	4.3	12.4	6.6	0.0	4.3	44.9	19.7	3.9	27.2	0.0
2세	60.9	2.1	87.9	0.0	4.3	0.0	7.8	37.0 (18)	80.1	0.2	2.4	16.6	0.0	0.8	4.4	54.5	18.7	0.7	21.4	0.2
3세	53.6	1.7	70	0.0	0.0	9.5	20.4	44.7 (22)	81.4	1.2	4.0	12.9	0.0	0.6	2.1	45.1	20.4	1.1	29.9	1.3
4세	59.5	1.3	60.3	0.0	14.7	25.0	0.0	39.3 (21)	81.4	0.6	3.7	13.7	0.0	0.6	1.3	51.4	15.5	2.0	28.9	1.0
5세	60.4	0.6	72.3	0.0	0.0	27.7	0.0	38.9 (19)	79.3	1.1	2.9	15.1	0.0	1.5	4.7	51.9	15.4	1.3	26.4	0.3

주: 1) 감소이유 ① 정부지원금 수혜로 인해 ② 가족 이사 등 생활환경 변화 ③ 가구의 월 소비패턴의 변화 ④ 참여 교육·보육 프로그램 수 감소.

2) 증가이유 ① 자녀연령증가에 따른 교육·보육비용 상승 ② 가족이사 등 생활환경변화 ③ 가족을 위한 지출처 변화 ④ 참여교육·보육 프로그램 수 증가 ⑤ 가구소득증가.

3) 충당방법 ① 다른 형제·자매 교육·보육비용 절감 ② 가족의 의식주 생활비용절감 ③ 월평균 소득증가 ④ 친지의 도움으로 충당 ⑤ 저축을 줄여서.

4)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취학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과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약 9%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부담이 된다는 비율 역시 약 45.1%로 나타나서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 연령 증가로 매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계소득에 비해 지출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 순이었다(표 VI-1-2 참조). 연령별로는 연령이 어릴수록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VI-1-2〉 취학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단위: %, 명

구분	부담 안됨	부담됨 비율(수)	부담이유					
			다른 영역의 지출을 줄여야해서	가계소득에 비해 지출이 커서	연령증가로 매해 증가해서	가족의 생활비용을 줄여야해서	가구소득이 감소해서	기타
전체	54.9	45.1 (1,388)	17.2	27.1	46.6	6.9	1.8	0.5
0세	64.3	35.7 (181)	20.1	26.9	47.5	3.7	1.3	0.5
1세	61.4	38.6 (196)	18.9	27.6	41.4	9.0	1.8	1.3
2세	57.7	42.3 (216)	14.2	26.8	45.4	8.8	4.5	0.2
3세	49.3	50.7 (257)	14.9	28.0	51.4	4.8	1.0	0.0
4세	49.6	50.4 (274)	15.8	26.8	49.9	5.2	2.1	0.2
5세	47.0	53.0 (264)	19.9	26.4	42.5	9.6	0.6	0.9

주: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나. 가구대상 비용 정책 의견 조사

정부의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 지원의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78.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만족한다고 응답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약 83.9%가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절감효과가 있다는 응답률이 90.0%로 높게 나타났다.

비용절감 효과 없음의 이유를 확인한 조사에서 소득 구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199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서는 '가계지출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의 응답 비율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약 20%정도 낮아서 정부의 재정지원 효과의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VI-1-3〉 정부재정 지원 만족 정도

단위: %, 명

구분	지원 만족함 (N=2499)	비용절감 효과있음 (N=2096)	비용절감 효과없음 (N=403)	효과없음이유			계(수)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가계지출에 도움이 추가지출이 있어서 될 정도가 아니므로	기타		
전체	78.1	83.9	16.1	25.2	73.9	0.9	100.0(2499)
막내자녀연령							
0세	74.2	79.7	20.3	5.5	90.8	3.7	100.0(496)
1세	77.1	80.8	19.2	8.7	91.3	-	100.0(494)
2세	78.4	85.0	15.0	22.7	77.3	-	100.0(395)
3세	80.6	86.6	13.4	61.4	38.6	-	100.0(371)
4세	76.9	84.4	15.6	47.3	52.7	-	100.0(358)
5세	82.5	88.8	11.2	40.4	59.6	-	100.0(385)
$X^2(df)$	10.87(5)	19.52(5)**		n.a ¹⁾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3.8	90.0	10.0	35.3	55.7	9.0	100.0(71)
200~299만원	79.3	85.0	15.0	20.2	77.6	2.2	100.0(691)
300~399만원	76.2	83.9	16.1	27.5	72.5	-	100.0(955)
400~499만원	80.1	82.1	17.9	27.0	73.0	-	100.0(460)
500만원 이상	76.9	82.6	17.4	24.2	74.5	1.3	100.0(322)
$X^2(df)$	5.58(4)	4.04(4)		n.a ¹⁾			
막내자녀지원종류							
유아학비	79.2	86.9	13.1	49.7	50.3	-	100.0(486)
보육료	83.1	88.1	11.9	44.3	55.1	0.5	100.0(1,165)
양육수당	70.5	76.3	23.7	4.2	94.3	1.5	100.0(848)
$X^2(df)$	45.76(2)***	54.76(2)***		n.a ¹⁾			

-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 2) 가구소득별은 2자녀 이상은 미취학자녀의 가장 연령이 낮은 아이를 중심으로 함.
- 3)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 4)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1$, *** $p < .001$

정부 지원이 후속출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비율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 17.8%정도 도움이 안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 이유로는 후속출산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응답이 63.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1-4〉 정부재정 지원에 따른 후속출산 여부

단위: %, 명

구분	후속출산		도움이 안되는 이유				계(수)	계(수)
	도움 됨	도움 안됨	금액이 적어서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만의 문제가 아님	재정지원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안됨	기 타		
전체	41.1	58.9	23.6	63.3	13.1	-	100.0(1,473)	100.0(2,499)
막내자녀연령								
0세	45.4	54.6	32.2	57.5	10.3	-	100.0(271)	100.0(496)
1세	40.8	59.2	25.6	62.2	12.2	-	100.0(292)	100.0(494)
2세	46.1	53.9	22.9	60.6	16.5	-	100.0(213)	100.0(395)
3세	37.1	62.9	23.5	61.5	14.8	0.3	100.0(233)	100.0(371)
4세	39.7	60.3	19.3	67.9	12.8	-	100.0(216)	100.0(358)
5세	35.7	64.3	16.2	71.0	12.8	-	100.0(248)	100.0(385)
$X^2(df)$	14.99(5)*				n.a ¹⁾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2.4	57.6	27.0	59.3	13.6	-	100.0(41)	100.0(71)
200~299만원	40.4	59.6	27.2	59.6	13.2	-	100.0(412)	100.0(691)
300~399만원	39.5	60.5	21.9	64.3	13.8	-	100.0(577)	100.0(955)
400~499만원	38.9	61.1	20.4	65.7	13.7	0.2	100.0(281)	100.0(460)
500만원 이상	49.8	50.2	25.0	66.1	9.0	-	100.0(161)	100.0(322)
$X^2(df)$	12.22(4)*				n.a ¹⁾			
지원종류								
유아학비	36.2	63.8	17.9	69.2	12.9	-	100.0(310)	100.0(486)
보육료	45.2	54.8	19.5	64.9	15.5	0.1	100.0(638)	100.0(1,165)
양육수당	38.1	61.9	31.8	57.9	10.3	-	100.0(525)	100.0(848)
$X^2(df)$	16.20(2)***				n.a ¹⁾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가구소득별은 2자녀 이상인 경우는 미취학자녀의 가장 연령이 낮은 아이를 중심으로 함.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5$, *** $p < .001$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이용)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취원율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에 비해 약 28.2% 정도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2세 이하의 영아는 정부 지원이 영향을 주었다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영향을 미

치지 않은 이유는 '이미 보낼 생각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특히 0세 이하에서는 '취업모여서 선택의 의지가 없다'라는 응답이 43.0%로 나타나서 가정양육이 가능한 지원 정책이 있는 경우 기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I-1-5〉 정부재정 지원에 따른 취원 결정 여부

단위: %, 명

구분	취원을 영향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					계(수)	계(수)
	있음 (N=1,059)	없음	이미 보낼 생각이어서	취업모여서 선택이 아님	양육수당 지원	유사 교육보육 기관에 다니려고	기타		
전체	64.1	35.9	76.6	14.6	7.0	1.4	0.4	100.0(592)	100.0(1,651)
막내자녀연령									
0세	73.3	26.7	52.5	43.0	4.4	-	-	100.0(54)	100.0(54)
1세	75.2	24.8	66.1	23.3	8.3	-	2.3	100.0(205)	100.0(205)
2세	73.6	26.4	77.1	17.2	5.6	-	-	100.0(289)	100.0(289)
3세	58.6	41.4	75.6	8.2	14.4	1.0	0.8	100.0(364)	100.0(364)
4세	55.0	45.0	76.3	17.5	4.3	1.9	-	100.0(354)	100.0(354)
5세	63.5	36.5	84.0	10.6	2.5	2.8	-	100.0(384)	100.0(384)
$X^2(df)$	41.99(5)***		n.a ¹⁾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1.0	29.0	73.1	15.9	10.9	-	-	100.0(23)	100.0(23)
200~299만원	63.0	37.0	77.6	11.4	8.9	2.1	-	100.0(382)	100.0(382)
300~399만원	63.4	36.6	80.7	9.0	7.9	2.4	-	100.0(618)	100.0(618)
400~499만원	63.9	36.1	78.9	16.5	4.6	-	-	100.0(368)	100.0(368)
500만원 이상	67.3	32.7	60.9	31.6	4.9	-	2.7	100.0(261)	100.0(261)
$X^2(df)$	1.91(4)		n.a ¹⁾						
막내자녀지원종류									
유아학비	56.5	43.5	75.4	14.4	6.2	4.0	-	100.0(486)	100.0(486)
보육료	67.3	32.7	77.3	14.7	7.4	-	0.6	100.0(1,165)	100.0(1,165)
$X^2(df)$	17.36(1)***		n.a ¹⁾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가구소득별은 2자녀 이상인 경우는 막내자녀를 중심으로 함.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 인상을 전제로 가정양육의향을 확인한 결

과⁴¹⁾, 양육수당을 현 수준에서 5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의사를 밝힌 가구는 16.0%이며, 84.0%는 가정양육의사가 없었다.

〈표 VI-1-6〉 양육수당 5만원 인상

단위: %, 명

구분	의사 있음	의사 없음 (수)	가정양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6.0	84.0 (2,099)	59.7	11.1	4.0	7.7	16.4	1.0	100.0(2,499)
지원종류(막내자녀기준)									
유아학비	4.3	95.7 (465)	66.5	8.6	2.6	5.8	14.7	1.8	100.0(486)
보육료	3.1	96.9 (1,130)	53.7	13.2	3.7	8.1	20.2	1.1	100.0(1,165)
양육수당	40.5	59.5 (504)	67.0	8.5	5.9	8.8	9.6	0.2	100.0(848)
아동월령(막내자녀기준)									
~11개월	38.2	61.8 (307)	57.3	8.2	4.8	12.4	17.3	0.0	100.0(496)
12~23개월	28.0	72 (355)	50.6	16.2	6.5	5.7	19.2	1.9	100.0(494)
24~35개월	9.5	90.5 (357)	56.8	13.2	3.6	7.6	17.9	0.9	100.0(395)
36~47개월	4.1	95.9 (356)	61.9	9.6	5.4	6.4	15.1	1.6	100.0(371)
48~59개월	2.8	97.2 (348)	60.7	10.5	2.9	8.8	16.8	0.3	100.0(358)
60~71개월	2.4	97.6 (376)	70.3	8.5	1.2	6.3	12.5	1.2	100.0(385)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5.8	94.2 (835)	45.0	12.1	3.4	7.0	32.3	0.2	100.0(886)
외벌이	21.6	78.4 (1,264)	69.5	10.4	4.4	8.2	5.9	1.6	100.0(1,61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6.1	73.9 (52)	62.5	11.1	14.5	5.6	6.4	0.0	100.0(71)
200~299만원	23.4	76.6 (529)	65.6	11.3	3.9	9.1	9.6	0.5	100.0(691)
300~399만원	15.4	84.6 (807)	63.0	11.7	4.3	7.6	11.9	1.5	100.0(955)
400~499만원	8.9	91.1 (419)	52.1	9.2	3.1	8.4	26.5	0.6	100.0(460)
500만원 이상	9.6	90.4 (291)	50.7	11.5	2.9	5.1	28.5	1.4	100.0(322)

주: 1) 가정양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 ①기관이용이 또래 경험 등 발달에 필요해서 ②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③ 아이돌보기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④ 가정양육이 기관이용 비용보다 높아서 ⑤가정에서 별도의 개별돌봄을 이용해야 해서 ⑥ 부모가 개인적인 시간 이용을 위해서.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아동월령은 양육수당 월령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양육수당을 현 수준에서 10만원 인상 시, 가정양육의사를 밝힌 가구는 26.0%

41) 이정원·이혜민(2014), 2013~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양육수당 관련 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함.

이며, 74.0%는 가정양육의사가 없었고, 다만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에 서는 가정양육의사가 56.7%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1-7〉 양육수당 10만원 인상

단위: %, 명

구분	의사 있음	의사 없음 (수)	가정양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26.0	74.0 (1,850)	63.2	8.1	3.0	7.0	17.6	1.1	100.0(2,499)
지원종류(막내자녀기준)									
유아학비	7.8	92.2 (448)	68.0	6.5	3.4	6.0	14.6	1.4	100.0(486)
보육료	11.1	88.9 (1,036)	58.0	9.8	2.8	7.2	20.9	1.3	100.0(1,165)
양육수당	56.7	43.3 (367)	72.2	5.2	3.2	7.6	11.7	0.0	100.0(848)
아동월령(막내자녀기준)									
~11개월	54.8	45.2 (224)	58.6	7.0	2.6	9.3	22.0	0.5	100.0(496)
12~23개월	41.5	58.5 (289)	57.5	8.9	5.5	5.6	21.0	1.4	100.0(494)
24~35개월	20.7	79.3 (313)	60.4	7.7	2.8	7.8	20.3	1.1	100.0(395)
36~47개월	10.1	89.9 (334)	63.0	8.8	3.8	8.0	15.3	1.2	100.0(371)
48~59개월	8.1	91.9 (329)	65.2	8.3	2.6	6.0	16.9	0.9	100.0(358)
60~71개월	6.2	93.8 (362)	71.6	7.6	1.3	5.8	12.5	1.2	100.0(385)
부모취업유무									
맞벌이	13.7	86.3 (765)	46.8	9.9	3.9	4.7	34.4	0.3	100.0(886)
외벌이	32.7	67.3 (1,085)	74.8	6.8	2.4	8.6	5.7	1.6	100.0(1,612)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5.5	54.5 (39)	60.1	15.7	10.2	10.0	3.9	0.0	100.0(71)
200~299만원	35.1	64.9 (449)	72.4	6.6	1.3	9.8	9.3	0.6	100.0(691)
300~399만원	25.0	75.0 (716)	65.5	9.3	3.2	8.1	12.8	1.1	100.0(955)
400~499만원	16.6	83.4 (384)	56.1	7.5	2.8	3.8	28.6	1.1	100.0(460)
500만원 이상	18.2	81.8 (263)	52.5	7.1	4.8	3.2	30.4	2.0	100.0(322)

주: 1) 가정양육을 원하지 않는 이유 ①기관이용이 또래 경험 등 발달에 필요해서 ② 아이 돌보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③ 아이돌보기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④ 가정양육이 기관이용 비용보다 높아서 ⑤가정에서 별도의 개별돌봄을 이용해야 해서 ⑥ 부모가 개인적인 시간 이용을 위해서.

2)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3) 아동월령은 양육수당 월령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본 조사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83.9%가 현재 정부 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는 16.1%에 불과하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유아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이란 응답이 가

장 높았고, 세금 부담의 증가와 전계층 동일 지원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비슷한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본 조사 결과는 현재 정부의 무상교육·보육 지원 정책과 양육수당 등 영유아기 대상 재정 지원 정책에 자체에 대한 찬성은 비율이 높아, 세부적인 지원과정, 내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1-8〉 정부 재정 지원 정책 찬성 유무

단위: %, 명

구분	찬성	반대	반대이유				계(수)	계(수)
			모든 비용 지원이 아니므로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전 계층 동일 지원 자체에 반대함	기타		
전체	83.9	16.1	70.2	14.7	14.1	1.1	100.0(403)	100.0(2499)
막내자녀 기준								
0세	84.7	15.3	73.3	17.2	9.5	-	100.0(76)	100.0(496)
1세	84.9	15.1	74.1	15.5	9.6	0.8	100.0(75)	100.0(494)
2세	84.7	15.3	73.7	9.7	15.3	1.3	100.0(60)	100.0(395)
3세	80.5	19.5	65.9	19.1	13.4	1.6	100.0(72)	100.0(371)
4세	83.6	16.4	67.6	15.8	15.2	1.4	100.0(59)	100.0(358)
5세	84.2	15.8	65.6	9.2	23.8	1.4	100.0(61)	100.0(385)
$X^2(df)$	3.83(5)		na ¹⁾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8.2	11.8	45.8	15.5	38.7	-	100.0(8)	100.0(71)
200~299만원	87.5	12.5	67.5	23.8	8.7	-	100.0(86)	100.0(691)
300~399만원	83.8	16.2	68.4	8.5	21.1	2.0	100.0(154)	100.0(955)
400~499만원	79.0	21.0	70.8	22.8	5.2	1.2	100.0(96)	100.0(460)
500만원 이상	82.1	17.9	81.4	4.0	14.6	-	100.0(58)	100.0(322)
$X^2(df)$	16.68(4)**		na ¹⁾					
지원종류								
유아학비	82.2	17.8	68.2	12.5	16.0	3.3	100.0(86)	100.0(486)
보육료	85.0	15.0	66.5	14.8	18.8	-	100.0(175)	100.0(1,165)
양육수당	83.3	16.7	76.0	15.9	7.1	1.0	100.0(142)	100.0(848)
$X^2(df)$	2.24(2)		na ¹⁾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가구소득별 2자녀 이상인 경우는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함.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1$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적절하다고 방안을

조사한 결과, 전 계층 지원을 전제로 소득별 차등지원이 가장 응답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령별 차등지원 순이었다. 교육·보육이용 시간별로 지원과 저소득층만 지원하는 방안도 약 10%정도로 나타났다.

〈표 VI-1-9〉 정부 재정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단위: %, 명

구분	전 계층을 지원하되 소득별차등지원	전계층을 지원하되 연령별 차등지원	교육·보육이용시간 별로 지원	저소득층만 지원	기타	계(수)
전체	52.7	27.2	10.9	8.5	0.7	100.0(2499)
막내자녀연령						
0세	48.4	31.1	9.0	10.6	1.0	100.0(496)
1세	54.5	24.4	12.7	7.3	1.1	100.0(494)
2세	55.9	25.4	10.9	6.6	1.3	100.0(395)
3세	53.0	26.6	10.9	9.6	-	100.0(371)
4세	51.0	32.2	10.6	5.7	0.6	100.0(358)
5세	53.9	23.3	11.6	10.9	0.3	100.0(385)
$X^2(df)$	na ¹⁾					
가구소득						
19만원 이하	52.4	25.3	7.8	11.3	3.2	100.0(71)
20-29만원	56.8	23.8	10.3	8.8	0.3	100.0(691)
30-39만원	54.5	25.6	10.5	8.8	0.6	100.0(955)
40-49만원	47.5	30.1	11.9	10.2	0.3	100.0(460)
50만원 이상	45.9	35.2	13.0	3.7	2.2	100.0(322)
$X^2(df)$	51.75(16)***					
막내자녀지원종류						
유아학비	48.3	29.2	11.7	10.5	0.4	100.0(486)
보육료	54.9	25.0	13.0	6.4	0.8	100.0(1,165)
양육수당	52.2	29.1	7.6	10.2	0.9	100.0(848)
$X^2(df)$	33.00(8)***					

주: 1) 각 셀별 기대치가 통계적 검정에 적절하지 않아 교차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2) 가구소득별은 2자녀 이상인 경우는 미취학자녀의 가장 연령이 높은 아이를 중심으로 함.

3) 본 조사는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III)」의 결과임.

*** $p < .001$

2. 논의 및 개선방안

가. 유아교육기관 원비 상한제 도입에 따른 관리 지도

0-5세 취학전 영유아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다. 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주지만, 교육비로 일컫는 원비 정도가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정부재정 지원으로만 운영하여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영유아가 약 30%초반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비해 기관 비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고, 대체적으로 작년과 유사하거나 다소 증가하였다.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추가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모들도 있으나, 추가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상한제 적용을 통해 양 기관의 원비 상한을 억제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비상한제는 이미 법정으로 효력을 지닌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유치원 역시 원비상한제가 2015년 상반기에 결정되었다⁴²⁾. 이 같은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합한 원비 책정 방안을 현재 고시된 법에 근거해서 모색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비 상한제 적용기준이 현재 수납하고 있는 금액이 된다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원비를 수납하는 곳은 불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으나, 최초 원비가 낮았던 기관은 상한선으로 인해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전자는 원비상한제가 실질적으로 부모의 경비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줄 수 없을 것이고, 후자는 교사처우개선, 물가 상승률 등으로 인해 크게 상승하지도 않았으나 관리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비 상한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 물가 인상을 등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규정에서 각 유치원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이 보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원비상한제를 지역별, 기관특성별, 현재 기관의 원비 이용 등을 고려하여 세밀하게 적용하고 적절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관리·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개념 정의 필요

42)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학부모 부담 준다” <http://www.pp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390>.
검경일보. 2015. 8. 31. 보도.

사교육은 흔히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교육(extra education 혹은 private education)을 일컫는 용어로 공교육(public education)과 비교해서 사용된다.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대상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여 그 규모를 가늠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그러나 사교육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삶과 문화형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정부와 사회는 사교육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교육을 통한 영유아의 돌봄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개념 정의에 대해 고려되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누리과정 도입이후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의 교육·보육기관은 아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이고,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과 특성화활동은 초중등의 돌봄교실과 방과후수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역시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육활동은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 부담이 곧 사교육으로 정의되어 질 수 있는 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 자녀의 연령과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학문적 성취를 목적으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모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맡기고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사교육은 초중등의 사교육과는 사뭇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이용)율은 90%이며, 0-5세는 70%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후, 주말 등 추가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의 선택지 중 하나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밖 교육·보육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즉, 다른 학령기의 학문적 목표 달성이나 예체능의 조기 교육 등과는 달리 사회적 안전 지대로써 돌봄의 역할을 기대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을 개념화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이런 합의 하에 조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연구자에 따라서 혹은 관련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첫째

이유와 같이 공적 기관의 사적 부담 형태의 교육·보육활동에 대한 영유아기 ‘사교육’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욱 그러하다. 사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은 과열된 사교육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개념 정의와 그에 따른 연구와 정책 수립 등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제안한다.

다. 방과후과정·방과후특성화활동/특별활동 운영지침과 비용 지도 점검

유치원에서 초중등과 동일하게 ‘돌봄’의 개념으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목표는 영유아의 재능 발견뿐만 아니라 부모의 장시간 돌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또한 방과후 특성화 활동은 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목표도 함께 갖고 있다. 이는 초중등의 방과후돌봄과 EBS 방송 수업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가능하다. 유치원과 비슷한 취지로 어린이집에서도 만 24개월이상 특별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본 조사에서 방과후 특성화 활동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으로 그 목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유치원의 방과후과정, 방과후특성화활동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이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추구하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관리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이 필요하다.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특성화활동,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운영 방안(지침)은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연 초에 전달하고, 이를 관리 감독한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경우이기는 하나, 특성화 활동, 특별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지나친 특성화활동과 특별활동은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비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유치원은 각 해당 관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며, 교육부에서도 필요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각 지자체에서 특별활동 비용 상한제를 도입(예: 서울시)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보공시를 통해 특성화활동과 특별활동 비용을 투명하게 공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부모의 요구’라는 잘못된 명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적 성격과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수준의 특성화활동과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기관은 당연히 규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공의 성격을 가진 교육·보육기관으로 부모교육 등을

통해서 영유아기 교육·보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부모를 이끌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화 활동, 특별활동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라. 가정 양육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원 이외의 다른 육아지원 제도의 적극적 실행

가정에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가정 양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육수당 금액의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⁴³⁾. 그러나 본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지원의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아닌 이상 가정양육비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정부 재정지원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이용)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 또한 낮지 않아서, 양육수당 지원금만의 상향조정은 가정 양육 활성화에 부합하는 방안인 가는 숙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양육수당 비용이 상승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하였지만, 가정양육의사가 있다는 비율이 낮아서 가정양육 수당 상향조정으로 가정양육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에도 부합하면서, 가정 양육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부모가 왜 가정양육이 아닌 다른 형태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지속적이면서 세심한 관찰을 통해 부모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백화점의 나열식 지원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맞춤형·특화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모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면서도 부부의 양육권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모성휴가, 직장어린이집, 수유실, 재택근무제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과 산업현장, 그리고 대학교 이상 재학하는 학생 부모들을 위한 친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지원해야 한다. 이런 방안들은 정부 재정 지원방안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고, 교육·보육비용 경비 완화에 기여한다.

43) “보육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맞춤형보육정책추진” 보건복지부. 따스이리(<http://dogdumnet/nchwr/1281682>, 2015. 11. 20 인출).

마. 이용 기관의 유형에 따른 비용 지출 차별화 해소 방안 모색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설립유형과 소재 지역에 따라 유치원 간, 어린이집 간, 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부모의 비용 지출에 차이가 있다. 누리과정으로 인한 비용은 동일하나, 유치원은 국공립과 사립 간 부모 지출 비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어린이집 역시 민간, 가정의 3·5세 추가 비용이 지역 간 차이가 있다. 국공립과 사립의 비용 격차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설립주체에 따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비용 격차 또한 존재한다(이정원, 최효미, 김진미, 정주영, 2014). 이정원 등(2014)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 실태 및 형평성 제고 방안이란 연구에 따르면, 선택해서 이용하는 기관의 유형에 따른 비용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부모가 선택하는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특별활동 등을 제외한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시간에는 각 기관의 비용 격차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누리과정의 동일한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립 혹은 사립(민간),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격차는 영유아기 교육·보육의 동등한 출발선과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를 퇴색시킨다. 따라서 이용 기관에 따른 비용 지출 완화 혹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 24조(무상교육) 규정에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고, 표준유아교육비를 통해 유치원 비용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유아교육법 제 24조 2~5항). 따라서 매해 적정한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출하여, 그에 따라 공립과 사립유치원 비용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들의 모색을 위해서는 지난 2015. 11. 30에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보육실태조사와 같이 전국 규모의 유치원의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⁴⁴⁾.

바. 국가 수준의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조사 필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매해 초·중·등 사교육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나, 영유아

44)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2>. 뉴스에듀 “유아교육법 등 교육분야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학생들 실익은?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학연금법·사립학교법·학교폭력예방법 등”(2015. 12. 1일 보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육비용 조사는 아직 없다. 본 연구의 국외 사례에서 제시한 영국, 미국 등과 같은 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을 조사하여, 각 나라의 특성, 지역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고,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조사하여 비용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비용 조사를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연계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 1회여도 국가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청(2015).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 고혜원(2012).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사회적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OECD국가의 정책들과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부(2015). 2015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기준. 내부자료.
- 교육부(각 년도). 유아교육예산 및 결산. 내부자료.
- 권경림(2013). 유아 사교육 이용 및 지출 실태와 영향 요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병주(2011). 만 5세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추계. 교육재정·경제연구, 20(3), 205-221.
- 김양분·양수경·박성호(2012). 사교육비 추이 및 추세분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39(1), 261-284.
- 김은영·김정숙·양유진(201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모형 개발 및 비용 추계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수탁보고 2013-02.
- 김진미(2012). 유아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유형에 따른 지출 비용 결정 요인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수·김혜원(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13(4), 191-212.
- 백학영·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9-47.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각 년도). 보육통계.
-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혜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양미선·손창균(201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2-11.
-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 서울교육 2015-33.
- 서울특별시청(2015). 2015년도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현황.
- 신윤정·김지연(2010).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0-30-8.
-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31.
- 양미선·박진아·손창균·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3-38.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14. 1. 28). 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 여성가족부(2015).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육아정책연구소(2014). 2014 유아교육·보육통계. 연구자료 2014-01.
- 이상호·성재민·신선옥·이지은·윤미례·이혜정·박진아(2014). 제15차(2012)년도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 이경선·김주후(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4). 3~5세 누리과정 이용 및 운영 실태와 내실화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4-26.
-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3).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 지출비용 변화분석: 2011-2012년 동일기관 이용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7(2), 166-189.
- 이정원·이혜민(2014).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아(2011). 유아사교육참여 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 현황분석.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장혜진(2015).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일부개정 공청회. 육아정책연구소

세미나자료 2015-01.

이태진·정해식·정은희·오미애·전지현·박형준·신재동·정희선·이주미·오혜인·박나영·이봉주·김대성·구인회·강상경·이상록·정원오·이서운·김화선·이혜림(2014).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원(2014). 보육료 지원 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장윤정(2012). 보육정책이 둘째 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은(2011). 보육료 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85-105.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통계청(2013). 2013년 사교육비조사 표본설계.

통계청(2014). 2014년 월별 가계동향조사.

통계청(2014). 2014 장래추계인구.

한국교육개발원(각 년도). 교육통계서비스.

행정자치부(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현재은(2014). 보육정책 변화와 여성의 시간 배분 변화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4). ChildCare and Early Childhood Learning. Productivity Commission Inquiry Report, Vol 2. Chapter 11. 449-487.

ChildCare Aware of America(2014). Parents and the high cost of child care. 2014 report.

Del Boca, D.(2015). The impact of child care costs and availability on mothers' labor supply. Working Papers(Discussion Paper No. 15/04). 7th Framework programme of the European Union.

Family and Childcare Trust(2015). Childcare Costs Survey 2015.

Computershare Vocher Services. Community playthings.

<국내 웹사이트>

각 시·도청 홈페이지

검경일보 홈페이지 <http://www.p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39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교육부: <http://www.moe.go.kr>

교육부 e-유치원 시스템: <http://childschoo1.moe.go.kr>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www.neis.go.kr>

뉴스에듀: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22>. “유아교육법 등 교육분야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학생들 실익은?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학연금법·사립학교법·학교폭력예방법 등” (2015. 12. 1일 보도).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보건복지부: www.mw.go.kr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마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보건복지부 따스아리 <http://blog.daum.net/mohwpr/12881682>.

복지로온라인신청: <http://online.bokjiro.go.kr>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http://csi.welfare.seoul.kr>

아이돌봄서비스: <https://idolbom.mogef.go.kr>

여성가족패널: <http://klowf.kwdi.re.kr>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 <http://mdss.kostat.go.kr>

한국노동패널: <http://www.kli.re.kr>

한국복지패널: <http://www.koweeps.re.kr>

행정자치부: www.moi.go.kr

<국외 웹사이트>

Alberta Human Services(캐나다 앨버타주): www.humanservices.alberta.ca

GOV.UK(영국): www.gov.uk/help-with-childcare-costs

Ministry of Education(뉴질랜드): www.lead.ece.govt.nz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Work and Income(뉴질랜드): <http://www.workandincome.govt.nz>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www.mcf.gov.bc.ca

Mychild.gov.au(호주): www.mychild.gov.au

OECD(2014). Education at a Glance: <http://www.oecd-ilibrary.org>

OECD Family Database: 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

The Guardian: www.theguardian.com

Toronto(캐나다): <http://www.toronto.ca>

Working for Families(뉴질랜드): <http://www.workingforfamilies.govt.nz>

Abstract

Estimation Study on children's(0-5 years) Education and Childcare Expenses III

Jinwha, Lee Jin-A, Park Ki-Won,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basic statistical data by investigating young children'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hildcare expenses and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young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care expenses and on the opinion poll results on financial support policy. This study investigated young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care expenses of 2,499 families from total of 16 cities and provinces except Jeju island to estimate the cost per child and per family according to age group,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education and childcare expenditures.

The education and childcare survey included questions related to general characteristic of each family's children and provided detailed analysis across segments such as cost of education(kindergarten), cost of childcare, and parenting payment(including half-day programs). Specifically, costs of education were segmented into cost of kindergarten, after school programs, specialized activities, and morning to night care. Costs of childcare were segmented into costs of childcare cent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ime-extended childcare. The necessary expenses for half-day program were included when analysing the parenting payment(including half-day programs)recipient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osts spent on individual care, part-time institutions, home-school materials, culture center, and individual or group tutoring sessions.

The total expenses of education and childcare for young children aged 0-5

are estimated to be 3,875,600,000,000 won, and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are influenced by the size of the region, parent's working status, family income, and the number of children. Also the estimate cost using average monthly private education is expected to be 1,2192,000,000,000 won, and the estimate cost using annualized coefficient is expected to be 1,779,000,000,000 won. The determinants of private education were the types of government-support, age of young children and family income.

Other than expense surveys, parent opinion polls related to education and childcare showed that there is a high agreement on setting price ceilings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lso showed relatively high levels of agreement that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has contributed to reducing the cost of education and childcare. However, increase in parenting payment did not increase with stay-at-home parenting intention.

Based on the survey result, we discussed the ways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caused by young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care expenses and to foster efficiency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y. These are the followings: first, necessity of supervisory organization's management after setting price ceilings on child education organization; second,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previously proposed policy such as childcare leave system and flexible work arrangements, and consistent development of child support policy tailored to each family; third, necessity of introducing investigation system for cost of young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care at national level. Especially, policy studies are needed to look into the definition of 'private education'.

부 록

- 부록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 부록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 부록 3.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 부록 4.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 부록 5.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가구특성
- 부록 6.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수
- 부록 7.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분포
- 부록 8.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표본
- 부록 9. 영유아교육비 추정을 위한 표본 행정동
- 부록 10.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설문지

부록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부표 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단위: 원

자치구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원)	현장학습비 (분기)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원)	급식비 (1식)	특성화비 (월)
종로구	95,000	60,000	40,000	85,000	1,650	15,000
중구	80,000	50,000	30,000	85,000	1,500	-
용산구	100,000	55,000	40,000	85,000	1,000	20,000
성동구	55,000	66,000	40,000	30,000	1,100	-
광진구	100,000	66,000	33,000	85,000	2,000	30,000
동대문구	90,000	52,500	30,000	55,000	2,000	15,000
중랑구	50,000	72,000	-	70,000	1,750	30,000
성북구	90,000	50,000	30,000	50,000	1,750	20,000
강북구	110,000	60,000	30,000	70,000	1,000	15,000
도봉구	65,000	45,000	20,000	30,000	1,500	10,000
노원구	55,000	55,000	20,000	33,000	1,000	-
은평구	80,000	55,000	32,000	50,000	1,500	-
서대문구	80,000	1세 이하 50,000 2세 이상 52,500	40,000	50,000	2,000	-
마포구	95,000	60,000	27,500	30,000	1,250	-
양천구	100,000	50,000	30,000	80,000	1,200	-
강서구	100,000	60,000	35,000	70,000	1,500	20,000
구로구	100,000	55,000	2인:45,000 1인:35,000	80,000 85,000(5세)	1,500	20,000
금천구	90,000	60,000	-	60,000	2,000	20,000
영등포구	102,960	66,000 (39인 초과 60,500)	33,000	85,120 (49인 초과 65,120)	1,570	20,000
동작구	93,600	58,750	30,000	77,390	1,500	20,000
관악구	100,000	57,500	-	77,000	1,650	15,000
서초구	102,000	60,000	55,000	84,000	1,650	15,000
강남구	100,000	66,000	55,000	85,000	1,100	20,000
송파구	100,000	66,000	33,000	85,000	1,100	15,000
강동구	100,000	50,000	30,000	70,000	1,500	-
평 균	92,740	57,930	34,480	66,660	1,490	18,820

자료: 서울특별시청(2015). 2015년도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현황.

부록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표 2〉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단위: 원

자치구	입학준비금 (원)	현장학습비 (분기)	차량운행비 (월)	행사비 (원)	급식비 (1식)	특성화비 (월)
종로구	95,000	60,000	40,000	85,000	1,650	15,000
중구	80,000	55,000	40,000	85,000	1,500	-
용산구	100,000	60,000	40,000	85,000	1,000	20,000
성동구	55,000	66,000	40,000	30,000	1,100	15,000
광진구	100,000	66,000	33,000	85,000	2,000	30,000
동대문구	90,000	52,500	30,000	55,000	2,000	15,000
중랑구	50,000	72,000	33,000	70,000	1,750	30,000
성북구	90,000	50,000	30,000	55,000	1,750	20,000
강북구	110,000	60,000	30,000	70,000	1,000	15,000
도봉구	65,000	45,000	20,000	30,000	1,500	10,000
노원구	55,000	55,000	20,000	33,000	1,000	-
은평구	80,000	55,000	32,000	50,000	1,500	15,000
서대문구	80,000	1세 이상 50,000 2세 이상 52,500	40,000	50,000	2,000	-
마포구	95,000	60,000	27,500	30,000	1,250	-
양천구	100,000	50,000	30,000	80,000	1,200	15,000
강서구	100,000	60,000	35,000	70,000	1,500	20,000
구로구	100,000	60,000	2인:45,000 1인:35,000	80,000 85,000(5세)	1,500	20,000
금천구	90,000	60,000	27,500	60,000	2,000	20,000
영등포구	102,960	66,000 (39인 초과 60,500)	33,000	85,120 (49인초과 65,120)	1,570	20,000
동작구	93,600	58,750	30,000	77,390	1,500	20,000
관악구	민간 100,000 가정 80,000	57,500	30,000	77,000	1,650	20,000
서초구	102,000	60,000	55,000	84,000	1,650	34,000
강남구	100,000	66,000	55,000	85,000	1,100	40,000
송파구	100,000	66,000	33,000	85,000	1,100	30,000
강동구	100,000	50,000	30,000	70,000	1,500	30,000

자료: 서울특별시청(2015). 2015년도 자치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현황.

부록 3.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부표 3〉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국공립 어린이집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영비	행사비	아침· 저녁 급식비	지자체 특성화 비용
	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연단위	연단위						
수원시		100,000	60,000	30,000	20,000	17,000	2,000	45,000
성남시	0	100,000	68,000	33,000	20,000	25,000	1,500	25,000
부천시	4,000	96,000	65,000	40,000	20,000	240,000	1,500	40,000
용인시	7,000	93,000	68,000	40,000	20,000	18,000	1,500	40,000
안산시	5,000	95,000	70,000	114,000	20,000	20,000	1,700	35,000
안양시	0	100,000	70,000	120,000	20,000	20,000	2,000	40,000
평택시	5,000	95,000	60,000	40,000	20,000	15,000	60,000	30,000
시흥시	5,000	95,000	55,000	35,000	20,000	120,000	1,500	30,000
화성시	10,000	90,000	75,000	35,000	20,000	15,000	66,000	40,000
광명시	0	100,000	70,000	90,000	20,000	120,000	1,500	30,000
군포시		100,000	70,000	30,000	20,000	240,000	1,800	50,000
광주시		100,000	80,000	40,000	20,000	180,000	1,500	40,000
김포시	0	93,000	60,000	55,000	20,000	159,000	3,000	40,000
이천시	0	100,000	65,000	30,000	20,000	180,000	1,600	30,000
안성시	10,000	90,000	60,000	100,000	20,000	250,000	2,000	30,000
오산시	6,000	94,000	66,000	35,000	20,000	216,000	1,900	30,000
하남시	10,000	90,000	80,000	40,000	20,000	240,000	1,500	3,500
의왕시	0	100,000	75,000	40,000	20,000	120,000	1,500	3,500
여주군		100,000	70,000	75,000	20,000	115,000	1,400	3,500
양평군	7,000	93,000	67,000	35,000	20,000	189,000	1,340	37,000
과천시	0	100,000	70,000	90,000	20,000	240,000	1,200	20,000
고양시	5,000	95,000	70,000	45,000	20,000	20,000	2,000	50,000
남양주시	-	100,000	80,000	30,000	20,000	180,000	60,000	50,000
의정부시	5,000	95,000	59,000	120,000	20,000	154,000	1,500	40,000
파주시	7,000	93,000	70,000	45,000	20,000	240,000	1,200	40,000
구리시	10,000	90,000	80,000	90,000	20,000	180,000	1,300	50,000
양주시	10,000	90,000	65,000	45,000	20,000	154,000	1,000	40,000
포천시	10,000	90,000	70,000	30,000	20,000	240,000	2,000	30,000
동두천시	10,000	90,000	70,000	30,000	20,000	190,000	1,000	45,000
가평군	0	100,000	60,000	25,000	20,000	180,000	45,000	45,000
연천군	10,000	90,000	70,000	28,000	20,000	240,000	35,000	50,000

자료: 경기도청(2015).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부록 4.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표 4〉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민간·가정 어린이집

단위: 원

구분	입학준비금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차량 운행비	행사비	아침· 저녁 급식비	지자체 특성화 비용
	상해 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연단위	연단위						
수원시		100,000	60,000	30,000	20,000	17,000	2,000	45,000
성남시	0	100,000	68,000	33,000	20,000	25,000	1,500	25,000
부천시	4,000	96,000	65,000	40,000	20,000	240,000	1,500	40,000
용인시	7,000	93,000	68,000	40,000	20,000	18,000	1,500	40,000
안산시	5,000	95,000	70,000	114,000	20,000	20,000	1,700	35,000
안양시	0	100,000	70,000	120,000	20,000	20,000	2,000	40,000
평택시	5,000	95,000	60,000	40,000	20,000	15,000	60,000	30,000
시흥시	5,000	95,000	55,000	35,000	20,000	120,000	1,500	30,000
화성시	10,000	90,000	75,000	35,000	20,000	15,000	66,000	40,000
광명시	0	100,000	70,000	90,000	20,000	120,000	1,500	30,000
군포시		100,000	70,000	30,000	20,000	240,000	1,800	50,000
광주시		100,000	80,000	40,000	20,000	180,000	1,500	40,000
김포시	0	93,000	60,000	55,000	20,000	159,000	3,000	40,000
이천시	0	100,000	65,000	30,000	20,000	180,000	1,600	30,000
안성시	10,000	90,000	60,000	100,000	20,000	250,000	2,000	30,000
오산시	6,000	94,000	66,000	35,000	20,000	216,000	1,900	30,000
하남시	10,000	90,000	80,000	40,000	20,000	240,000	1,500	3,500
의왕시	0	100,000	75,000	40,000	20,000	120,000	1,500	3,500
여주군		100,000	70,000	75,000	20,000	115,000	1,400	3,500
양평군	7,000	93,000	67,000	35,000	20,000	189,000	1,340	37,000
과천시	0	100,000	70,000	90,000	20,000	240,000	1,200	20,000
고양시	5,000	95,000	70,000	45,000	20,000	20,000	2,000	50,000
남양주시	-	100,000	80,000	30,000	20,000	180,000	60,000	50,000
의정부시	5,000	95,000	59,000	120,000	20,000	154,000	1,500	40,000
파주시	7,000	93,000	70,000	45,000	20,000	240,000	1,200	40,000
구리시	10,000	90,000	80,000	90,000	20,000	180,000	1,300	50,000
양주시	10,000	90,000	65,000	45,000	20,000	154,000	1,000	40,000
포천시	10,000	90,000	70,000	30,000	20,000	240,000	2,000	30,000
동두천시	10,000	90,000	70,000	30,000	20,000	190,000	1,000	45,000
가평군	0	100,000	60,000	25,000	20,000	180,000	45,000	45,000
연천군	10,000	90,000	70,000	28,000	20,000	240,000	35,000	50,000

자료: 경기도청(2015), 경기도 자치시·군·구별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부록 5. 가중치 적용하지 않은 가구특성

〈부표 5〉 조사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비율	빈도	구분	비율	빈도
전체	100.0	2,500	전체	100.0	2,500
지역규모			가구원수		
대도시	64.4	1,610	3인 이하	47.9	1,198
중소도시	27.2	680	4인	42.7	1,067
읍면지역	8.4	210	5인 이상	9.4	235
부연령(모연령)			총 자녀수		
30세이하	4.8(14.6)	120(365)	1인	50.8	1,269
31~35세	29.2(43)	729(1,074)	2인	42.9	1,073
36~40세	48.5(35.3)	1,212(882)	3인 이상	6.3	158
41~45세	14.9(6.4)	372(161)	미취학 영유아 자녀수		
46세 이상	2.4(0.6)	60(16)	1인	77.6	1,940
기타	0.3(0.1)	7(2)	2인	21.7	542
부학력(모학력)			3인 이상	0.7	18
고졸이하	17.7(27.2)	443(666)	조사응답자		
전문대졸	23.1(30.2)	578(754)	어머니	94.7	2,367
대학교졸	56.7(42.0)	1,417(1,066)	아버지	4.6	114
대학원졸	2.2(0.5)	55(12)	조부모	0.8	19
기타	0.3(0.1)	7(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III」 결과임.

〈부표 6〉 조사 가구의 경제적 특성⁴⁵⁾

단위: %(명)

구분	비율	빈도	구분	비율	빈도
전체	100	2,500	전체		
월평균 소득			부고용형태(모고용형태 N=894)		
199만원 이하	2.9	73	전일제	97.6 (28.1)	2,441 (703)
200~299만원	28.2	704	비전일제	2.0 (8.6)	50 (214)
300~399만원	37.6	940	무직(가사직)	0.1 (63.2)	2 (1,581)
400~499만원	18.2	455	기타	0.3 (0.1)	7 (2)
500만원 이상	13.1	328	부모취업유무		
부평균소득(모평균소득 N=894)			맞벌이	36.4	909
199만원 이하	5.9 (63.6)	146 (583)	외벌이	63.6	1,590

45) 조사가구 2,500가구에서 부모 무직 1가구, 종일제영아반 돌봄 서비스 이용 1가구는 이후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사대상의 가중치 적용으로 2,499가구로 환산되어 적용함.

구분	비율	빈도	구분	비율	빈도
200~299만원	44.4 (29.3)	1,106 (269)	기타	0.0	1
300~399만원	38.9 (5.5)	969 (50)	부직종(모직종)		
400~499만원	7.8 (1.0)	194 (9)	관리직	3.4 (0.5)	85 (5)
500만원 이상	3.1 (0.7)	76 (6)	전문직	5.3 (5.0)	131 (46)
가구소유형태			사무직	50.5 (35.8)	1,259 (328)
자가	42.8	1,069	서비스직	8.4 (31.4)	210 (288)
전세	52.8	1,320	판매직	4.9 (14.2)	122 (130)
전·월세	3.0	75	농림어업직	1.6 (0.7)	399 (6)
월세	1.4	36	단순기능직	6.7 (1.7)	167 (16)
부 1일 근로시간(모 1일 근로시간 N=894)			단순노무직	0.9 (2.1)	23 (19)
5시간 미만	- (5.3)	- (49)	군인	0.8 (0.2)	19 (2)
5~8시간 미만	0.1 (12.4)	2 (114)	전문기술직	6.5 (0.5)	163 (5)
8시간 이상	99.9 (82.2)	2,489 (754)	자영업	9.1 (7.7)	228 (71)
기초생활수급여부			장치, 기계조작 등	1.8 (0.1)	45 (1)
예	2.4	59	무직	0.1 -	2 -
아니오	97.6	2,44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III」 결과임.

부록 6.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수

〈부표 7〉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수

단위: 개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대도시	서울특별시	423	-	-	423
	부산광역시	202	2	3	207
	대구광역시	130	5	6	141
	인천광역시	131	1	22	154
	광주광역시	95	-	-	95
	대전광역시	78	-	-	78
	울산광역시	44	4	8	56
	수원시	41	-	-	41
	성남시	49	-	-	49
	안양시	31	-	-	31
	부천시	36	-	-	36
	안산시	25	-	-	25
	고양시	39	-	-	39
	용인시	24	1	6	31
	청주시	31	2	10	43
	천안시	18	4	8	30
	전주시	33	-	-	33
	포항시	15	4	11	30
	창원시	55	1	6	62
중소도시	과천시	6	-	-	6
	광명시	18	-	-	18
	경기 광주시	3	3	4	10
	구리시	8	-	-	8
	군포시	11	-	-	11
	김포시	7	3	3	13
	남양주시	7	6	4	17
	동두천시	8	-	-	8
	시흥시	17	-	-	17
	안성시	3	1	11	15
	양주시	6	1	4	11
	여주시	3	1	8	12
	오산시	6	-	-	6
	의왕시	6	-	-	6
	의정부시	15	-	-	15
	이천시	4	2	8	14
	과주시	7	4	7	18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평택시	13	3	6	22
	포천시	2	1	11	14
	하남시	12	-	-	12
	화성시	10	4	10	24
	강릉시	13	1	7	21
	동해시	10	-	-	10
	삼척시	4	3	6	13
	속초시	8	-	-	8
	원주시	16	1	8	25
	춘천시	15	1	9	25
	태백시	8	-	-	8
	거제시	10	-	12	22
	김해시	12	1	6	19
	밀양시	5	3	9	17
	사천시	7	1	7	15
	양산시	8	1	4	13
	진주시	16	1	15	32
	통영시	8	1	6	15
	경산시	7	2	6	15
	경주시	11	4	8	23
	구미시	19	2	6	27
	김천시	7	1	14	22
	문경시	5	4	7	16
	상주시	6	1	21	28
	안동시	10	1	13	24
	영주시	9	1	9	19
	영천시	5	1	10	16
	광양시	5	1	6	12
	나주시	7	1	12	20
	목포시	23	-	-	23
	순천시	13	1	11	25
	여주시	20	3	7	30
	군산시	16	1	10	27
	김제시	4	1	14	19
	남원시	7	1	15	23
	익산시	14	1	14	29
	정읍시	8	1	14	23
	세종특별자치시	3	1	9	13
	제주시	19	4	3	26
	서귀포시	12	3	2	17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계룡시	1	-	3	4
	공주시	6	1	9	16
	논산시	2	2	11	15
	당진시	3	2	9	14
	보령시	5	1	12	18
	서산시	5	1	9	15
	아산시	6	2	9	17
	제천시	9	1	7	17
	충주시	12	1	12	25
군	가평군	-	1	5	6
	양평군	-	1	11	12
	연천군	-	2	8	10
	고성군	-	2	3	5
	양구군	-	1	4	5
	양양군	-	1	5	6
	영월군	-	2	8	10
	인제군	-	2	5	7
	정선군	-	5	5	10
	철원군	-	4	4	8
	평창군	-	1	8	9
	홍천군	-	1	9	10
	화천군	-	1	4	5
	횡성군	-	1	8	9
	거창군	-	1	11	12
	고성군	-	1	13	14
	남해군	-	1	9	10
	산청군	-	1	10	11
	의령군	-	1	12	13
	창녕군	-	2	12	14
	하동군	-	1	12	13
	함안군	-	2	8	10
	함양군	-	1	10	11
	합천군	-	1	16	17
	고령군	-	1	7	8
	군위군	-	1	7	8
	봉화군	-	1	9	10
	성주군	-	1	9	10
영덕군	-	1	10	11	
영양군	-	1	5	6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예천군	-	1	11	12
	울릉군	-	1	3	4
	울진군	-	2	9	11
	의성군	-	1	17	18
	청도군	-	4	7	11
	청송군	-	1	7	8
	칠곡군	-	3	5	8
	강진군	-	1	10	11
	고흥군	-	4	14	18
	곡성군	-	1	10	11
	구례군	-	1	7	8
	담양군	-	1	11	12
	무안군	-	4	6	10
	보성군	-	2	11	13
	신안군	-	5	19	24
	영광군	-	3	9	12
	영암군	-	3	9	12
	완도군	-	4	10	14
	장성군	-	1	10	11
	장흥군	-	3	7	10
	진도군	-	1	8	9
	함평군	-	1	8	9
	해남군	-	1	13	14
	화순군	-	1	13	14
	고창군	-	1	13	14
	무주군	-	1	5	6
	부안군	-	1	12	13
	순창군	-	1	10	11
	완주군	-	2	11	13
	임실군	-	1	11	12
	장수군	-	1	6	7
	진안군	-	1	10	11
	금산군	-	1	9	10
	부여군	-	1	15	16
	서천군	-	2	11	13
	예산군	-	2	10	12
	청양군	-	1	9	10
	태안군	-	2	6	8
	홍성군	-	2	9	11
	괴산군	-	1	10	11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단양군	-	2	6	8
	보은군	-	1	10	11
	영동군	-	1	10	11
	옥천군	-	1	8	9
	음성군	-	2	7	9
	증평군	-	1	1	2
	진천군	-	1	6	7
	총합계	2,091	237	1,223	3,551

부록 7.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분포

〈부표 8〉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분포

단위: 세대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대도시	서울특별시	4,197,478			4,197,478
	부산광역시	1,371,827	26,909	31,708	1,430,444
	대구광역시	906,245	48,965	22,504	977,714
	인천광역시	1,103,621	9,654	31,957	1,145,232
	광주광역시	577,941			577,941
	대전광역시	595,216			595,216
	울산광역시	362,121	54,956	30,152	447,229
	수원시	457,894			457,894
	성남시	389,265			389,265
	안양시	223,366			223,366
	부천시	327,475			327,475
	안산시	283,031			283,031
	고양시	387,074			387,074
	용인시	302,432	12,938	35,799	351,169
	청주시	276,126	30,277	27,873	334,276
	천안시	186,984	40,446	18,630	246,060
	전주시	253,702			253,702
	포항시	134,910	52,506	20,981	208,397
	창원시	380,339	8,767	25,326	414,432
대도시 합계		12,717,047	285,418	244,930	13,247,395
중소도시	과천시	25,301			25,301
	광명시	128,507			128,507
	경기 광주시	50,721	58,470	11,738	120,929
	구리시	71,537			71,537
	군포시	106,609			106,609
	김포시	85,595	33,665	11,821	131,081
	남양주시	83,944	130,638	26,697	241,279
	동두천시	41,771			41,771
	시흥시	155,729			155,729
	안성시	20,808	21,363	32,043	74,214
	양주시	51,404	11,203	16,652	79,259
	여주시	22,033	7,016	17,579	46,628
	오산시	81,114			81,114
	의왕시	58,318			58,318
	의정부시	170,576			170,576
이천시	33,896	20,828	25,879	80,603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과주시	96,399	44,415	28,295	169,109
	평택시	116,718	41,712	26,628	185,058
	포천시	14,186	18,567	35,046	67,799
	하남시	62,842			62,842
	화성시	108,390	67,667	38,837	214,894
	강릉시	70,199	8,966	14,087	93,252
	동해시	40,192			40,192
	삼척시	17,656	11,166	6,153	34,975
	속초시	37,005			37,005
	원주시	108,524	8,227	19,282	136,033
	춘천시	89,987	3,290	20,815	114,092
	태백시	22,404			22,404
	거제시	74,153		25,920	100,073
	김해시	162,197	16,584	17,398	196,179
	밀양시	21,246	7,386	20,034	48,666
	사천시	22,113	7,972	20,251	50,336
	양산시	69,382	24,074	21,779	115,235
	진주시	107,143	3,547	26,068	136,758
	통영시	35,493	2,622	20,644	58,759
	경산시	60,632	26,490	18,353	105,475
	경주시	60,058	28,959	23,353	112,370
	구미시	141,037	17,216	9,200	167,453
	김천시	35,697	3,701	19,225	58,623
	문경시	18,048	5,669	10,514	34,231
	상주시	21,393	3,166	21,438	45,997
	안동시	49,806	3,561	18,646	72,013
	영주시	31,273	5,540	11,297	48,110
	영천시	22,313	5,983	18,424	46,720
	광양시	31,799	19,187	8,052	59,038
	나주시	19,288	3,870	21,775	44,933
	목포시	99,760			99,760
	순천시	73,692	1,543	31,238	106,473
	여수시	92,139	6,334	18,525	116,998
	군산시	95,870	1,709	16,343	113,922
	김제시	18,550	1,600	21,281	41,431
	남원시	20,640	1,932	14,547	37,119
	익산시	92,463	3,357	26,544	122,364
	정읍시	29,134	3,235	19,762	52,131
	세종특별자치시	30,585	18,679	23,469	72,733
	계룡시	3,080		10,737	13,817
	공주시	25,322	3,933	19,426	48,681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논산시	20,660	11,688	23,481	55,829
	당진시	24,566	17,349	29,461	71,376
	보령시	25,079	3,445	17,878	46,402
	서산시	35,188	6,605	27,129	68,922
	아산시	47,490	29,209	44,648	121,347
	제천시	47,558	3,513	8,647	59,718
	충주시	64,957	2,689	19,432	87,078
중소도시	합계	3,802,169	789,540	1,036,471	5,628,180
군	가평군		8,788	19,447	28,235
	양평군		12,301	35,629	47,930
	연천군		11,836	9,089	20,925
	고성군		7,354	8,131	15,485
	양구군		6,380	4,782	11,162
	양양군		5,291	8,013	13,304
	영월군		10,715	9,006	19,721
	인제군		4,306	11,302	15,608
	정선군		12,639	6,821	19,460
	철원군		17,571	4,289	21,860
	평창군		3,918	16,575	20,493
	홍천군		14,504	16,840	31,344
	화천군		4,086	9,347	13,433
	횡성군		8,481	12,069	20,550
	거창군		16,173	11,551	27,724
	고성군		11,027	14,843	25,870
	남해군		5,654	16,605	22,259
	산청군		3,236	14,749	17,985
	의령군		4,146	10,303	14,449
	창녕군		12,849	17,244	30,093
	하동군		4,683	18,709	23,392
	함안군		16,065	14,733	30,798
	함양군		7,936	11,293	19,229
	합천군		5,012	19,181	24,193
	고령군		4,874	11,258	16,132
	군위군		3,816	8,275	12,091
	봉화군		4,600	11,716	16,316
	성주군		5,860	15,526	21,386
	영덕군		5,233	14,777	20,010
	영양군		3,497	5,272	8,769
예천군		7,507	13,921	21,428	
울릉군		3,771	1,594	5,365	
울진군		7,547	17,229	24,776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의성군		6,448	20,898	27,346
	청도군		9,372	11,941	21,313
	청송군		2,551	10,682	13,233
	칠곡군		38,604	13,992	52,596
	강진군		6,551	12,115	18,666
	고흥군		10,738	23,875	34,613
	곡성군		3,569	11,491	15,060
	구례군		4,852	7,613	12,465
	담양군		6,077	15,768	21,845
	무안군		21,126	13,689	34,815
	보성군		11,036	11,257	22,293
	신안군		5,631	16,617	22,248
	영광군		15,147	10,823	25,970
	영암군		13,415	13,934	27,349
	완도군		12,986	12,458	25,444
	장성군		5,987	15,325	21,312
	장흥군		11,887	8,181	20,068
	진도군		4,544	11,285	15,829
	함평군		4,262	13,244	17,506
	해남군		9,971	25,301	35,272
	화순군		15,758	13,549	29,307
	고창군		8,904	19,586	28,490
	무주군		4,071	7,652	11,723
	부안군		9,041	18,419	27,460
	순창군		4,085	9,398	13,483
	완주군		16,442	22,604	39,046
	임실군		3,256	10,815	14,071
	장수군		3,271	7,606	10,877
	진안군		4,716	7,815	12,531
	금산군		9,531	15,455	24,986
	부여군		10,077	22,502	32,579
	서천군		11,659	14,981	26,640
	예산군		19,139	18,259	37,398
	청양군		4,478	10,473	14,951
	태안군		16,499	13,006	29,505
	홍성군		22,484	17,567	40,051
	괴산군		4,633	14,512	19,145
	단양군		7,566	6,983	14,549
	보은군		6,468	9,485	15,953
	영동군		9,542	14,026	23,568
	옥천군		11,575	11,415	22,990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음성군		17,601	24,895	42,496
	증평군		14,308	1,026	15,334
	진천군		12,556	16,523	29,079
	군합계	0	714,070	1,029,160	1,743,230
	총합계	33,038,432	2,863,986	3,591,962	39,494,380

부록 8.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표본

〈부표 9〉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별 동읍면의 세대수 표본

단위: 세대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대도시	서울특별시	508	508	0	0
	부산광역시	173	166	3	4
	대구광역시	119	110	6	3
	인천광역시	139	134	1	4
	광주광역시	70	70	0	0
	대전광역시	72	72	0	0
	울산광역시	54	44	7	4
	수원시	56	56	0	0
	성남시	47	47	0	0
	안양시	27	27	0	0
	부천시	40	40	0	0
	안산시	34	34	0	0
	고양시	47	47	0	0
	용인시	43	37	2	4
	청주시	41	33	4	3
	천안시	30	23	5	2
	전주시	31	31	0	0
	포항시	25	16	6	3
	창원시	50	46	1	3
대도시 합계		1,606	1,541	35	30
중소도시	과천시	3	3	0	0
	광명시	16	16	0	0
	경기 광주시	15	7	7	1
	구리시	9	9	0	0
	군포시	13	13	0	0
	김포시	15	10	4	1
	남양주시	29	10	16	3
	동두천시	5	5	0	0
	시흥시	19	19	0	0
	안성시	10	3	3	4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양주시	9	6	1	2
	여주시	6	3	1	2
	오산시	10	10	0	0
	의왕시	7	7	0	0
	의정부시	21	21	0	0
	이천시	10	4	3	3
	파주시	21	13	5	3
	평택시	22	14	5	3
	포천시	8	2	2	4
	하남시	8	8	0	0
	화성시	26	13	8	5
	강릉시	12	9	1	2
	동해시	5	5	0	0
	삼척시	4	2	1	1
	속초시	4	4	0	0
	원주시	16	13	1	2
	춘천시	14	11	0	3
	태백시	3	3	0	0
	거제시	12	9	0	3
	김해시	24	20	2	2
	밀양시	6	3	1	2
	사천시	6	3	1	2
	양산시	14	8	3	3
	진주시	16	13	0	3
	통영시	7	4	0	3
	경산시	12	7	3	2
	경주시	14	7	4	3
	구미시	20	17	2	1
	김천시	7	5	0	2
	문경시	4	2	1	1
	상주시	6	3	0	3
	안동시	8	6	0	2
	영주시	6	4	1	1
	영천시	6	3	1	2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광양시	7	4	2	1
	나주시	5	2	0	3
	목포시	12	12	0	0
	순천시	13	9	0	4
	여수시	14	11	1	2
	군산시	14	12	0	2
	김제시	5	2	0	3
	남원시	5	3	0	2
	익산시	15	12	0	3
	정읍시	6	4	0	2
	세종특별자치시	9	4	2	3
	계룡시	2	0	0	2
	공주시	5	3	0	2
	논산시	7	3	1	3
	당진시	9	3	2	4
	보령시	5	3	0	2
	서산시	8	4	1	3
	아산시	15	6	4	5
	제천시	7	6	0	1
	충주시	11	8	0	3
	중소도시 합계	682	468	90	124
군	가평군	3	0	1	2
	양평군	5	0	1	4
	연천군	2	0	1	1
	고성군	2	0	1	1
	양구군	2	0	1	1
	양양군	2	0	1	1
	영월군	2	0	1	1
	인제군	2	0	1	1
	정선군	3	0	2	1
	철원군	3	0	2	1
	평창군	2	0	0	2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홍천군	4	0	2	2
	화천군	1	0	0	1
	횡성군	2	0	1	1
	거창군	3	0	2	1
	고성군	3	0	1	2
	남해군	3	0	1	2
	산청군	2	0	0	2
	의령군	2	0	1	1
	창녕군	4	0	2	2
	하동군	3	0	1	2
	함안군	4	0	2	2
	함양군	2	0	1	1
	합천군	3	0	1	2
	고령군	2	0	1	1
	군위군	1	0	0	1
	봉화군	2	0	1	1
	성주군	3	0	1	2
	영덕군	3	0	1	2
	영양군	1	0	0	1
	예천군	3	0	1	2
	울릉군	0	0	0	0
	울진군	3	0	1	2
	의성군	4	0	1	3
	청도군	2	0	1	1
	청송군	1	0	0	1
	칠곡군	7	0	5	2
	강진군	2	0	1	1
	고흥군	4	0	1	3
	곡성군	1	0	0	1
	구례군	2	0	1	1
	담양군	3	0	1	2
	무안군	5	0	3	2
	보성군	2	0	1	1
	신안군	3	0	1	2

지역규모	시도	동부	읍부	면부	합계
	영광군	3	0	2	1
	영암군	4	0	2	2
	완도군	4	0	2	2
	장성군	3	0	1	2
	장흥군	2	0	1	1
	진도군	2	0	1	1
	함평군	3	0	1	2
	해남군	4	0	1	3
	화순군	4	0	2	2
	고창군	3	0	1	2
	무주군	1	0	0	1
	부안군	3	0	1	2
	순창군	1	0	0	1
	완주군	5	0	2	3
	임실군	1	0	0	1
	장수군	1	0	0	1
	진안군	2	0	1	1
	금산군	3	0	1	2
	부여군	4	0	1	3
	서천군	3	0	1	2
	예산군	4	0	2	2
	청양군	2	0	1	1
	태안군	4	0	2	2
	홍성군	5	0	3	2
	괴산군	3	0	1	2
	단양군	2	0	1	1
	보은군	2	0	1	1
	영동군	3	0	1	2
	옥천군	2	0	1	1
	음성군	5	0	2	3
	증평군	2	0	2	0
	진천군	4	0	2	2
	군합계	212	0	89	123
	총합계	2,500	2,009	214	277

부록 9. 영유아교육비 추정을 위한 표본 행정동

〈부표10〉 영유아교육비 추정을 위한 표본 행정동

단위: 세대

권역	동/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세대
대도시	동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7,379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제3동	2,98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00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8,76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제1동	4,079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제2동	9,4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제1동	8,868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1,89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제1동	14,3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제2동	10,666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제2동	9,45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제3동	7,74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	12,6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제3동	11,209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제1동	8,871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3동	13,274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2동	8,714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제2동	11,954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제2동	8,8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제3동	8,26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9,47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제2동	8,27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10,497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15,471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제4동	9,7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9,86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제1동	9,60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제1동	14,78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10,518

권역	동/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세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제3동	6,795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1동	20,861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제5동	6,30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15,166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동	9,3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본동	4,346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10,23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1동	5,8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4동	9,54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2동	10,61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본동	11,37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4동	10,57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제1동	15,852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제1동	6,352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제2동	3,934
		부산광역시	서구	충무동	4,371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제1동	2,4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제2동	4,24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제1동	8,0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제1동	10,87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제2동	5,603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제1동	6,842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제1동	15,722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제3동	5,774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제2동	6,47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제2동	12,9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제2동	12,598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제2동	11,40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제1동	4,08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제2동	5,533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3,277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제2동	6,191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제2동	5,532

권역	동/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세대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제1동	11,755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5,386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4동	5,52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4,994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2동	4,260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0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	4,785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6동	4,874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2동	4,730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1동	9,254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	4,442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6,15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	12,0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1동	9,209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13,829
		인천광역시	중구	동인천동	3,414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2동	3,917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4동	7,052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2동	10,512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7,078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3동	5,93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14,3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9,474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1동	7,960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1동	8,15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8,59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18,36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5,740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524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5,114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10,123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	6,359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1동	5,32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동	2,829

권역	동/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세대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2,216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5,519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11,162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6,731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1동	4,404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5,363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3,166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2,148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8,993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1,641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9,90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10,019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2동	4,146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7,569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866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1동	6,965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6,95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7,78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동	21,73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7,14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61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6,88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3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6,44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6,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8,5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49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9,24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5,2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3동	6,19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1동	13,214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424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2동	9,504




권역	동/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세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1동	18,44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8,96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3,99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3,79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0,3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	7,45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동	15,03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8,44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7,48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2,40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수곡1동	7,13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제1동	9,4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2동	5,55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	14,27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3,1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5,57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2동	4,99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대동	13,033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9,285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	12,25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11,306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동	3,6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1동	5,687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5,192
	읍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18,340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10,86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1,55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12,153
	면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1,54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8,03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2,732
	중소도시	동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3동
경기도			광명시	광명1동	5,914

권역	동/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세대
		경기도	광명시	하안2동	6,653
		경기도	평택시	신평동	10,934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동	4,261
		경기도	구리시	수택1동	10,200
		경기도	오산시	신장동	19,949
		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	14,638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361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4,009
		경기도	파주시	금촌1동	11,127
		경기도	안성시	안성3동	8,098
		경기도	화성시	기배동	4,875
		경기도	양주시	회천3동	10,432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5,945
		강원도	원주시	명륜1동	4,088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	9,803
		강원도	강릉시	경포동	2,612
		강원도	태백시	황연동	2,518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2,162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직동	4,063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8,395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5동	3,501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7,041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3,886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4,687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상동	8,122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4,693
		전라남도	목포시	동명동	3,360
		전라남도	목포시	부흥동	4,769
		전라남도	여수시	문수동	8,750
		전라남도	순천시	조곡동	3,038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동	3,025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	3,373
		경상북도	김천시	대곡동	8,912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7,617

권역	동/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세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2동	2,365
		경상북도	영주시	휴천3동	3,695
		경상북도	상주시	동성동	1,809
		경상북도	경산시	동부동	14,557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5,362
		경상남도	사천시	동서동	3,639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서부동	4,166
		경상남도	거제시	마전동	2,329
		경상남도	양산시	강서동	3,793
		세종특별시		한솔동	6,526
		세종특별시		아름동	14,819
읍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25,197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12,06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25,53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8,227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3,297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3,235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3,131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5,983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2,622
면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12,082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5,95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1,901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391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1,457
		전라북도	익산시	오산면	3,862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984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1,659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1,197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2,910
		경상남도	진주시	정촌면	1,403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4,281

권역	동/읍/면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체세대
군지역	읍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8,481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6,380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9,515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6,620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4,75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4,886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2,383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913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7,338
	면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1,235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1,192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1,050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2,007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850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1,004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1,529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2,117
		경상북도	의성군	비안면	1,379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5,096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1,355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1,096

부록 10.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 설문지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Ⅲ)-유치원이용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면접원 000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2015년 일반연구과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Ⅲ)」에서 가구 단위별 취학전 만 0~5세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보호자)의 응답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방문면담조사는 약 40~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조사주관기관			조사대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현대리서치연구소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아학비(유치원) 수혜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_____ 째 자녀]

유치원 이용 현황

문1. 자녀의 유치원은 어떤 형태입니까?

- 1) 공립초등병설유치원 2) (국)공립단설유치원 3) 사립법인유치원 4) 사립사인유치원

문2. 자녀가 유치원에서 이용하는 하루 일과 과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아침돌봄 2) 기본교육과정(누리과정) 3) 방과후 과정
 4) 방과후 특성화 활동 5) 저녁돌봄

문3. 자녀의 유치원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유치원 이용과정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기록)

문2번의 자녀 유치원 이용과정에 맞춰서 등원 및 하원시간을 적어주십시오. (예: 2번에서 1) 아침돌봄, 2) 기본교육과정(누리과정), 3) 방과후 과정을 선택했다면 1) 아침돌봄 시작시각과 3) 방과후 과정 종료 시각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시간기록은 하원시간이 오후 2시인 경우, 14시 00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문3-1. 등 원 시 간 (유치원 이용 시작시간)	_____시 _____분	문3-2. 하 원 시 간 (유치원 이용 종료시간)	_____시 _____분	⇒	총 _____시간 _____분
--------------------------------	---------------	--------------------------------	---------------	---	------------------

문4. 유치원에서 유아학비 정책 및 수혜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1) 예 → 문4-1로 2) 아니오 → 문4-2로

문4-1. (예인 경우) 만약 유치원에서 안내를 받으셨다면, 어떤 방법이었습니다습니까?

- 1) 학부모 요청에 의한 개별 설명 2) 원장의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

- 1)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 2)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받기 위해
- 3) 질 높은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기 위해
- 4) 유치원 원장의 경영관·교육관을 신뢰해서
- 5) 안전한 물리적 환경여건 조성을 위해
- 6) 질 좋은 급간식을 제공받기 위해
- 7) 기타 ()

문11. 부모님은 비용 대비 유치원 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 문12-1로

문11-1. ('아니오'인 경우) 만약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01) 교육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아서
- 02) 아이가 유치원을 싫어해서
- 03)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 04) 지나치게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권장해서
- 05) 선생님이 싫어서(자질, 인성 등)
- 06) 방과후 특성화 활동이 다양하지 못해서
- 07) 급간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08) 통학차량 이용이 불편해서
- 09) 자주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
- 10) 추가 수업료, 방과후 과정비가 많아서
- 11) 기타 ()

교육(기본)과정 비용(추가 비용)

	지출여부 (15년 5월 한 달 기준 금액)	납입형태	납입증명	총 가구소득 대비 부담정도 (15년 5월 한 달 기준)
<보기>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1) 매월 2) 분기별 3) 학기별 4) 기타 ()	1) 계좌이체로 통장증명 2) 신용카드 납부내역서 3) 현금납부영수증 4) 기타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문1. 수업료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2. 교재교구비 (재료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3. 통학차량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4. 현장학습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5. 급간식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6. 기타1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7. 기타2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8.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	<input type="text"/> 만원			

문9. 위의 문1번~7번에 기입한 추가 비용이 2015년 5월 한 달 동안의 총 가구소득 대비 전체적인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문10. 유치원의 추가로 교육비를 내고 있다면, 추가 교육비 대비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6) 추가 비용없음

문13. 유치원 교육비와 관련하여 2015년 3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3개년 평균 물가상승률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방과후 과정 이용 (방과후 특성화 활동 참여 제외) 비용 지출 관련

※ '유치원 이용 현황(5 page)' 문2번에서 '3)방과후 과정'을 이용한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

	지출여부 (15년 5월 한 달 기준 금액)	납입형태	납입증명	총 가구소득 대비 부담정도 (15년 5월 한 달 기준)
<보기>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1) 매월 2) 분기별 3) 학기별 4) 기타 ()	1) 계좌이체로 통장증명 2) 신용카드 납부내역서 3) 현금납부영수증 4) 기타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문1. 방과후 과정 추가 교육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4. 교재교구비 (재료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3. 현장학습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2. 급간식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5. 기타1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6. 기타2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7.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	<input type="text"/> 만원			

- 문8. 위의 문1번~6번에 기입한 방과후 과정 지출비용이 2015년 5월 한 달 동안의 총 가구소득 대비 건 체적인 부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 문9. 방과후 과정 추가 비용 대비 교육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6) 추가 비용없음
- 문10.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맞벌이 가정이라서 아이를 기관에 맡겨야 해서 2) 자녀가 친구들과 있는 것을 좋아해서
 3) 방과후 과정비 지원이 있어서 4) 유치원에서 권해서
 5) 기타 ())
- 문11. 방과후 과정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1)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2) 합리적인 방과후 과정비(가격규제 등) 산출
 3)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향상 4)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확대
 5) 방과후 과정을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6)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폐지
 7) 방과후 과정 신청자격 제한(예:맞벌이 가정) 8) 기타 ())

문8.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 대비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위한 지출비용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문9. 방과후 특성화 활동의 지출비용 대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10. 방과후 특성화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교육기회참여 2) 아이가 좋아해서 3) 수업료가 저렴해서
4) 유아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6) 유치원이 권해서
7) 학원을 따로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8) 유치원 교육시간을 늘리려고 9) 기타 ()

문11. 방과후 특성화 활동 실시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1) 교육내용의 내실화 2) 합리적인 수업료(가격규제 등) 산출
3)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향상 4) 다양한 방과후 특성화 활동 제공
5) 방과후 특성화 활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마련 6) 방과후 특성화 활동 폐지
7) 기타 () 8) 개선점 없음

문12.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 참여로 부모님의 유치원 이외의 사교육비 지출부담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문13. 유치원의 방과후 특성화 활동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유치원에서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치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1) 예 2) 아니오

문14. 유치원비 인상 규제는 법안으로 마련되었으나, 현재 방과후 특성화 활동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문14-1 2) 아니오

문14-1. (예인 경우) 정부규제가 필요하다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1) 정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일괄규제 2) 유치원 운영위원회 결정
3) 지역교육청 일괄기준제시 4) 유치원 자율결정
5) 기타 ()

* 조사원이 응답자와 함께 위에서 제시한 비용을 확인 후에 기입함.

문15. 유치원 이용 총 비용 (2015년 5월 한 달 기준) 만원

학원 및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현황

※ 다음 문항은 유치원 이외의 개인 및 그룹교습(방문교사포함), 시간제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육활동으로, 응답자께서는 2015년 6월 현재까지 주 1회 이상(1시간 이상) 참여 활동을 해당란에 모두 기재해 주십시오.

1. 학습지	1-1. 이용여부	1-2. 개인교습	1-3. 그룹교습 (학원 외)	1-4. 시간제 학원	1-5. 이용횟수 (주당)	1-6. 월 수업료	1-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한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수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과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한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1-8. 총 참여갯수				문1-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만원			

2. 예체능 교습	2-1. 이용여부	2-2. 개인교습	2-3. 그룹교습 (학원 외)	2-4. 시간제 학원	2-5. 이용횟수 (주당)	2-6. 월 수업료	2-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피아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음악 (기타 악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수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체육 (축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미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2-8. 총 참여갯수				문2-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만원			

3. 외국어	3-1. 이용여부	3-2. 개인교습	3-3. 그룹교습 (학원 외)	3-4. 시간제 학원	3-5. 이용횟수 (주당)	3-6. 월 수업료	3-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일본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4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3-8. 총 참여객수				문3-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만원			

4. 교구학습	4-1. 이용여부	4-2. 개인교습	4-3. 그룹교습 (학원 외)	4-4. 시간제 학원	4-5. 이용횟수 (주당)	4-6. 월 수업료	4-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오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가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몬테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레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4-8. 총 참여객수				문4-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만원			

5. 문화센터 등	5-1. 이용여부	5-2. 개인교습	5-3. 그룹교습 (학원 외)	5-4. 시간제 학원	5-5. 이용횟수 (주당)	5-6. 월 수업료	5-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요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미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종이접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창의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과학실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음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5-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5-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6. 기타	6-1. 이용여부	6-2. 개인교습	6-3. 그룹교습 (학원 외)	6-4. 시간제 학원	6-5. 이용횟수 (주당)	6-6. 월 수업료	6-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6-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6-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문7. 위의 문1.학습지~문6.기타의 총 참여객수와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총 개 ① 만원

문8.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비용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문9. 사교육비용 대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10.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01) 교육기회참여
- 02) 아이가 좋아해서
- 03) 초등 대비 선행학습을 위해서
- 04) 자녀가 집에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 05)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 06) 주변에서 권해서
- 07) 유치원 운영시간과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 08) 다양한 영역경험으로 아이의 재능발견을 위해
- 09) 아이의 추가 개별돌봄이 필요해서 (개별돌봄)
- 10) 기타 ()

개별돌봄 (보육)

※ 다음 문항은 2015년 6월 현재, 유치원 이용 이외에 주 1회 이상(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개별 시간제 보육서비스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문1. 유치원 이용시간 이외에 개별돌봄을 이용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전체 응답하지 않음)

문2. 1주를 기준으로 개별돌봄을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시간/1일 일/1주 총 시간
(전일제 개별돌봄인 경우, 유치원 이용시간을 제외하고 작성)

문3. 개별돌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액) 만원

문4. 개별돌봄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주로 언제입니까?

- 1) 등원 전
- 2) 하원 이후 오후시간
- 3) 저녁
- 4) 주말

문5. 개별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 1) 조부모
- 2) 친척
- 3) 지인
- 4) 전문아이드보미
- 5) 가사도우미
- 6) 기타

문6. 지출의 형태는 어떠한가?

- 1) 매일
- 2) 매주
- 3) 매월
- 4) 이용할 때마다
- 5) 기타 ()

문7. 지출의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 계좌이체
- 2) 현금
- 3) 기타 ()

문8.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에 비해 개별돌봄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 2) 적절함
- 3) 부담스러움
- 4) 해당없음

문9. 지출비용 대비 개별돌봄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 2) 불만족
- 3) 보통
- 4) 만족
- 5) 매우 만족

문10. 유치원과 개별돌봄을 함께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유치원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등원 전, 저녁 등) 돌봄이 필요해서
- 2) 아이 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원해서
- 3) 방과후 과정 대신 개별돌봄하면서 학습지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 4)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 5) 기타 ()

문11. 개별돌봄(보육)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십니까?

- 1) 예 2) 아니요

※ 다음은 조사원이 응답자와 함께 지금까지 응답한 비용을 확인한 후, 기입함.

문1. (유치원 비용 이외) '사교육'과 '개별돌봄 비용'의 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

문2.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은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

[응답자 배경]

1. 설문응답자	<input type="checkbox"/> 1)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2)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3) 기타 ()	2. 연령	만 세
3. 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졸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졸		
4.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01) 서울 <input type="checkbox"/> 02) 부산 <input type="checkbox"/> 03) 대구 <input type="checkbox"/> 04) 대전 <input type="checkbox"/> 05) 광주 <input type="checkbox"/> 06) 인천 <input type="checkbox"/> 07) 울산 <input type="checkbox"/> 08) 세종 <input type="checkbox"/> 09) 경기 <input type="checkbox"/> 10) 강원 <input type="checkbox"/> 11) 충북 <input type="checkbox"/> 12) 충남 <input type="checkbox"/> 13) 전북 <input type="checkbox"/> 14) 전남 <input type="checkbox"/> 15) 경북 <input type="checkbox"/> 16) 경남 <input type="checkbox"/> 17) 제주		
5.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군) <input type="checkbox"/> 3) 읍면지역		
6. 배우자 현 고용상태	<input type="checkbox"/> 1)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2) 비전일제 <input type="checkbox"/> 3) 무직	7. 배우자 연령	만 세
8. 배우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졸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졸		
9.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명 <input type="checkbox"/> 1) 성인 ()명 <input type="checkbox"/> 2) 자녀수 ()명 : 취학자녀 ()명, 미취학자녀 ()명		
10. 주거형태	자택() 전세() 전세+월세() 월세()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면접일시
가구주소	시/도	군/구
		읍/면/동
		상세주소(*번지까지 기입)
슈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면접원

경제적 특성

문1. 가구의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없으면 '0'으로 기입)

월 소득 (근로, 사업, 부업 소득 등)	응답자	배우자	합계
모든 소득 및 자녀 관련 실수령액(유아학비, 보육료 등은 제외)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자녀관련 총 지원액 (만 0~5세 미취학 자녀 모두 포함)	응답자	배우자	합계
1) 직장육아수당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2) 육아휴직급여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영유아 자녀 총 지원액 (해당란에 기입)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계
	1) 유아학비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2) 방과후 과정 비용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3) 보육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4) 양육수당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5) 중일제 영아돌보미사업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6) 기타 ()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합계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총 계			<input type="text"/> 만원

문2. 가구의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저축성 지출 포함) 만원

문3.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취학 전 영유아(만0~5세)자녀의 총 교육·보육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문4. 취학 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이 2014년 5월 한 달 대비 2015년 5월 한 달이 증가 혹은 감소하였습니까?

- 1) 증가 → 문4-1로 2) 감소 → 문4-3으로 3) 유사 → 문5로

문4-1. (증가한 경우) 취학 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이 2014년 5월 한 달 대비 증가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자녀 연령 증가에 따른 교육·보육비용 상승 2) 가족 이사 등 생활환경 변화
3) 가족을 위한 지출 용처가 변화 4) 참여 교육·보육프로그램 수 증가
5) 가구소득의 증가 6) 기타 ()

문4-2. (증가한 경우) 취학 전 자녀의 증가한 교육·보육비용은 어떻게 총당하셨습니까?

- 1) 다른 형제·자매의 교육·보육비용 절감 2) 가족의 의식주 생활비용 절감
3)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여서 이로 총당 4) 친지(예:조부모 등)의 도움으로 총당
5) 저축을 풀어서 6) 기타 ()

문4-3. (감소한 경우) 취학 전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감소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등을 받아서 2) 가족 이사 등 생활환경 변화
3) 가구의 월 소비패턴 변화 4) 참여 교육·보육 프로그램 수 감소
5) 기타 ()

문4-4. (감소한 경우) 감소한 취학 전 자녀 교육·보육비용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 1) 다른 학령기(초중등) 형제·자매의 교육·보육비용으로 2) 가족의 의식주 생활비용으로
3) 가계저축 4) 기타 ()

문5. 취학 전 자녀의 교육·보육을 위한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1) 예 → 문5-1로 2) 아니오 → 문6으로

문5-1. (부담을 느끼는 경우) 부담을 느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다른 영역(예:문화비 등)의 지출액을 줄여야 해서 2) 가계소득에 비해 지출이 커서
3) 연령증가에 따라 지출액이 매해 증가해서 4) 가족의 의식주 생활비용을 줄여야 해서
5) 가구소득이 감소해서 6) 기타 ()

문6.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오

다음은 취학 전 자녀(영유아기, 만 0~5세)의 교육·보육서비스와 비용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는 조사 가족의 모든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조사원은 취학 전 자녀수별로 작성합니다)

문1. 응답자녀형제순서 1) 첫째 2) 둘째 3) 셋째 4) 넷째 5) 다섯째 총 _____ 명

	_____ 번째 자녀	_____ 번째 자녀	_____ 번째 자녀		
문2. 출생년도 및 연령	_____ 년 (만 세)	_____ 년 (만 세)	_____ 년 (만 세)		
문3.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문4.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지원 종류와 총 지원액은? (없으면 '0'으로 기입)	중앙	지방	중앙		
지원 종류	(1) 유아학비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2) 보육료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3) 양육수당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4) 종일제 영아돌보미서비스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5) 기타1 ()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6) 기타2 ()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_____ 만원
문5. 2014년 6월에도 2015년 6월과 동일 한지원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6. 지원 종류를 바꾼 적이 있습니까? (올해포함)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2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2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2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6-1. 2014년 6월과 2015년 6월 자녀의 지원 종류를 바꾸셨다면 해당 되는 번호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종일제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 기	01) 유아학비→보육료 02) 유아학비→양육수당 03) 유아학비→종일제 영아아이돌보미사업 04) 보육료→유아학비 05) 보육료→양육수당 06) 보육료→종일제 영아아이돌보미사업 07) 양육수당→유아학비 08) 양육수당→보육료 09) 양육수당→종일제 영아아이돌보미사업 10) 종일제 영아아이돌보미사업→유아학비 11) 종일제 영아아이돌보미사업→보육료 12) 종일제 영아아이돌보미사업→양육수당				
	문6-2. 만약 지원 종류를 바꾸셨다면 그 이유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이돌보미서비스는종일제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 기	01) 다른 형제·자매와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02) 아이가 해당기관을 싫어해서 03)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04)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05) 교육·보육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아서 06) 응답자녀의 연령이 증가해서 07) 가족 및 생활환경이 변해서(예:이사, 부모 중 휴·퇴직 등) 08) 기관의 특성화 활동 또는 특별활동 참여요구가 높아서 09) 가정양육을 원해서 10) 기타 ()				
	문7. 응답자녀가 2015년 6월 현재(5월 한 달) 정기적으로 주5일(1일 기준 4~5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 기	1) 유치원 2) 어린이집 3) 반일제학원(영어, 미술 등) 4) 놀이학교 등(선교원, 기타 포함) 5) 개별돌봄(아이돌보미 등) 6) 스포츠센터(체육, 수영 등) 7) 없음				

* 조사원은 위의 문 4번 응답과 일치여부 확인함.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양육수당 및 종일제 영아돌보미=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__ 번째 자녀	__ 번째 자녀	__ 번째 자녀
문8. 응답자녀의 지원 금액에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 유아학비 등의 지원이 부모님의 자녀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문9-1. 만약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1) 다른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보육비용 2) 응답자녀의 추가 교육·보육비용 3) 가족의 의식주 생활비용 4) 저축 5)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9-2. 만약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추가지출이 있어서 2) 가계지출에 도움이 될 정도가 아니므로 3)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0. 부모님은 유아학비, 보육료 등의 지원이 가정의 후속출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문10-1. (아니오인 경우) 가정의 후속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금액이 적으므로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3) 정부 재정 지원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4)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1.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1-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1-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1-1로
문11-1. (아니오인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아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보낼 생각이 있었으므로 2) 취업모이므로 교육·보육 기관 취원은 선택이 아니어서 3) 양육수당과 동일한 지원이어서 4) 유사 교육·보육 기관을 이용하려고 5)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12-1.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3만원 인상할 경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의향있음 <input type="checkbox"/> 2) 의향없음 (12-1-1 번 문항으로) 12-1-1) 현재 보다 3만원이 인상되었을 때, 가정 양육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이에게 기관 이용이 또래 경험 등 발달에 더 필요해서 ㉡ 아이돌보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 아이돌보기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비용이 기관에 보내는 것 보다 더 들어서 ㉤ 가정에서 개별돌봄(부모 이외)을 이용 해야 해서 ㉥ 부모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 12-2.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5만원 인상할 경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의향있음 <input type="checkbox"/> 2) 의향없음 (12-2-1 번 문항으로) 12-2-1) 현재 보다 5만원이 인상되었을 때, 가정 양육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아이에게 기관 이용이 또래 경험 등 발달에 더 필요해서 ㉡ 아이돌보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 아이돌보기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비용이 기관에 보내는 것 보다 더 들어서 ㉤ 가정에서 개별돌봄(부모 이외)을 이용 해야 해서 ㉥ 부모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육아정책연구소 <small>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small>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Ⅲ) -어린이집 이용	ID			
<p>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면접원 000입니다.</p> <p>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p> <p>본 조사는 2015년 일반연구과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Ⅲ)」에서 가구 단위별 취학전 만 0~5세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보호자)의 응답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방문면담조사는 약 40~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7월</p>					
조사주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small>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small>			조사대행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p>※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p><small>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small>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I. 보육료(어린이집) 수혜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_____ 째 자녀]

어린이집 이용 현황

문1. 자녀의 어린이집은 어떤 형태입니까?

- 1) 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3) 법인·단체 4) 민간5) 직장 6) 가정 7) 부모협동

문2.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유형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정규보육 2) 야간 보육 3) 휴일보육
 4) 주말보육 5) 24시간보육 6) 특별활동

문3. 자녀의 어린이집 하루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어린이집 이용과정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간까지 기록)

문2번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과정에 맞춰서 등원 및 하원시간을 적어주십시오.
 (예: 문2번에서 1) 정규보육, 2) 야간 보육을 선택한 경우 정규보육 시작시간부터 야간 보육을 마치고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 기입시간기록은 하원시간이 오후 2시인 경우, 14시 00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문3-1. 등 원 시 간 (어린이집 이용 시작시간) _____시 _____분	문3-2. 하 원 시 간 (어린이집 이용 종료시간) _____시 _____분	⇒	총 _____시간 _____분
---	---	---	------------------

문4.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정책 및 수혜방법 등에 대해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 1) 예 → **문4-1**로 2) 아니오 → **문4-2**로

문4-1. (예인 경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안내를 받으셨다면, 어떤 방법이었습니다습니까?

- 1) 학부모 요청에 의한 개별 설명 2) 원장의 학부모 대상 전체 설명

정규보육서비스 (필요경비 비용 포함)

	지출여부 (15년 5월 한 달 기준 금액)	납입형태	납입증명	총 가구소득 대비 부담정도 (15년 5월 한 달 기준)
<보기>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1) 매월 2) 분기별 3) 학기별 4) 기타 ()	1) 계좌이체로 통장증명 2) 신용카드 납부내역서 3) 현금납부영수증 4) 기타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문1.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2. 교재교구비 (재료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3. 차량운행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4. 현장학습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5. 급간식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6. 행사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7. 특성화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8. 기타1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9. 기타2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10.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	<input type="text"/> 만원			

* 행사비 :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등 (앨범비, 재료비 등)

** 특성화비 : 어린이집 교사가 부처지원으로 하는 활동

문11. 위의 문1번~9번에 기입한 비용 지출이 2015년 5월 한 달 동안의 총 가구소득 대비 전체적인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문12. 어린이집 비용 대비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시간연장형 보육
 ‘어린이집 이용 현황(5page)’ 문2번에서 ‘2)야간 보육’, ‘5)24시간보육’을 이용한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

	지출여부 (15년 5월 한 달 기준 금액)	납입형태	납입증명	총 가구소득 대비 부담정도 (15년 5월 한 달 기준)
<보기>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1) 매월 2) 분기별 3) 학기별 4) 기타 ()	1) 계좌이체로 통장증명 2) 신용카드 납부내역서 3) 현금납부영수증 4) 기타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문1. 시간연장형 보육료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2. 기타1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3. 기타2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4. 기타3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5. 기타4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6.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	<input type="text"/> 만원			

문7. 위의 문1번~5번의 시간연장보육 비용의 부담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문8. 시간연장형 보육 추가 비용 대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6) 추가 비용없음

특별활동
(어린이집 이용 현황(5page) 문2번에서 '6)특별활동'을 이용한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

※ 다음은 응답자녀의 2015년 6월 현재 어린이집과 외부에서 오후에 실시하는 특별활동 이용에대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1. 이용여부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2.주당횟수 회	2015년 5월 한 달 기준		
			3.재료비 만원	4.수업료 만원	5.총액 만원
01) 영어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02) 제2외국어 (한자포함)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03) 미술, 조형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04) 음악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05) 교구프로그램 (가베,오르다 등)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06) 체육 (동작활동)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07) 태권도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08) 수영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09) 발레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0) 수학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1) 과학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2) 컴퓨터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3) 한글 (언어)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4) 문학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5) 바둑 (체스 등)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6) 기타1 ()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7) 기타2 ()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8) 기타3 ()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19) 기타4 ()	<input type="checkbox"/> 1)이용 → <input type="checkbox"/> 2)비이용 ↓	회	만원	만원	만원
문6. 총 참여갯수		개	문7.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		
			만원		

학원 및 기타 교육보육 서비스 현황

※ 어린이집 이외의 개인 및 그룹교습(방문교사 포함), 시간제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육활동으로 2015년 6월 현재까지 주1회 이상(1시간 이상) 참여하는 활동을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1. 학습지	1-1. 이용여부	1-2. 개인교습	1-3. 그룹교습 (학원 외)	1-4. 시간제 학원	1-5. 이용횟수 (주당)	1-6. 월 수업료	1-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한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수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과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한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1-8. 총 참여갯수 <input type="text"/> 개				문1-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2. 예체능 교습	2-1. 이용여부	2-2. 개인교습	2-3. 그룹교습 (학원 외)	2-4. 시간제 학원	2-5. 이용횟수 (주당)	2-6. 월 수업료	2-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피아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음악 (기타 악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수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체육 (축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미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2-8. 총 참여갯수 <input type="text"/> 개				문2-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3. 외국어	3-1. 이용여부	3-2. 개인교습	3-3. 그룹교습 (학원 외)	3-4. 시간제 학원	3-5. 이용횟수 (주당)	3-6. 월 수업료	3-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일본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4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3-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3-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4. 교구학습	4-1. 이용여부	4-2. 개인교습	4-3. 그룹교습 (학원 외)	4-4. 시간제 학원	4-5. 이용횟수 (주당)	4-6. 월 수업료	4-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오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가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몬테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레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4-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4-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5. 문화센터 등	5-1. 이용여부	5-2. 개인교습	5-3. 그룹교습 (학원 외)	5-4. 시간제 학원	5-5. 이용횟수 (주당)	5-6. 월 수업료	5-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요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미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종이접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창의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과학실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음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5-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5-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 아래 6.기타는 문1~문5까지의 내용을 제외하고, 영유아가 참여하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예:전화영어, 인터넷 학습 등)

6. 기타	6-1. 이용여부	6-2. 개인교습	6-3. 그룹교습 (학원 외)	6-4. 시간제 학원	6-5. 이용횟수 (주당)	6-6. 월 수업료	6-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6-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6-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문7. 위의 문1.학습지~문6.기타의 총 참여객수와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조사원이 응답자와 함께 확인 후, 기입함) 총 개 만원

문8.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 대비 학습지 등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문9. 사교육비 대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10. 자녀가 사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교육기회참여 2) 아이가 좋아해서 3) 초등 대비 선행학습을 위해서
 4) 자녀가 집에서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6) 주변에서 권해서
 7)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이 맞지 않아서
 8) 다양한 영역 경험으로 아이의 재능 발견을 위해 9) 기타 ()

[응답자]

1. 설문응답자	<input type="checkbox"/> 1)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2)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3) 기타 ()	2. 연령	만	세
3. 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졸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졸			
4.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01) 서울 <input type="checkbox"/> 02) 부산 <input type="checkbox"/> 03) 대구 <input type="checkbox"/> 04) 대전 <input type="checkbox"/> 05) 광주 <input type="checkbox"/> 06) 인천 <input type="checkbox"/> 07) 울산 <input type="checkbox"/> 08) 세종 <input type="checkbox"/> 09) 경기 <input type="checkbox"/> 10) 강원 <input type="checkbox"/> 11) 충북 <input type="checkbox"/> 12) 충남 <input type="checkbox"/> 13) 전북 <input type="checkbox"/> 14) 전남 <input type="checkbox"/> 15) 경북 <input type="checkbox"/> 16) 경남 <input type="checkbox"/> 17) 제주			
5.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군) <input type="checkbox"/> 3) 읍면지역			
6. 배우자 현 고용상태	<input type="checkbox"/> 1)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2) 비전일제 <input type="checkbox"/> 3) 무직	7. 배우자 연령	만	세
8. 배우자 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졸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졸			
9.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명 <input type="checkbox"/> 1) 성인 ()명 <input type="checkbox"/> 2) 자녀수 ()명 : 취학자녀 ()명, 미취학자녀 ()명			
10. 주거형태	자택() 전세() 전세+월세() 월세()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면접일시
가구주소	시/도	군/구
		읍/면/동
		상세주소(*번지까지 기입)
슈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면접원

경제적 특성

문1. 가구의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없으면 '0'으로 기입)

월 소득 (근로, 사업, 부업 소득 등)	응답자	배우자	합계
모든 소득 및 자녀 관련 실수령액(중앙 및 지방정부지원금 제외)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자녀관련 총 지출액 (만 0~5세 미취학 자녀 모두 포함)	응답자	배우자	합계
1) 직장육아수당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2) 육아휴직급여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계
1) 유아학비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2) 방과후 과정 비용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3) 보육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4) 양육수당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5) 종일제 영아돌보미사업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6) 기타 ()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합계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총 계			<input type="text"/> 만원

문2. 가구의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저축성 지출 포함) 만원




문3.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취학 전 영유아(만0~5세)자녀의 총 교육·보육 지출액은 얼마입니까?(모든 자녀의 지출액 합계) 만원

단, 정부지원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종일제 영아돌보미서비스 금액은 제외)

문1. 응답자녀형제수서	<input type="checkbox"/> 1) 첫째	<input type="checkbox"/> 2) 둘째	<input type="checkbox"/> 3) 셋째	<input type="checkbox"/> 4) 넷째	<input type="checkbox"/> 5) 다섯째	총 _____명
	_____ 번째 자녀		_____ 번째 자녀		_____ 번째 자녀	
문2. 출생년도 및 연령	_____년 (만 세)		_____년 (만 세)		_____년 (만 세)	
문3.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문4.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중앙 및 지방 지원 종류와 총 지원액은? (없으면 '0'으로 기입)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중앙	지방
정부	(1) 유아학비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재정지원	(2) 보육료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3) 양육수당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4) 종일제 영아돌봄서비스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5) 기타1 ()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6) 기타2 ()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_____만원
문5. 2014년 6월에도 2015년 6월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6. 지원 종류를 바꾼적이 있습니까? (올해포함)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2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2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2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6-1. 2014년 6월과 2015년 6월 자녀의 지원 종류를 바꾸셨다면 해당되는 항목을 <보기>에서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기	01) 유아학비→보육료 04) 보육료→유아학비 07) 양육수당→유아학비 10) 종일제 영아돌봄사업→유아학비	02) 유아학비→양육수당 05) 보육료→양육수당 08) 양육수당→보육료 11) 종일제 영아돌봄사업→보육료	03) 유아학비→종일제 영아돌봄사업 06) 보육료→종일제 영아돌봄사업 09) 양육수당→종일제 영아돌봄사업 12) 종일제영아돌봄사업→양육수당			
문6-2. 만약 정부지원 종류를 바꾸셨다면 그 이유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기	01) 다른 형제·자매와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03)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05) 교육·보육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아서 07) 가족 및 생활환경이 변해서(예:이사, 부모 중 휴·퇴직 등) 09) 가정양육을 원해서	02) 아이가 해당기관을 싫어해서 04)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06) 응답자녀의 연령이 증가해서 08) 기관의 특성화 활동 또는 특별활동 참여요구가 높아서 10) 기타 ()				
문7. 응답자녀가 2015년 6월 현재(5월 하달) 정기적으로 주5일(요일 기준 4~5시간 이상)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기	1) 유치원 4) 놀이학교 등(선교원, 기타 포함)	2) 어린이집 5) 개별돌봄(아이돌보미 등)	3) 반일제학원(영어, 미술 등) 6) 스포츠센터(체육, 수영 등)			7) 없음

* 조사원은 위의 문 4번 응답과 일치여부 확인함.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양육수당 및 종일제 영아돌보미=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__ 번째 자녀	__ 번째 자녀	__ 번째 자녀
문8. 응답자녀에게 지원되는 지원 금액에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 정부지원이 부모님의 자녀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문9-1. 만약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다른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보육비용 2) 응답자녀의 추가 교육·보육비용 3) 가족의 의식주 생활비용 4) 저축 5) 기타 ()			
문9-2. 만약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추가지출이 있어서 2) 가계지출에 도움이 될 정도가 아니므로 3) 기타()			
문10. 부모님께서 영유아 지원이 가정의 후속출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문10-1. (아니오인 경우) 가정의 후속출산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금액이 적으므로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3) 정부 재정 지원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4) 기타 ()			
문11.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유아학비·보육료지원이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1-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1-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1-1로
문11-1. (아니오인 경우)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이미 아이를 위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에 보낼 생각이 있었으므로 2) 취업모이므로 교육·보육 기관 취원은 선택이 아니어서 3) 양육수당과 동일한 지원이어서 4) 유사 교육·보육 기관에 다니려고 5) 기타 ()			
문 12-1.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3만원 인상할 경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의향있음 <input type="checkbox"/> 2) 의향없음 (12-1-1 번 문항으로)			
12-1-1) 현재 보다 3만원이 인상되었을 때, 가정 양육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에게 기관 이용이 또래 경험 등 발달에 더 필요해서 ② 아이돌보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③ 아이돌보기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④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비용이 기관에 보내는 것 보다 더 들어서 ⑤ 가정에서 개별돌봄(부모 이외)을 이용 해야 해서 ⑥ 부모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문 12-2.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5만원 인상할 경우,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의향있음 <input type="checkbox"/> 2) 의향없음 (12-2-1 번 문항으로)			
12-2-1) 현재 보다 5만원이 인상되었을 때, 가정 양육 의향이 없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이에게 기관 이용이 또래 경험 등 발달에 더 필요해서 ② 아이돌보기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③ 아이돌보기가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④ 가정에서 아이 돌보는 비용이 기관에 보내는 것 보다 더 들어서 ⑤ 가정에서 개별돌봄(부모 이외)을 이용 해야 해서 ⑥ 부모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이용해야 해서			

 육아정책연구소 <small>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small>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Ⅲ)	ID	
<p>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면접원 000입니다.</p> <p>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관련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p> <p>본 조사는 2015년 일반연구과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Ⅲ)』에서 가구 단위별 취학전 만 0~5세 자녀의 교육·보육비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부모님(보호자)의 응답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로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방문연담조사는 약 40~5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정보 및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7월</p>			
조사주관기관  육아정책연구소 <small>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small>	조사대행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		
※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양육수당 수혜 자녀에 대한 질문입니다 [_____ 째 자녀]

양육수당 이용 현황

- 문1. 정부지원 중에서 '양육수당'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1)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 2) 연령과 상관없이 아이는 가정양육이 우선 |
| 3) 취업하고 있지 않아서 | 4) 너무 일찍 어린이집 등 기관에 보내는 것에 반대 |
| 5) 양육수당이 가계에 훨씬 도움이 되므로 | 6) 양육수당 이용이 사교육 이용 시간이 유리해서 |
| 7) 기타 (_____) | |
- 문2. '양육수당'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 | | |
|-----------------------------|--|
| 1) 아는 사람을 통해서 | 2) 이전에 다녔던 유치원, 어린이집 안내의 일환으로 |
| 3) 부모의 인터넷 카페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 4) 주민자치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홈페이지(지면안내)를 통해서 |
| 5) 다른 형제·자매가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 6) 기타 (_____) |
- 문3. '양육수당'의 주된 사용 항목은 무엇입니까? 2가지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 | | | | |
|--------------|----------|-------------------------|------------------|
| 01) 분유 | 02) 기저귀 | 03) 옷 | 04) 학습지비용 |
| 05) 학원비용 | 06) 장난감 | 07) 저축(보험료) | 08) 도서류 구입 |
| 09) 문화생활비 | 10) 돌봄비용 | 11) 병원비 | 12) 간식류 및 음식구입 |
| 13) 가계생활비 보팅 | | 14) 다른 형제·자매의 교육·보육비용으로 | 15) 기타 (_____) |

반일제이상학원

※ '양육수당 이용 현황(5page)'의 문6번에서 '1)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한다고 선택한 경우에만 응답

문1. 양육수당을 받는 자녀가 반일제이상학원(오전 4~5시간, 점심포함)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1) 예 → 문1-1로 2) 아니오

문1-1. (예인 경우)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이상학원은 어디입니까?

- 1) 영어학원 유치부 2) 일반보습학원 3) 미술(예능)학원 유치부
4) 놀이학교 5) 선교원 6) 스포츠센터
7) 태권도학원 8) 기타 ()

문1-2. (예인 경우) 반일제이상학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서
 2) 영어 등 특기학습 기회가 많아서
 3) 원하는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게 되어서
 4) 이용시간 등 규제가 없어서 부모가 이용하기에 편리해서
 5) 기타 ()

문1-3. (예인 경우) 반일제학원 이용을 위한 비용 지출에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 3) 약간 부담됨 4) 매우 부담됨

문1-4. (예인 경우) 반일제학원 이용이 지출비용 대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1-5. (예인 경우) 현재 이용하시는 반일제학원을 알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 1) 아는 사람을 통해서 2) 이전 유치원(또는 어린이집) 아이 친구엄마를 통해서
 3) 부모의 인터넷 카페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4)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5) 다른 형제·자매의 경험이 있어서 5) 기타 ()

반일제이상학원비용 관련

	지출여부 (15년 5월 한 달 기준 금액)	납입형태	납입증명	총 가구소득 대비 부담정도 (15년 5월 한 달 기준)
<보기>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1) 매월 2) 분기별 3) 학기별 4) 기타 ()	1) 계좌이체로 통장증명 2) 신용카드 납부내역서 3) 현금납부영수증 4) 기타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문1. 수업료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2. 교재교구비 (재료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3. 차량운행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4. 현장학습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5. 급간식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6. 행사비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7. 기타1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8. 기타2 ()	<input type="checkbox"/> 1) 예 → <input type="text"/> 만원 →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9.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	<input type="text"/> 만원			

- 문10. 위의 문1번~8번까지의 비용 지출이 2015년 5월 한 달 동안의 총 가구소득 대비 전체적인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 문13. 비용 지출 대비 반일제이상학원 서비스 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학원 및 기타 교육보육서비스 현황

* '양육수당 이용 현황(5page)'의 문6번 응답을 확인합니다.
 반일제이상학원 프로그램이 아닌 자녀가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개인 및 그룹교습, 시간제 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2015년 6월 현재까지 주1회 이상(1시간 이상) 참여 활동을 해당란에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1. 학습지	1-1. 이용여부	1-2. 개인교습	1-3. 그룹교습 (학원 외)	1-4. 시간제 학원	1-5. 이용횟수 (주당)	1-6. 월 수업료	1-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한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수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과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한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1-8. 총 참여갯수 <input type="text"/> 개				문1-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2. 예체능 교습	2-1. 이용여부	2-2. 개인교습	2-3. 그룹교습 (학원 외)	2-4. 시간제 학원	2-5. 이용횟수 (주당)	2-6. 월 수업료	2-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피아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음악 (기타 악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수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체육 (축구 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미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2-8. 총 참여갯수 <input type="text"/> 개				문2-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3. 외국어	3-1. 이용여부	3-2. 개인교습	3-3. 그룹교습 (학원 외)	3-4. 시간제 학원	3-5. 이용횟수 (주당)	3-6. 월 수업료	3-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영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중국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일본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4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3-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3-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4. 교구학습	4-1. 이용여부	4-2. 개인교습	4-3. 그룹교습 (학원 외)	4-4. 시간제 학원	4-5. 이용횟수 (주당)	4-6. 월 수업료	4-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오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가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몬테소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레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기타1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기타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3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4-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4-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5. 문화센터 등	5-1. 이용여부	5-2. 개인교습	5-3. 그룹교습 (학원 외)	5-4. 시간제 학원	5-5. 이용횟수 (주당)	5-6. 월 수업료	5-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요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미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종이접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창의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과학실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6) 음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7)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5-8.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5-9.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아래 6.기타는 문1~문5까지의 내용을 제외하고, 영유아가 참여하는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예:전화영어, 인터넷 학습 등)

6. 기타	6-1. 이용여부	6-2. 개인교습	6-3. 그룹교습 (학원 외)	6-4. 시간제 학원	6-5. 이용횟수 (주당)	6-6. 월 수업료	6-7. 재료비
	〈 보기 〉 1) 예 2) 아니오				15년 5월 한 달		
1)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2)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3)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4)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5) 기타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원
문6-6. 총 참여객수 <input type="text"/> 개			문6-7. 2015년 5월 한 달 (전체) 총액(재료비 포함) <input type="text"/> 만원				

문7. 위의 문1.학습지~문6.기타의 총 참여객수와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조사원이 응답자와 확인 후, 기입함) 총 개 만원

문8.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 대비 학습지 등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문9. 사교육비 대비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10. 자녀가 사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교육기회참여 2) 아이가 좋아해서 3) 초등 대비 선행학습을 위해서
4) 자녀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 많은 아이들이 참여해서 6) 주변에서 권해서
7) 다양한 영역경험으로 아이의 재능발견을 위해 8) 기타 ()

개별돌봄 (보육)

※ 2015년 6월 현재 주 1회 이상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개별돌봄(보육)서비스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 문1. 개별돌봄을 이용하십니까?
- 1) 예 2) 아니오 (이 항목은 응답하지 않음)
- 문2. 개별돌봄을 1주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시간/1일 일/1주 총 시간
- * 전일제(8시간 이상)개별돌봄인 경우, 주 5일(4~5시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반일제학원이 있다면 그 시간은 개별돌봄 시간에서 제외하고 작성
- 문3. 개별돌봄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액) 만원
- 문4. 개별돌봄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주로 언제입니까?
- 1) 전일(하루) 2) 학원 등원 전 3) 학원 후 오후시간 4) 저녁 5) 주말 (휴일포함)
- 문5. 개별돌봄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 1) 조부모 2) 친척 3) 지인 4) 전문 아이돌보미
5) 가사도우미 6) 기타 ()
- 문6. 지출의 형태는 어떠한가?
- 1) 매일 2) 매주 3) 매월 4) 이용할 때마다 5) 기타 ()
- 문7. 지출의 증명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1) 계좌이체 2) 현금 3) 기타 ()
- 문8.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에 비해 개별돌봄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 문9. 지출비용 대비 개별돌봄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 문10. 개별돌봄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2) 어머니 혼자 양육하기에 부담스러워서
3) 어머니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 4)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5) 기타 ()
- 문11. 개별돌봄(보육)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십니까?
- 1) 예 → 문11-1로 2) 아니오

시간제보육	
※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양육수당 수혜자 중 영유아의 연(월)령이 6개월~36개월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응답	
문1.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2) 아니오(이 항목은 전체를 응답하지 않음)	
문2. 시간제 보육을 1주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input type="text"/> 시간/1일 <input type="text"/> 일/1주 총 <input type="text"/> 시간
문3. 시간제 보육을 위해 정부지원 외에 추가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액)	<input type="text"/> 만원
문4.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어린이집 2) 육아종합지원센터 3) 건강가정지원센터 4) 기타 ()	
문5.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가구소득에 비해 시간제 보육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부담스럽지 않음 2) 적절함 3) 부담스러움 4) 해당없음	
문6. 지출비용 대비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7.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2) 어머니 혼자 양육하기에 부담스러워서 3) 어머니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해서 4)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5) 기타 ()	
※ 다음은 조사원이 응답자와 함께 확인 후에 기입함.	
문1. 반월제이상학원 제외한 비용은 2015년 5월 한 달 동안 모두 얼마입니까?	<input type="text"/> 만원
문2.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은 2015년 5월 한 달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input type="text"/> 만원

[응답자 특성]

1. 설문응답자	<input type="checkbox"/> 1) 어머니	<input type="checkbox"/> 2) 아버지	<input type="checkbox"/> 3) 기타 ()	2.연령	만	세
3. 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졸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졸	
4. 거주지역	<input type="checkbox"/> 01) 서울 <input type="checkbox"/> 06) 인천 <input type="checkbox"/> 11) 충북 <input type="checkbox"/> 16) 경남	<input type="checkbox"/> 02) 부산 <input type="checkbox"/> 07) 울산 <input type="checkbox"/> 12) 충남 <input type="checkbox"/> 17) 제주	<input type="checkbox"/> 03) 대구 <input type="checkbox"/> 08) 세종 <input type="checkbox"/> 13) 전북	<input type="checkbox"/> 04) 대전 <input type="checkbox"/> 09) 경기 <input type="checkbox"/> 14) 전남	<input type="checkbox"/> 05) 광주 <input type="checkbox"/> 10) 강원 <input type="checkbox"/> 15) 경북	
5. 지역 구분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군) <input type="checkbox"/> 3) 읍면지역					
6. 배우자 현 고용상태	<input type="checkbox"/> 1) 전일제	<input type="checkbox"/> 2) 비전일제	<input type="checkbox"/> 3) 무직	7.배우자연령	만	세
8. 배우자학력	<input type="checkbox"/> 1) 고졸미만 <input type="checkbox"/> 2) 고졸 <input type="checkbox"/> 3) 전문대졸 <input type="checkbox"/> 4) 대졸 <input type="checkbox"/> 5) 대학원졸					
9. 가구원수	총 가구원수 ()명 <input type="checkbox"/> 1) 성인 ()명 <input type="checkbox"/> 2) 자녀수 ()명 : 취학자녀 ()명, 미취학자녀 ()명					
10. 주거형태	자택() 전세() 전세+월세() 월세()					
응답자 성명	전화번호	면접일시				
가구주소	시/도	군/구	읍/면/동	상세주소(*번지까지 기입)		
슈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면접원		

경제적 특성

문1. 가구의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총 소득은 얼마입니까? (없으면 '0'으로 기입)

월 소득 (근로, 사업, 부업 소득 등)	응답자		배우자		합계
	모든 소득 및 자녀 관련 실수령액 (중앙 및 지방정부지원액 제외)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자녀관련 총 지원액 (만 0~5세 미취학 자녀 모두 포함)	응답자		배우자		합계
	1) 직장육아수당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2) 육아휴직급여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중앙 및 지방정부 총 지원액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계
	1) 유아학비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2) 방과후 과정 비용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3) 보육료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4) 양육수당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5) 종일제 영아돌보미사업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6) 기타 ()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합계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input type="text"/> 만원	
총 계					<input type="text"/> 만원

다음은 취학 전 자녀(영유아기, 만 0~5세)의 교육·보육서비스와 비용 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는 조사 가족의 모든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응답하여 주십시오 (조사원은 취학 전 자녀수별로 작성합니다)

문1. 응답자녀 형제순서 1) 첫째 2) 둘째 3) 셋째 4) 넷째 5) 다섯째 총 _____ 명

	_____ 번째 자녀	_____ 번째 자녀	_____ 번째 자녀
문2. 출생년도 및 연령	_____ 년 (만 세)	_____ 년 (만 세)	_____ 년 (만 세)
문3.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input type="checkbox"/> 1) 남성 <input type="checkbox"/> 2) 여성
문4. 2015년 5월 한 달 동안 중앙 및 지방 정부지원 종류와 총 지원액은? (없으면 '0'으로 기입)	중앙	지방	중앙
지원 종류	(1) 유아학비 _____ 만원	(2) 보육료 _____ 만원	(3) 양육수당 _____ 만원
	(4) 종일제 영아돌봄서비스 _____ 만원	(5) 기타 () _____ 만원	(6) 기타2 () _____ 만원
문5. 2014년 6월에도 2015년 6월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6. 지원 종류를 바꾼적이 있습니까? (올해포함)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7로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7로	<input type="checkbox"/> 1) 예 → 문6-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 문7로
문6-1. 2014년 6월과 2015년 6월 자녀의 지원 종류를 바꾸셨다면 해당되는 번호를 <보기>에서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기	01) 유아학비→보육료 02) 유아학비→양육수당 03) 유아학비→종일제 영아아이돌봄서비스 04) 보육료→유아학비 05) 보육료→양육수당 06) 보육료→종일제 영아아이돌봄서비스 07) 양육수당→유아학비 08) 양육수당→보육료 09) 양육수당→종일제 영아아이돌봄서비스 10) 종일제 영아아이돌봄서비스→유아학비 11) 종일제 영아아이돌봄서비스→보육료 12) 종일제 영아아이돌봄서비스→양육수당		
문6-2. 만약 지원 종류를 바꾸셨다면 이유를 골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일제만 해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기	01) 다른 형제·자매와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02) 아이가 해당기관을 싫어해서 03) 부모가 원하는 이용시간과 맞지 않아서 04)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05) 교육·보육프로그램이 적합하지 않아서 06) 응답자녀의 연령이 증가해서 07) 가족 및 생활환경이 변해서(예:이사, 부모 중 휴·퇴직 등) 08) 기관의 특성화 활동 또는 특별활동 참여요구가 높아서 09) 가정양육을 원해서 10) 기타 ()		
문7. 응답자녀가 2015년 6월 현재(5월 한 달)정기적으로 주5일(1일 기준 4~5시간 이상)이용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기	1) 유치원 2) 어린이집 3) 반일제학원(영어, 미술 등) 4) 놀이학교 등(선교원, 기타 포함) 5) 개별돌봄(아이돌보미 등) 6) 스포츠센터(체육, 수영 등) 7) 없음		

* 조사원은 위의 문 4번 응답과 일치여부 확인함.
유아학비=유치원 / 보육료=어린이집 / 양육수당 및 종일제 영아돌봄=유치원, 어린이집 제외

	__ 번째 자녀	__ 번째 자녀	__ 번째 자녀
문8. 응답자녀의 지원 금액에 만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 지원금이 부모님의 자녀 교육·보육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input type="checkbox"/> 1) 예 →문9-1로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9-2로
문9-1. 만약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로 인해 절감된 비용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다른 형제·자매를 위한 교육·보육비용 2) 응답자녀의 추가 교육·보육비용 3) 가족의 의식주 생활비용 4) 저축 5) 기타 ()			
문9-2. 만약 가계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유치원·어린이집 등에 추가지출이 있어서 2) 가계지출에 도움이 될 정도가 아니므로 3) 기타()			
문10. 부모님께서 영유아 지원이 가정의 후속출산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0-1로
문10-1. (아니오인 경우) 가정의 후속출산에 도움이 안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금액이 적으므로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3) 정부 재정 지원이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4) 기타 ()			
문11. 영유아 자녀를 위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2.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2-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2-1로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문12-1로
문12-1. (아니오인 경우)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어차피 모든 비용 지원이 아니므로 2) 세금부담이 커지므로 3) 전 계층 동일 지원 자체에 반대 4) 기타 ()			
문13.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전 계층을 지원하되 소득별 차등지원 2) 전 계층을 지원하되 연령별 차등지원 3) 교육·보육 이용시간별로 지원 4) 저소득층만 지원 5) 기타 ()			

답례품 수령		
응답자 성명 _____	일자 _____ 월 _____ 일	조사원명 _____

<< 설문조사 완료 안내 >>

설문조사를 완료해주신 분께 5,000원권 온라인문화상품권을 발송해 드립니다. 발송시기는 조사기간 종료 후이며, 문자메세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받으실 핸드폰 번호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HP _____

본 상품권은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2015.7.13~10.15일까지 3회에 걸쳐 응답자를 대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응답에 참여한 일자와 수령일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10.15일 이후에도 수령을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조사원 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2015-28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발행일 2015년 12월
발행인 우남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자인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5941-53-0 93330